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매뉴얼

2020. 1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매뉴얼

202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매뉴얼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2020.11

CONTENTS

CHAPTER A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I.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제도 개요 6 II. 안전기준 적합 확인 10 III. 안전기준 신고 41 부 록 45
CHAPTER B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I. 품목별 안전기준 80 부 록 131
CHAPTER C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	I.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140 II. 표시사항 작성 방법 142 III. 표시사항 표시 위치 152 IV. 표시면적에 따른 표시사례 155 V. 기타 표시사항 작성 시 주의사항 157

CHAPTER A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I.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제도 개요

1. 법적 근거	6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	6
3. 제도 이행 절차	7
4. 대표제품 및 파생제품	7
5. 어린이보호포장	8
6. 표시·광고의 제한	9

II. 안전기준 적합 확인

1.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	10
2. 확인신청서 작성방법	11
3. 제품정보서 작성방법	18
4.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작성방법	20
5.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작성방법	29
6.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서 작성 방법	39

III. 안전기준 신고

1. 신고 절차	41
2.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신고내용	42
3. 파생제품 구분 방법	43

부록

1.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45
2. 신고시 확인사항(주요 수정·보완 사항)	70

I.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제도 개요

1. 법적 근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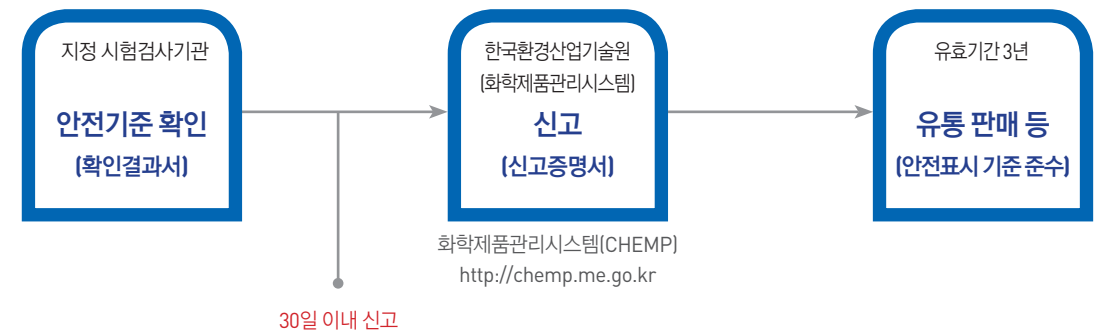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9.1.1)
 -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1.1)
 - 제5조, 제7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시행 2020.6.5)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

■ 지정 품목 : 13분류 39품목(안전기준 미고시 8품목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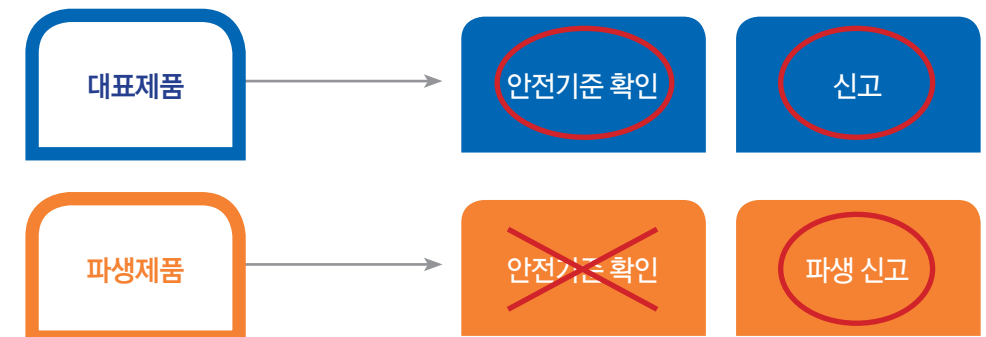
분류	품 목	비 고	처리기관
세정제품	세정제 / 제거제	확인 및 신고	시험검사기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세탁제품	세탁세제 / 표백제 /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광택코팅제 / 특수목적코팅제 / 녹 방지제 / 다림질보조제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 접합제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 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 인주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 문신용 염료		
살균제품	살균제 / 살조제		
구제제품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승인	국립환경과학원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 보건용 기피제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보존·보존처리 제품	기피제	확인 및 신고	시험검사기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목재용 보존제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초 / 습기제거제 / 인공 눈 스프레이 / 공연용 포그액	승인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3. 제도 이행 절차



4. 대표제품 및 파생제품

■ 대표제품은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파생제품은 파생신고만 진행



파생 제품

정의(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대표제품)과 비교)

-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고,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물질(고시 제5조)에 변경이 없는 제품
-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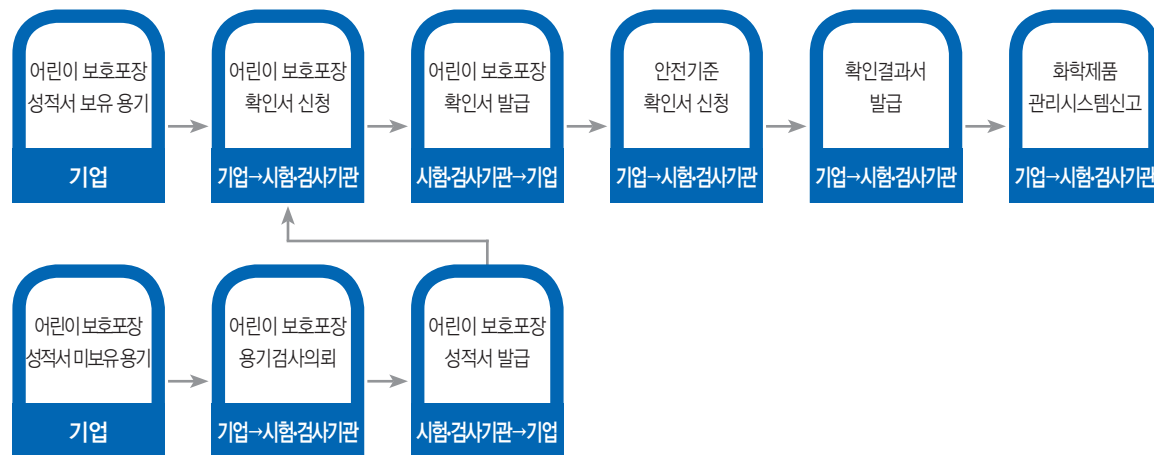
주의

- 파생으로 신고된 제품은 대표제품과 동일한 신고번호 부여
- 안전기준 등 위반시 동일한 신고번호가 부여된 제품은 모두 회수 등 행정조치
- 기업에서 파생제품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필요

5. 어린이보호포장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및 신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4]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제품은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 방법
 - 어린이보호포장성적서 보유 용기 사용
 - : 시험·검사기관에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서를 의뢰하여 발급 받은 후, 어린이보호포장용기가 적용된 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서와 함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
 - 어린이보호포장성적서 미보유 용기 사용
 - : 시험·검사기관에 어린이보호포장 용기검사 의뢰, 어린이보호포장성적서 발급 후 시험·검사기관에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서 의뢰, 확인서 발급 후 어린이보호포장용기가 적용된 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서와 함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



•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가정에서 보관·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됨

필수품목	적용 물질기준		적용제외기준
액체형 자동차형 워셔액	물질	함량/중량	물질(액상제품, 총합 10% 이상)
액체형 자동차형 워셔액	에틸렌글리콜	10% 이상	C3~C13 직쇄형 1차 알코올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된 물질)
액체형 순간접착제 (마용접착제 포함)	메틸알콜	3% 이상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캡슐형 세탁세제	디클로로메탄	1% 이상	테르펜 알코올(terpene alcohol)
	1,2-디클로로메탄	10% 이상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케톤
	살리실산메틸	5% 이상	C3~C13의 탄소로 구성된 탄화수소
	NaOH or KOH	2% 이상 (NaOH로서)	pH(액상제품)
	메타크릴산	5% 이상	2.0이하 또는 11.5이상 이고 동점도 20.5 mm ² /s 이하(40도)
	개미산	5% 이상	
	차아염소산염	2% 이상	
	과산화수소	5% 이상	
	에틸브로모아세테이트	모든 농도	
	모르폴린	5% 이상	
	아세토니트릴	500 mg 이상	

6. 표시·광고의 제한

■ 법적근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6조(표시기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 시 해당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제품 표기 불가 문구 •



※ 이와 유사한 표현 제품 표기 불가

II. 안전기준 적합 확인

1.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

■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안전기준 :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 제출 제품 및 서류 •

필수 제출

- 동일한 완제품 4개(최소 용기까지는 완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1부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정보서 1부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
-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해당시 제출

- 어린이보호포장 검사성적서 1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단계 검사합격 증명서 또는 KC 마크 사본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관련 증빙자료(ODM일 경우)

•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청 제품의 범위 •

- ✓ 제조 공정이 마무리 된 완제품. 이 경우 완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표시사항 생략 가능
- ✓ 소비자가 직접 제조하는 형태의 DIY용 제품. 원료제품의 둘 이상을 배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에 물질별 배합비율이 명시되어야 함.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만을 혼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
- ✓ 재생용 잉크·토너의 경우에 국내 원료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납품하는 원료제품

2. 확인신청서 작성방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주요내용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정보작성 - 제조자 또는 수입자 정보 기입 · OEM 방식 : 위탁자 정보 · ODM 방식 : 수탁자 정보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사업장)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수탁자 정보 기입(직접제조는 작성 제외) - OEM 방식 : 전체 항목 기입 - ODM 방식 : 제조방식만 체크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사업장)		
제조방식			
☐ 주문자 상표부착 제조(OEM) ☐ 주문자 개발 제조(ODM) ☐ 기타(제조방식 설명)			
신청 제품 정보	제조·수입	☐ 제조 ☐ 수입	○제조·수입 - 국내제조일 경우 제조에 체크 ※ 원료기준이 아닌 제품제조기준 - 수입일 경우 수입에 체크 ○품목 [6 page 참조] - 고시에 나와 있는 35품목 중 해당 품목 ○제품명 - 해당제품에 부여하는 고유 명칭 ○제형, 용도 [7,8 page 참조] - 고시에 나와 있는 품목별 용도에서 선택 ○중량·용량·매수 - 용기를 제외한 내용물에 대한 중량 또는 용량 또는 매수 ○신고번호, 유효기간 - 신규일 경우 미작성
	제품명	용도	
	제형	중량·용량·매수	
	제조국명 (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 (수입의 경우)	
	신고번호 (경신의 경우)	유효기간 (경신의 경우)	

• 주의 사항 •

✓ OEM 방식과 ODM 방식의 제품 제조시 신청주체가 달라지므로 주의

- OEM 방식(주문자 상표 부착 제조) : 위탁자
- ODM 방식(주문자 개발 제조) : 수탁자

✓ 품목, 제형, 용도는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선택

■ [참고] 품목

분 류	품 목	분 류	품 목
세정제품	1. 세정제 2. 제거제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세탁제품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미용제품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코팅제품	1. 광택 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다림질보조제	살균제품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4.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5. 가타 방역용 소독제제
접착·접합제품	1. 접착제 2. 접합제	구제제품	1. 기피제 2. 보건용 구제·방자·유인살충제 3. 보건용 가파제 4.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방향·탈취제품	1. 방향제 2. 탈취제	보존·보존처리제품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염색·도색제품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기타	1. 초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자동차 전용 제품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	-

■ [참고] 제형

구 분	분 류	비 고
분사형	분무기형	품형 포함
	스프레이형	고압가스, 저압가스 등을 이용한 분사방식
	훈증형	
	연소형	
	연무형	
	필터형	
	보충형	원제품의 제형을 함께 기재
비분사형	기타	세부제형 표시
	액체형	
	에멀션형	페이스트형, 로션형, 젤형 포함
	폼형	
	고체형	타블렛형, 파스텔형, 스틱형 포함
	핫멜트형	
	분말형	
	티슈형	
	캡슐형	
	카트리지형	
	펜형	
	붓형	
	팔찌형	
	패치형	
	함침물형	
	탱크형	
	보충형	원제품의 제형을 함께 기재
	기타	세부제형 표시

※ 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비교의 내용에 해당시 해당제형으로 기입

■ [참고] 품목별 용도

품 목	용 도	
세정제	일반용	오븐용, 렌지후드용, 욕실용, 변기용, 카페트용, 세탁조용, 배수관용, 건물 바닥용, 구두용, 가구용, 악기용, 기타표면세정용 ^[1]
	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 ^[2]
	주(1) 상세용도 기재 (2) 자동차용 워셔액 제외	
제거제	일반용	얼룩제거용 ^[1] , 실리콘제거용, 접착제제거용, 타르·기름제거용, 혈흔제거용, 기타제거용 ^[2]
	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 ^[2]
	주(1) 섬유용 얼룩제거제는 세탁세제에 적용 (2) 상세용도 기재	
세탁세제	섬유용, 가죽용, 홀드라이클리닝용, 신발용, 섬유 얼룩제거용	
표백제	섬유용, 가죽용, 신발용	
섬유유연제	섬유용, 가죽용, 신발용	
광택코팅제	일반용	고무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가죽용, 금속용, 석재(시멘트)용
	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
특수목적 코팅제	일반용	발수용, 오염 방지용, 정전기방지용, 미끄럼방지용, 표면보호용, 김서림 방지용(유리용, 거울용, 렌즈용)
	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 ^[1]
	주(1) 자동차용 워셔액(발수용)은 제외	
녹방지제	차량용 ^[1] , 악기용, 레저용, 공구용, 금속용	
다림질보조제	주(1)「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 중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을 말함(건설기계 제외)	
다림질보조제	의류용, 섬유용	
	일반용, 순간·강력용	
접착제	※ 용도별 사용대상 : 고무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가죽용, 섬유용, 금속용, 도자기용(세라믹, 타일), 유리용, 종이용, 점토용, 석조물용(석고, 필름용)	
접합제	틈새충진용, 이음매접합용, 흙집충진용	
방향제	일반용	실내공간용, 섬유용, 가죽용
	자동차용	실내용
탈취제	일반용	실내공간용, 물체용
	자동차용	실내용
물체염색제	의류용, 섬유용, 신발용, 가죽용	
물체도색제	일반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금속용, 유리용, 석재용(시멘트), 가죽용
	자동차용 ^[1]	실내용, 외부용
	제형 : 분사형(스프레이형)	
자동차용 워셔액	일반용, 발수성용	제형 : 액체형
	차량용(에틸렌글리콜형), 차량용(프로필렌글리콜형)	제형 : 액체형
차량용 부동액	차량용(에틸렌글리콜형), 차량용(프로필렌글리콜형)	
인쇄용잉크토너	인쇄용 잉크, 인쇄용 토너	
인주	사무용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문서수정용	
미용접착제	가발용, 체모용, 가습눈썹용, 쌍꺼풀용, 손톱·발톱용	
문신용염료	눈썹·아이라인용, 입술용, 전신용, 헤어라인용	
살균제	일반용	일반물체용, 배수관용, 곰팡이제거용
	특수목적용	공기소독용 ^[1] , 어린이용품 전용 ^[2] , 칫솔·혀크리너 살균용
	주(1) 전용 공기소독기구를 통해 분무되는 소독액에 한함 [2]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전용 제품에만 사용되는 소독제를 말함	
살조제	어항용, 분수대용, 연못용, 수영장용	
기피제	살벌레용, 좀벌레용, 날벌레용 ^[1]	
목재용방부제	주(1) 깔따구용 등 특정 날벌레 용도를 상세히 기재할 수 있음	
목재용	목재용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공기청정기용, 에어컨용	제형 : 필터형
초	발광용, 방향용	
습기제거제	실내공간용, 가구용	
인공 눈 스프레이	행사용 ^[1]	제형 : 분사형(스프레이형)
공연용 포그액	주(1) 특정 용도를 상세히 기재할 수 있음	
공연용(무대연출), 행사용	공연용(무대연출), 행사용	

■ 작성예시 : 국내제조(직접생산), 향초인 경우 → 신청인은 제조자 주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상호(명칭) 조은향기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성명(대표자) 조향기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조석고(02-123-1234) [전자우편:1234@naver.com]	
	소재지(사업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전화번호:02-123-1234] [팩스번호:02-123-1235]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자인 경우)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사업장)		
	제조방식	☐ 주문자 상표부착 제조(OEM) ☐ 주문자 개발 제조(ODM) ☐ 기타(제조방식 설명)	
신청 제품 정보	제조 · 수입	☒ 제조 ☐ 수입	품목 초
	제품명 좋은향초(라벤더)		용도 방향용
	제형 연소형		중량 · 용량 · 매수 100g
	제조국명 (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 (수입의 경우)
	신고번호 (갱신의 경우)		유효기간 (갱신의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신청합니다.

2019 년 8월 20일
신청인 조 석 고 (서명 또는 인)

시험 · 검사기관 귀하

■ 작성예시 : 국내제조(OEM 방식), 향초인 경우 → 신청인은 위탁자 주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상호(명칭) 조은향기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성명(대표자) 조향기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조석고(02-123-1234) [전자우편:1234@naver.com]		
	소재지(사업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전화번호:02-123-1234] [팩스번호:02-123-1235]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자인 경우)	상호(명칭) 굿 향기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987-65-43210		
	성명(대표자) 박향기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박석고 [전자우편: 5678@naver.com]		
	소재지(사업장) 경기도 화성시 자안리 445			[전화번호:031-123-1234] [팩스번호:031-123-1235]
	제조방식	☒ 주문자 상표부착 제조(OEM) ☐ 주문자 개발 제조(ODM) ☐ 기타(제조방식 설명)		
신청 제품 정보	제조 · 수입	☒ 제조 ☐ 수입	품목 초	
	제품명 좋은향초(라벤더)		용도 방향용	
	제형 연소형		중량 · 용량 · 매수 100g	
	제조국명 (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 (수입의 경우)	
	신고번호 (갱신의 경우)		유효기간 (갱신의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신청합니다.

2019 년 8월 20일
신청인 조 석 고 (서명 또는 인)

시험 · 검사기관 귀하

■ 작성예시 : 국내제조(ODM 방식), 향초인 경우 → 신청인은 수탁자 주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상호(명칭) 조은향기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성명(대표자) 조향기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조석고[02-123-1234] [전자우편:1234@naver.com]	
	소재지(사업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전화번호:02-123-1234] [팩스번호:02-123-1235]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자인 경우)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사업장)		
	제조방식	☐ 주문자 상표부착 제조(OEM) ☒ 주문자 개발 제조(ODM) ☐ 기타(제조방식 설명)	
신청 제품 정보	제조 · 수입	☒ 제조 ☐ 수입	품목 초
	제품명 좋은향초(라벤더)		용도 방향용
	제형 연소형		중량 · 용량 · 매수 100g
	제조국명 (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 (수입의 경우)
	신고번호 (갱신의 경우)		유효기간 (갱신의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신청합니다.

2019 년 8월 20일
신청인 조 석 고 (서명 또는 인)

시험 · 검사기관 귀하

■ 작성예시 : 수입, 향초인 경우 → 신청인은 수입자 주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상호(명칭) 조은향기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성명(대표자) 조향기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조석고[02-123-1234] [전자우편:1234@naver.com]	
	소재지(사업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전화번호:02-123-1234] [팩스번호:02-123-1235]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자인 경우)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사업장)		
	제조방식	☐ 주문자 상표부착 제조(OEM) ☐ 주문자 개발 제조(ODM) ☐ 기타(제조방식 설명)	
신청 제품 정보	제조 · 수입	☐ 제조 ☒ 수입	품목 초
	제품명 좋은향초(라벤더)		용도 방향용
	제형 연소형		중량 · 용량 · 매수 100g
	제조국명 (수입의 경우) 미국		제조회사명 (수입의 경우) America Co. Ltd
	신고번호 (갱신의 경우)		유효기간 (갱신의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신청합니다.

2019 년 8월 20일
신청인 조 석 고 (서명 또는 인)

시험 · 검사기관 귀하

3. 제품정보서 작성방법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정보서 주요내용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제품 사진 < 앞 > < 뒤 >	○ 제품사진 - 제품의 앞면 및 뒷면 사진 • 앞뒷면이 구분이 어려울시, 임의적으로 앞, 뒷면을 정하여 사진 기입
제품 설명서 1. 제품의 특징 2. 사용 용도 - 주된 사용자 - 사용공간 또는 대상 - 부가기능 3. 사용방법 4. 주의사항(일반 or 사용시) 5. 기타사항	○제품의 특징 - 해당제품의 특징을 작성 ○사용 용도 - 주사용자 : 해당제품을 사용할 대상 ex)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등 - 사용공간 또는 대상 : ex) 실내, 자동차 실내, 섬유 등등 부가기능 : 본래 기능외 부가적 기능 ○사용방법 - 소비자가 사용시 제품사용 방법 ○주의사항(일반 또는 사용시) - 제품사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 ○기타사항 - 위 사항외 제품 관련 정보가 있을시 작성

주의 사항

✓ 제품 설명서는 품목별, 제품 특징별로 상이하므로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가능한 위의 항목순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고함. 또한 소비자 정보 제공차원에서 알려야 하는 사항은 제품 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함

✓ 사용용도 중 부가기능 작성시

- 본 제품의 주기능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 기능이 있을시 해당 기능에 대한 안전기준 확인 추가 진행

Ex1) 주기능이 방향제, 부가기능에 탈취기능 표시 : 추가로 탈취제 안전기준 확인 진행

Ex2) 주기능이 탈취제, 부가기능이 향균일 경우 : 추가로 살균제 안전기준 확인 진행

■ 작성예시 : 향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시행 2020.6.5>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 정보서

제품 사진	제품 설명서
	1. 제품의 특징 - 실내에 은은한 향 발산하면서, 아늑한 공간효과 2. 사용 용도 - 주된 사용자 : 성인 - 사용공간 또는 대상 : 실내용 - 부가기능 : 없음 3. 사용방법 - 심지에 불을 키고 사용 4. 주의사항(일반 or 사용시) -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 화재우려가 있으니, 주변에 인화성물질 등이 없는 곳에서 사용 - 사용후 반드시 심지의 불을 끄시오 - 용기를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마시오. 5. 기타사항 -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필지(80g/㎡)]

4. 성분 및 배합비 작성방법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성분 및 배합비 주요내용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① 구분	② 성분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③ 배합비 (%)	④ 용도 (기능)	비고	○최대함량 및 주요물질 - 최대함량물질: 제품의 상당부분(최대 함량 등)을 구성하는 물질. 단, 물(정제수)이 최대 함량 물질인 경우에는 그 다음 순의 함량 물질 기재 - 주요기능물질: 주요기능발현 물질 ex) 향료일 경우, '향료' 기입 - 고유번호: 해당 물질의 Cas No. 등 기입 · 향료인 경우 미기재 가능 - 배합비: 제품 중 해당성분이 차지하는 비율 · 정수로 표시하되, 주요기능물질은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기입 가능 - 용도(기능): 제품내 기능 표시
주요물질 (최대함량)						
주요물질 (주요기능)						
보존제						○보존제(해당시) - 제품 원료 및 제품 자체를 보존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된 살생물질 - 배합비: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기입 가능
함량제한 물질						○함량제한물질(해당시) - 고시 별표2에 따른 해당 품목별 함량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기입 [16~17 page 참조]
어린이보호 포장적용 기준물질						○어린이보호포장물질(해당시) - 고시 별표4에 따라 제품 내 함유시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되는 물질 기입 [18 page 참조]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당기업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의 사항

- ✓ 보존제, 함량제한물질 및 어린이보호포장물질은 관련물질이 있을 경우 작성
- ✓ 향료외 해당물질의 고유번호(Cas. No. 등)가 없을시 MSDS 등 자료제출로 대체 가능
- ✓ 주요기능물질과 보존제의 배합비는 영업기밀 등의 사유로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작성 가능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안전기준 신고 시에는 모든 물질과 배합비를 제출해야 함.
- ✓ 화학물질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과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기준 물질은 함량을 범위로 작성할 수 없음
- ✓ 어린이보호포장 관련 물질의 적용기준 이내 여부를 반드시 확인
- ✓ 기 부적합받은 제품을 기존 시험기관이 아닌 타 시험검사기관에 의뢰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제출

■ [참고] 방향제 함량제한물질(함유물질)

물질명	Cas. No.	분사형(mg/kg)	비분사형(mg/kg)
폼알데하이드	50-00-0	12 이하	25 이하
메탄올	67-56-1	2,000 이하	2,000 이하
글리옥살	107-22-2	30 이하	70 이하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 (IPBC)	55406-53-6	8 이하	-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117-81-7	1,600 이하	-
아세트알데하이드	75-07-0	60 이하	300 이하

■ [참고] 방향제 함량제한물질(사용물질)

물질명	Cas. No.	분사형(%)		비분사형(%)	
		일반용	자동차용 (실내용)	일반용	자동차용 (실내용)
프로필렌글리콜	57-55-6	-	47 이하	-	-
벤조산	65-85-0	3 이하	1 이하	-	-
2-프로판올	67-63-0	25 이하	12 이하	-	-
살리실산	69-72-7	88 이하	37 이하	-	-
벤질알코올	100-51-6	36 이하	17 이하	-	-
에틸렌글리콜	107-21-1	0.2 이하	0.2 이하	-	-
살리실산메틸	119-36-8	27 이하	13 이하	-	-
1,2-벤즈아이스티아졸-3(2H)-온	2634-33-5	1.5 이하	0.7 이하	-	-
트리클로산	3380-34-5	26 이하	16 이하	-	-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7173-51-5	0.01 이하	0.005 이하	-	-
은	7440-22-4	0.04 이하	0.02 이하	-	-
염화벤잘코늄, (C12-C18)알킬벤질데메틸암모늄염화물, 벤질알킬(C12-C16)디메틸암모늄	8001-54-5 53516-79-0 68424-85-1	1 이하	0.5 이하	-	-
피레트럼	8003-34-7	1 이하	0.7 이하	-	-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26530-20-1	0.4 이하	0.12 이하	-	-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34590-94-8	-	57 이하	-	-
트리에탄올아민	102-71-6	2 이하	1 이하	-	-
알파-피넨	80-56-8 7785-70-8 7785-26-4	7 이하	3 이하	39 이하	30 이하
다이페닐에테르	101-84-8	1 이하	0.6 이하	7 이하	6 이하
아세트산 비닐	108-05-4	5 이하	2 이하	26 이하	20 이하
트라이사이클로데세닐 아세테이트	5413-60-5	6 이하	3 이하	35 이하	27 이하

■ [참고] 초 함량제한물질(함유물질)

물질명	Cas. No.	발광용(mg/kg)	방향용(mg/kg)
납 ⁽¹⁾	7439-92-1	600 이하	600 이하
	etc		
폼알데하이드	50-00-0	-	12 이하
글리옥살	107-22-2	-	30 이하
메탄올 ⁽²⁾	67-56-1	-	2,000 이하

주 (1) 심지 및 몸통의 총 함유량을 말함
(2) 액상 제품에 한함

※ 그 외 품목의 함유금지물질은
고시 [별표 2]의 II. 품목별 안전기준 참조

■ [참고] 어린이보호포장 물질 적용 기준

- 제품 내 아래 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함유하는 경우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물질	Cas. No.	기준	적용 제외기준
에틸렌글리콜	107-21-1	10 % (W/W) 이상	
메틸알콜	67-56-1	3 % (W/W) 이상	
디클로로메탄	75-09-2	1 % (W/W) 이상	
1,2-디클로로에탄	107-06-2	10 % (W/W) 이상	
살리실산메틸	119-36-8	5 % (W/W) 이상	
수산화나트륨 ⁽¹⁾	1310-73-2	제품내NaOH로서, 2%(W/W)이상	펜 마커와 같이 용기 내 흡수제로 쓰인 경우
수산화칼륨 ⁽¹⁾	1310-58-3		
메타크릴산	79-41-4	5 % (W/W) 이상	
개미산(포름산)	64-18-6	5 % (W/W) 이상	
하이포(차아)염소산염	7681-52-9 etc	2 % (W/W) 이상	
과산화수소	7722-84-1	5 % (W/W) 이상	
에틸브로모아세테이트	105-36-2	모든 농도	
모르폴린	110-91-8	5 % (W/W) 이상	
아세트니트릴 ⁽²⁾	75-05-8	500 mg 초과	

주 (1)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함유한 제품에 적용되며, 기준은 제품 자체의 염기 농도임
(2) 접촉제 제거제에 함유된 경우에 한함

- 제품 내 함유된 다음 항목의 물질 총합이 10% 이상이고, 40 ℃에서 동점도 20.5 mm²/s 이하인 경우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물질		Cas. No.	기준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직쇄형 1차 알코올	107-21-11-propanol	71-23-8	해당 물질 총합이 10% 이상
	1-butanol	71-36-3	
	1-pentanol	71-41-0	
	1-hexanol	111-27-3	
	1-heptanol	111-70-6	
	1-octanol	111-87-5	
	1-nonanol	143-08-8	
	1-decanol	112-30-1	
	1-undecanol	112-42-5	
	1-dodecanol	112-53-8	
	1-tridecanol	112-70-9	
이소부틸 알코올		78-83-1	
테르펜 알코올		98-55-5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케톤		-	
C3~C13의 탄소로 구성된 탄화수소	C10~C13 Isoalkanes	68551-17-7	
	C10~C14 Isoalkanes ¹⁾	68551-18-8	
	etc		
제품 내 최종 함유물이 pH 2.0 이하 또는 pH 11.5 이상의 액상제품			

주(1) 탄소수 범위(C10~C13)내 함량(%)을 적용

■ 작성예시 : 보존제 X, 함량제한물질 X, 어린이보호포장물질 X 인 경우

품목 : 초(일반초), 성분 : 소이왁스(100%)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시행 2020.6.15>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① 구 분	② 성분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③ 배합비 (%)	④ 용도 (기능)	비고
주요물질 (최대함량)	소이왁스	68334-28-1	100%	발광	
주요물질 (주요기능)	-	-	-	-	
보존제	-	-	-	-	
함량제한물질	-	-	-	-	
어린이보호포장 적용기준물질	-	-	-	-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안전기준 부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타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함)

■ 작성예시 : 보존제 X, 함량제한물질 X, 어린이보호포장물질 X 인 경우

품목 : 초(향초), 성분 : 소이왁스(90%), 향료(10%)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시행 2020.6.5>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① 구 분	② 성분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③ 배합비 (%)	④ 용도 (기능)	비고
주요물질 (최대함량)	소이왁스	68334-28-1	90%	발향보조	
주요물질 (주요기능)	향료	-	10% (5%~15%)	향	
보존제	-	-	-	-	
함량제한물질	-	-	-	-	
어린이보호포장 적용기준물질	-	-	-	-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안전기준 부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타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함)

■ 작성예시 : 보존제 X, 함량제한물질 X, 어린이보호포장물질 X 인 경우

품목 : 방향제(석고방향제), 성분 : 석고(70%), 올리브리퀴드(5%), 정제수(20%), 향료(5%)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시행 2020.6.5>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① 구 분	② 성분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③ 배합비 [%]	④ 용도 [기능]	비고
주요물질 (최대함량)	석고	10034-76-1	70 %	발향보조	
주요물질 (주요기능)	향료	-	5% or [3%~8%]	향	
보존제	-	-	-	-	
함량제한물질	-	-	-	-	
어린이보호포장 적용기준물질	-	-	-	-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안전기준 부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타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함)

■ 작성예시 : 보존제 X, 함량제한물질 O, 어린이보호포장물질 X 인 경우

품목 : 방향제(디퓨저), 성분 : 디퓨저베이스(80%), 향료(20%)
 ※ 디퓨저베이스성분 : 에탄올(51%),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49%)
 ※ 제품 중 에탄올이 차지하는 함량 : 40.8% [51×0.8]
 ※ 제품 중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가 차지하는 함량 : 39.2% [49×0.8]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시행 2020.6.5>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① 구 분	② 성분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③ 배합비 [%]	④ 용도 [기능]	비고
주요물질 (최대함량)	에탄올	64-17-5	40.8 %	발향보조	
주요물질 (주요기능)	향료	-	20% or [15%~25%]	향	
보존제	-	-	-	-	
함량제한물질	다이프로필렌글리콜 메틸에테르	34590-94-8	39.2 %	발향보조	
어린이보호포장 적용기준물질	-	-	-	-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안전기준 부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타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함)

■ 작성예시 : 보존제 X, 함량제한물질 0, 어린이보호포장물질 0 인 경우

품목 : 방향제(디퓨저), 제형 : 액체형, 성분 : 디퓨저베이스(80%), 향료(20%)
※ 디퓨저베이스성분 :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90%), C10~C13 Isoalkanes(6%), C10~C14 Isoalkanes(4%)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시행 2020.6.5>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① 구 분	② 성분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③ 배합비 [%]	④ 용도 [기능]	비고
주요물질 [최대함량]	다이프로필렌글리콜 메틸에테르	34590-94-8	72 %	발향보조	
주요물질 [주요기능]	향료	-	20% or [15%~25%]	향	
보존제	-	-	-	-	
함량제한물질	다이프로필렌글리콜 메틸에테르	34590-94-8	72 %	발향보조	최대물질과 동일
함량제한물질	α -pinene	80-56-8	0.02 %	향	향료 성분
어린이보호포장 적용기준물질	C10~C13 Isoalkanes	68551-17-7	4.8 %	발향보조	
어린이보호포장 적용기준물질	C10~C14 Isoalkanes	68551-18-7	3.2 %	발향보조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안전기준 부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타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함)

5.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작성방법

■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주요내용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제출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자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의 신청자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품 정보	품목		제품명		○품목, 제품명, 제형, 제조국(수입제품),제조자(수입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원료물질 수, 원료납품자 수 - 원료물질 수 :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수 - 원료납품자 수 : 원료물질을 공급한 업체 수 * 수입제품의 경우 제조사에 최대한 확인 후 작성 ○함유금지물질 - 성분내역서, MSDS 등을 통해 함유금지물질 확 인 후 미함유시 해당 품목의 함유금지물질 작성 [25 page 참조] ○사용물질 - 성분내역서, MSDS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사용 물질 확인 후 사용물질이 있는 경우 작성 [26 page 참조] ○함유된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물질 - 성분내역서, MSDS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포장 물질이 있는 경우 작성 [18 page 참조]
			제형		
	제조국명 (수입제품의 경우)		제조자 (수입제품의 경우)		
	원료물질 수		원료 납품자 수		
	함유금지물질(A)				
	사용물질(B)				
	함유된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C)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해당기업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의 사항

- √ 함유금지물질은 고시 [별표2] 의 I . 공통기준 <표2> 에 해당되는 물질,
II. 품목별 안전기준<표2> 에 명시된 물질 모두 기입
- √ 사용물질은 고시 [별표2] 의 II. 품목별 안전기준 <표4> 에 해당되는 물질이 있는 경우 기입
- √ 어린이보호포장 물질은 고시 [별표4] 의 '어린이보호포장 관한 안전기준' 중 'II.어린이보호
포장 적용 물질기준' 에 해당되는 물질 기입
- √ 해당물질리스트가 작성된 별지 사용 가능[예, 아니오 체크]

■ [참고] 함유금지물질[공통기준]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¹⁾	기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31961-54-3	분사형	함유금지
	57029-18-2		
	89697-78-9		
	etc		
염화에톡시에틸렌구아니딘(PGH)	374572-91-5	분사형	함유금지
	etc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분사형	함유금지
	27083-27-8		
	etc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분사형	함유금지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분사형	함유금지

주 (1) 방향제는 모든 제형에 적용함

■ [참고] 함유금지물질[방향제, 초]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방향제)	적용 제품(초)	검출허용한도 ⁽¹⁾ (mg/kg)
벤젠	71-43-2	전 제형	방향용	5 이하
염화비닐	75-01-4	전 제형	방향용	5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전 제형	방향용	5 이하
붕소산 사나트륨염	1303-96-4	전 제형	방향용	-
1,4-디클로로벤젠	106-46-7	전 제형	방향용	-

주 (1)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함유금지물질의 경우,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안됨

※ 그 외 품목의 함유금지물질은
고시 [별표 2]의 II. 품목별 안전기준 참조

■ [참고] 사용물질[방향제]

물질명	Cas. No.	분사형(%)		비분사형(%)	
		일반용	자동차용 (실내용)	일반용	자동차용 (실내용)
프로필렌글리콜	57-55-6	-	47 이하	-	-
벤조산	65-85-0	3 이하	1 이하	-	-
2-프로판올	67-63-0	25 이하	12 이하	-	-
살리실산	69-72-7	88 이하	37 이하	-	-
벤질알코올	100-51-6	36 이하	17 이하	-	-
에틸렌글리콜	107-21-1	0.2 이하	0.2 이하	-	-
살리실산메틸	119-36-8	27 이하	13 이하	-	-
1,2-벤즈아이스티아졸-3(2H)-온	2634-33-5	1.5 이하	0.7 이하	-	-
트리클로산	3380-34-5	26 이하	16 이하	-	-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7173-51-5	0.01 이하	0.005 이하	-	-
은	14701-21-4	0.04 이하	0.02 이하	-	-
	etc	-			
염화벤잘코늄, (C12-C18)알킬벤질데메틸암모늄염화물, 벤질알킬(C12-C16)디메틸암모늄	8001-54-5	1 이하	0.5 이하	-	-
	53516-79-0				
	68424-85-1				
피레트럼	8003-34-7	1 이하	0.7 이하	-	-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26530-20-1	0.4 이하	0.12 이하	-	-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34590-94-8	-	57 이하	-	-
트리에탄올아민	102-71-6	2 이하	1 이하	-	-
알파-피넨	80-56-8	7 이하	3 이하	39 이하	30 이하
	7785-70-8				
	7785-26-4				
다이페닐에테르	101-84-8	1 이하	0.6 이하	7 이하	6 이하
아세트산비닐	108-05-4	5 이하	2 이하	26 이하	20 이하
트라이사이클로데세닐아세테이트	5413-60-5	6 이하	3 이하	35 이하	27 이하

※ 그 외 품목의 사용물질은
고시 [별표 2]의 II. 품목별 안전기준 참조

■ 작성예시 : 함유금지물질 X, 사용물질 X인 경우

품목 : 초(향초), 성분 : 소이왁스(90%), 향료(10%)

[illegible]

■ 작성예시 : 함유금지물질 X, 사용물질 0 인 경우

품목 : 방향제(디퓨저), 성분 : 디퓨저베이스(80%), 향료(20%)
※ 디퓨저베이스성분 : 에탄올(51%),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49%)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시행 2020.6.5>

화학물질의 비함유 · 비사용 확약서				
제출자	상호(명칭)	상쾌한기분	사업자등록번호	333-33-33333
	성명(대표자)	조기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조항기 (전자우편: 111@naver.com)
	소재지(사업장)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전화번호: 02-222-2222) (팩스번호: 02-333-3333)		
제품 정보	품목	방향제	제품명	날아갈듯 디퓨저
			제형	액체형
	제조국명 (수입제품의 경우)	-	제조사 (수입제품의 경우)	-
	원료물질 수	2	원료 납품자 수	2
	함유금지물질(A)	PHMG, PGH, PHMB, MIT,CMIT, 벤젠, 염화비닐, 트리클로로에틸렌, 붕소산 사나트륨염, 1,4-디클로로벤젠		
	사용물질(B)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함유된 어린이보호장 적용 물질(C)	사용안함		
확약 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 표시기준」 별표 2에 따라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함유금지물질’(A) 및 함량제한물질 중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에 해당하는 ‘사용물질’(B) 이외의 다른 물질, 별표 4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중 기재한 물질(C)이외의 다른 물질이 제품의 원료, 원료의 보존제, 제품의 제조 과정 등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함유되거나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확인한 내용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기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작성예시 : 함유금지물질 X, 사용물질 '해당없음' 인 경우(별지사용)

품목 : 초(향초), 성분 : 소이왁스(90%), 향료(10%)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시행 2020.6.5> 화학물질의 비함유 · 비사용 약약서				
제출자	상호(명칭)	상쾌한기분	사업자등록번호	333-33-33333
	성명(대표자)	조기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조향기 [전자우편: 111@naver.com]
	소재지(사업장)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199 [전화번호: 02-222-2222] [팩스번호: 02-333-3333]		
제품 정보	품목	초	제품명	날아갈듯 캔들
			제형	연소형
	제조국명 (수입제품의 경우)	-	제조사 (수입제품의 경우)	-
	원료물질 수	2	원료 납품자 수	2
	함유금지물질(A)	불임자료 표시		
	사용물질(B)	-		
	함유된 어린이보호장 적용 물질(C)	불임자료 표시		
확약 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에 따라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함유금지물질’(A) 및 함량제한물질 중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에 해당하는 ‘사용물질’(B) 이외의 다른 물질, 별표 4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중 기재한 물질(C)이외의 다른 물질이 제품의 원료, 원료의 보존제, 제품의 제조 과정 등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함유되거나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확인한 내용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물질 사용여부(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공통 함유금지물질(A)

1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분사형	☐ 예 ☒ 아니요
2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분사형	☐ 예 ☒ 아니요
3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분사형	☐ 예 ☒ 아니요
4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분사형	☐ 예 ☒ 아니요
5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분사형	☐ 예 ☒ 아니요

◆ 초 함유금지물질(A)

1	벤젠	방향용	☐ 예 ☒ 아니요
2	염화비닐	방향용	☐ 예 ☒ 아니요
3	트리클로로에틸렌	방향용	☐ 예 ☒ 아니요
4	붕소산 사나트륨염	방향용	☐ 예 ☒ 아니요
5	1,4-디클로로벤젠	방향용	☐ 예 ☒ 아니요

◆ 함유된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물질(C)

1	에틸렌글리콜	☐ 예 ☒ 아니요
2	메틸알콜	☐ 예 ☒ 아니요
3	디클로로메탄	☐ 예 ☒ 아니요
4	1,2-디클로로에탄	☐ 예 ☒ 아니요
5	살리실산메틸	☐ 예 ☒ 아니요
6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 예 ☒ 아니요
7	메타크릴산	☐ 예 ☒ 아니요
8	개미산(포름산)	☐ 예 ☒ 아니요
9	하이포(차아)염소산염	☐ 예 ☒ 아니요
10	과산화수소	☐ 예 ☒ 아니요
11	에틸브로모아세테이트	☐ 예 ☒ 아니요
12	모르폴린	☐ 예 ☒ 아니요
13	아세토니트릴	☐ 예 ☒ 아니요

14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직쇄형 1차 알코올	1-propanol	☐ 예 ☒ 아니요
		1-butanol	
		1-pentanol	
		1-hexanol	
		1-heptanol	
		1-octanol	
		1-nonanol	
		1-decanol	
		1-undecanol	
		1-dodecanol	
		1-tridecanol	
15	이소부틸 알코올 (isobutyl alcohol)	☐ 예 ☒ 아니요	
16	테르펜 알코올 (terpene alcohol)	☐ 예 ☒ 아니요	
17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케톤	☐ 예 ☒ 아니요	
18	C3~C13의 탄소로 구성된 탄화수소	☐ 예 ☒ 아니요	
19	pH (액상제품)	2.0 초과 11.5 미만 (2.0 < pH < 11.5)	☐ 해당 ☒ 비해당(어린이보호포장 대상) ☐ 모름(시험필요)
	동점도 (액상제품) (pH "비해당"에 체크 시에만 작성)	40 °C에서 동점도 20.5 mm2/s 이하	☐ 예 (어린이보호포장대상) ☒ 아니요

위 사실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 당사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 물질 확인 시 위 CAS No.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원료 내 위 물질들이 혼합물로 존재 할 경우, 물질명과 CAS No.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작성예시 : 함유금지물질 X, 사용물질 0 인 경우(별지사용)

※ 디퓨저베이스성분 : 에탄올(51%),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49%)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시행 2020.6.5>

화학물질의 비함유 · 비사용 확약서

제출자	상호(명칭)	상쾌한기분	사업자등록번호	333-33-33333
	성명(대표자)	조기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조향기 (전자우편: 111@naver.com)
	소재지(사업장)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전화번호: 02-222-2222) (팩스번호: 02-333-3333)		
제품 정보	품목	방향제	제품명	날아갈듯 디퓨저
			제형	액체형
	제조국명 (수입제품의 경우)	-	제조자 (수입제품의 경우)	-
	원료물질 수	2	원료 납품자 수	2
	함유금지물질(A)			불임자료 표시
	사용물질(B)			불임자료 표시
	함유된 어린이보호장 적용 물질(C)			불임자료 표시
확약 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에 따라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함유금지물질'(A) 및 함량제한물질 중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에 해당하는 '사용물질'(B) 이외의 다른 물질, 별표 4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 중 기재한 물질(C)이외의 다른 물질이 제품의 원료, 원료의 보존제, 제품의 제조 과정 등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함유되거나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확인한 내용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기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합니다.

20 21 22 23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물질 사용여부(방향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공통 함유금지물질(A)

1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전 제형	☐ 예 ☒ 아니요
2	염화에톡시메틸구아니딘(PGH)	전 제형	☐ 예 ☒ 아니요
3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 (PHMB)	전 제형	☐ 예 ☒ 아니요
4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전 제형	☐ 예 ☒ 아니요
5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전 제형	☐ 예 ☒ 아니요

◆ 방향제 함유금지물질(A)

1	벤젠	전 제형	☐ 예 ☒ 아니요
2	염화비닐	전 제형	☐ 예 ☒ 아니요
3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 예 ☒ 아니요
4	붕소산 사나트륨염	전 제형	☐ 예 ☒ 아니요
5	1,4-디클로로벤젠	전 제형	☐ 예 ☒ 아니요

◆ 방향제 사용물질 함량기준에 따라 사용한 물질(B)

1	프로필렌글리콜		☐ 예 ☒ 아니요
2	벤조산		☐ 예 ☒ 아니요
3	이소프로필알코올		☐ 예 ☒ 아니요
4	살리실산		☐ 예 ☒ 아니요
5	벤질알코올		☐ 예 ☒ 아니요
6	에틸렌글리콜		☐ 예 ☒ 아니요
7	살리실산메틸		☐ 예 ☒ 아니요
8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		☐ 예 ☒ 아니요
9	트리클로산		☐ 예 ☒ 아니요
10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 예 ☒ 아니요
11	은		☐ 예 ☒ 아니요
12	염화벤잘코늄1)		☐ 예 ☒ 아니요
13	피레트럼		☐ 예 ☒ 아니요
14	2-옥탈-3(2H)-이소티아졸론		☐ 예 ☒ 아니요
15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 예 ☐ 아니요
16	트리에탄올아민		☐ 예 ☒ 아니요
17	알파-피넨		☐ 예 ☒ 아니요
18	다이페닐 에테르		☐ 예 ☒ 아니요
19	아세트산 비닐		☐ 예 ☒ 아니요
20	트라이사이클로데세닐 아세테이트		☐ 예 ☒ 아니요

주1) (C12-C18)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벤질알킬(C12-C16)디메틸암모늄도 해당

◆ 함유된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물질(C)			
1	에틸렌글리콜		☐ 예 ☒ 아니요
2	메틸알콜		☐ 예 ☒ 아니요
3	디클로로메탄		☐ 예 ☒ 아니요
4	1,2-디클로로에탄		☐ 예 ☒ 아니요
5	살리실산메틸		☐ 예 ☒ 아니요
6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 예 ☒ 아니요
7	메타크릴산		☐ 예 ☒ 아니요
8	개미산(포름산)		☐ 예 ☒ 아니요
9	하이포(차아)염소산염		☐ 예 ☒ 아니요
10	과산화수소		☐ 예 ☒ 아니요
11	에틸브로모아세테이트		☐ 예 ☒ 아니요
12	모르폴린		☐ 예 ☒ 아니요
13	아세토니트릴		☐ 예 ☒ 아니요
14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직쇄형 1차 알코올	1-propanol	☐ 예 ☒ 아니요
		1-butanol	
		1-pentanol	
		1-hexanol	
		1-heptanol	
		1-octanol	
		1-nonanol	
		1-decanol	
		1-undecanol	
		1-dodecanol	
		1-tridecanol	
15	이소부틸 알코올 (isobutyl alcohol)		☐ 예 ☒ 아니요
16	테르펜 알코올 (terpene alcohol)		☐ 예 ☒ 아니요
17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케톤		☐ 예 ☒ 아니요
18	C3~C13의 탄소로 구성된 탄화수소		☐ 예 ☒ 아니요
19	pH (액상제품)	pH 2.0이하	☐ 해당 ☒ 비해당(어린이보호포장 대상) ☐ 모름(시험필요)
		pH 11.5이상	☐ 예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 아니요
	동점도 (액상제품)	40 °C에서 동점도	☐ 예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pH “예” 에 체크 시에만 작성]	20.5 mm2/s 이하	☒ 아니요
위 사실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 당사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 물질 확인 시 위 CAS No.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원료 내 위 물질들이 혼합물로 존재 할 경우, 물질명과 CAS No.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 표 자 :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6.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서 작성 방법

■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주요내용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 (사업장)	

○신청인 정보 작성

-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청제품 정보	구분	[] 제조 [] 수입	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		중량·용량·매수
	포장유형 및 방식(재봉함 가능 유무)		

○구분(제조, 수입), 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

-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포장유형 및 방식(재봉함 가능 유무)

- 어린이보호포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확인정보	제조업체명		모델명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포장유형 및 방식(재봉함 가능 유무)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 증명 (택 1)	[] 성적서 (인증서) [] 시험결과보고서 [] 기타 _____	발행번호	발행기관
			발행일자	검사기준
			[] 예비시험 [] 본시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70호를 따른 경우에 한함)	

○제조업체명, 모델명, 주소, 포장유형 및 방식

- 어린이보호포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 증명

- 어린이보호포장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형을 선택 후 기재된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
- 예비시험/본시험 선택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19-70호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시험한 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사항 선택

주의 사항

√ 어린이보호포장 유형 및 방식

-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내 부속서 4 에서 어린이보호포장 유형 및 방식을 규정
- 어린이보호포장 예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7호 서식]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서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증 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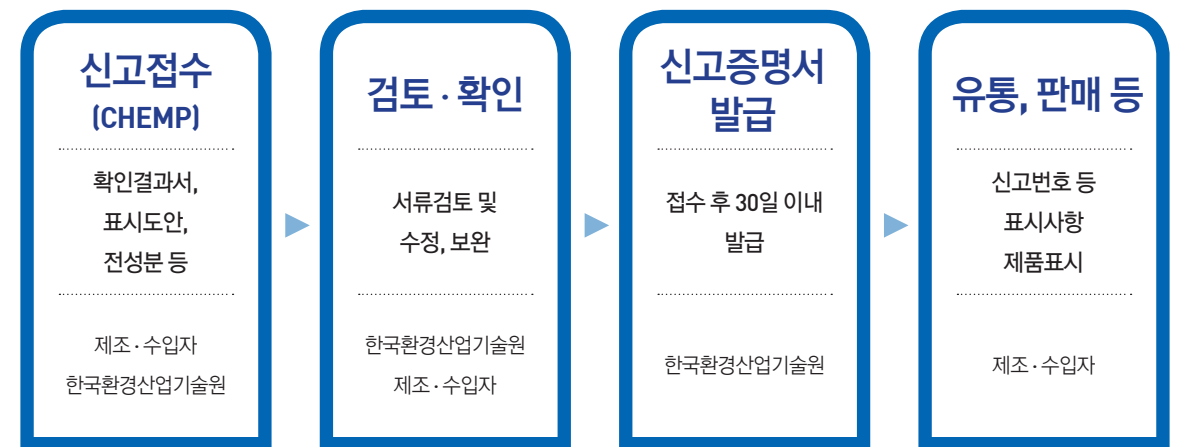
신청인	상호(명칭)	상쾌한기분		사업자등록번호	333-33-33333
	성명 (대표자)	조기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조향기 (전자우편: 111@naver.com)
	소재지 (사업장)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전화번호: 02-222-2222] [팩스번호: 02-333-3333]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청제품 정보	구분	☐ 제조 ☐ 수입	품목	방향제	
	제품명	날아갈듯 디퓨저		용도	액체형
	제형	액체형		종량·용량·매수	100 mL
	포장유형 및 방식(재봉합 가능 유무) 재밀폐가능 포장, 연속 나선형 밀폐장치: 임의 하향 회전식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확인정보	제조업체명	튼튼용기		모델명	튼튼캡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40 (전화번호/팩스번호: 043-000-0000)				
	포장유형 및 방식(재봉합 가능 유무) 재밀폐가능 포장, 연속 나선형 밀폐장치: 임의 하향 회전식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 증명 (택 1)	☒ 성적서 (인증서)		발행번호	해당시
		☐ 시험결과보고서		발행일자	2008.04.01
☐ 기타		☐ 예비시험	☐ 본시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70호를 따른 경우에 한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5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확인 신청하며, 위 사실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0 년 11 월 02 일 신청인 : 조기분 (서명 또는 인) 시험·검사기관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어린이보호포장의 제품설명서 1부 3.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증서, 성적서, 시험결과보고서 등) 1부				
신청확인 번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5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험·검사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절지 (80g/㎡)]

III.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1. 신고절차

■ 안전기준 적합 제품에 대한 신고 절차



※ 신고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후 30일(working day 기준)이내 신고

• 신고 필요 서류 •

주요 신고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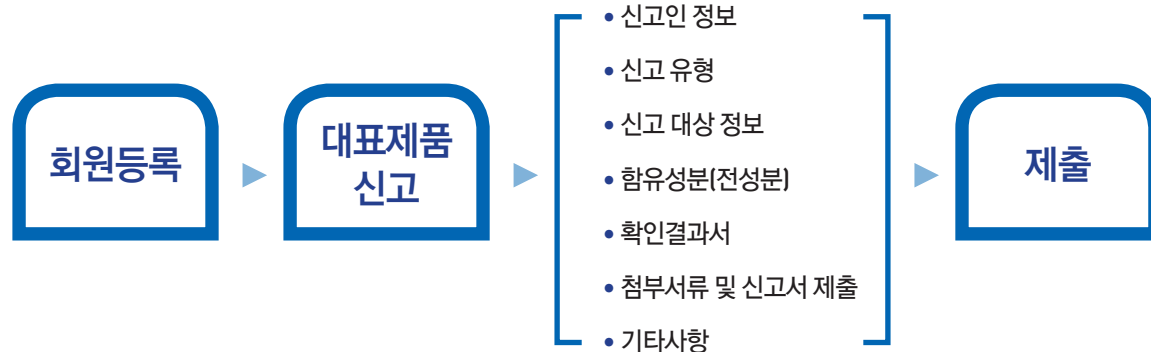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 혼합물 등 Cas. No. 없는 물질의 MSDS
- 안전기준 적합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 제품 사진(앞면 및 표시사항이 있는 뒷면) 및 표시도안

해당시 제출

- ODM 납품 증명서류

2.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신고 내용

■ 안전기준 적합 제품에 대한 신고 절차 (<http://www.chemp.me.go.kr>)



구분	신고 내용
회원등록	기업등록, 일반회원 등록
신고인 정보	사업자등록증 기반
신고유형	제조와 수입구분, 제조는 OEM과 ODM 선택
신고대상정보	제품명, 분류·품목, 제형, 유통기한, 어는점, 액성, 중량 등, 표준사용량,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여부, 사용방법, 사용상주의사항, 응급처치
함유성분	혼합물질, 단일물질 등 전성분 입력 (Cas.No., MSDS, 배합비, 용도, 표시사항물질)
확인결과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내용 입력
첨부서류 및 신고서	제품사진(표시도안 부착), 표시견본,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성분 및 배합비, ODM 납부 증명서류 제품용기 및 포장상자의 표시면적 계산 결과(필요시), 용기재질 동일여부 확인서(필요시)

3. 파생제품 구분 방법

■ 파생제품 구분 절차



파생제품 정의

(대표제품과 비교)

-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고
- 제품명이 다르면서
-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

○ 용도, 제형 및 제품명 확인

- 대표제품의 용도와 제형 동일여부 및 제품명 확인

구분	대표제품	파생제품
용도	실내공기용, 차량용	동일여부 확인
제형	액체형	동일여부 확인
제품명	라벤더 디퓨저	다른지 여부 확인

○ 안전기준 변경 확인(Cas. No.로 확인)

- 해당품목의 안전기준 물질, 대표제품 성분 및 파생제품 성분 정리 및 확인

안전기준물질의 변경

✓ 물질 종류의 변경을 의미(→ 추가적인 안전기준 확인·신고 필요)

✓ 동일 물질 함량이 안전기준 이내로 변경될 경우, 파생으로 신고 가능

■ 파생제품 예시

○ 세정제

구분	대표제품	제품1	제품2	제품3
제품명	스타 세정제 골드	스타 세정제 실버	스타 세정제 나노	스타 세정제 파워
용도	일반용(오븐용)	일반용(오븐용)	자동차용(실내용)	일반용(오븐용)
제형	분무기형	분무기형	분무기형	분무기형
제품 내 사용물질	프로필렌글리콜 5%	프로필렌글리콜 10%	프로필렌글리콜 5%	메탄올
파생가능 여부	-	가능	불가능	불가능

○ 방향제(디퓨저)

구분	대표제품	제품1	제품2	제품3
제품명	조은 디퓨저(라벤더)	조은 디퓨저(레몬)	조은 디퓨저(사과)	조은 디퓨저(포도)
용도	일반용(실내공간용)	일반용(실내공간용)	자동차용(실내용)	일반용(실내공간용)
제형	액체형	액체형	액체형	액체형
제품 내 사용물질	프로필렌글리콜 5%	프로필렌글리콜 10%	프로필렌글리콜 5%	2-프로판올
파생가능 여부	-	가능	불가능	불가능

○ 초

구분	대표제품	제품1	제품2	제품3
제품명	조은 캔들(라벤더)	조은 캔들(레몬)	조은 캔들(사과)	조은 캔들(포도)
용도	방향용	방향용	발광용	방향용
제형	연소형	연소형	연소형	연소형
제품 내 사용물질	소이왁스 60%	소이왁스 70%	파라핀왁스 60%	파라핀왁스 70%
파생가능 여부	-	가능	불가능	가능

○ 탈취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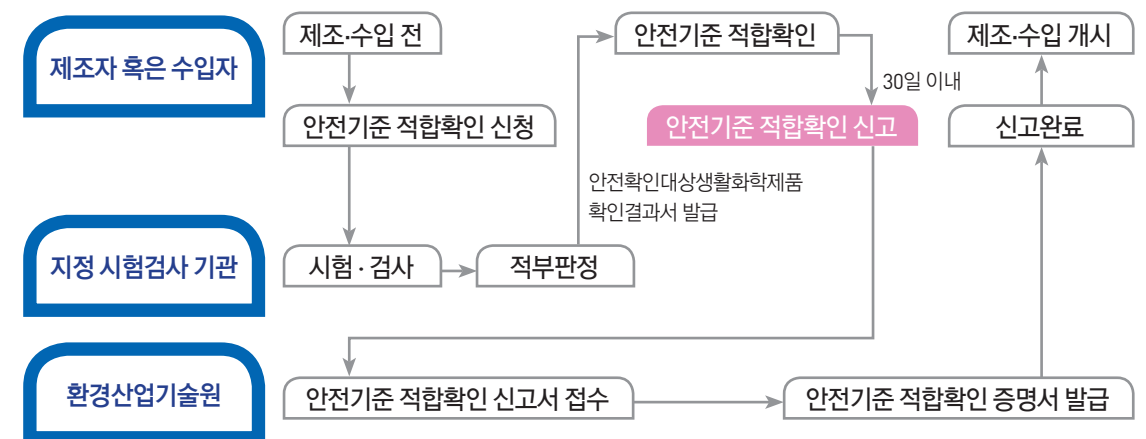
구분	대표제품	제품1	제품2	제품3
제품명	좋은 탈취제 골드	좋은 탈취제 나노	좋은 탈취제 실버	좋은 탈취제 에스
용도	일반용(실내공간용)	일반용(실내공간용)	자동차용(실내용)	일반용(실내공간용)
제형	분무기형	분무기형	분무기형	분무기형
제품 내 사용물질	프로필렌글리콜 5%	프로필렌글리콜 10%	프로필렌글리콜 5%	벤조산
파생가능 여부	-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부록

1.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및 신고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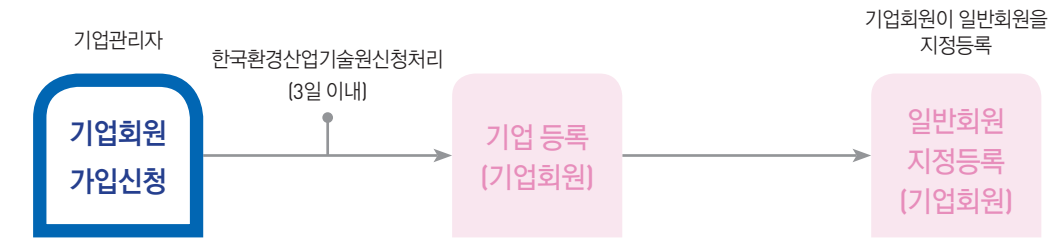
■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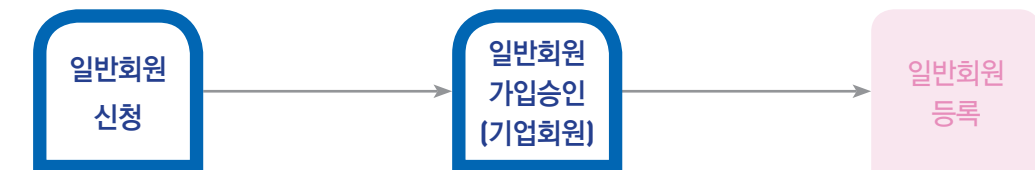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시험·검사기관 담당자 정보

번호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제품시험분석실	02-2284-1653
2	FITI시험연구원	생활환경사업팀	043-711-8865, 8863
3	KOTITI시험연구원	생활화학제품 담당자	02-3451-7358, 7343, 7388
4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화학분석센터	031-428-3818, 3848, 3857
5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I)	생활제품인증팀	02-2164-1412
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화학제품센터	02-2102-2681, 2664, 2504
7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바이오융합본부	031-538-9422, 9423, 9424

2) 회원등록



또는 일반회원이 직접 신청



■ 기업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 접속하여 초기화면에서 “기업등록”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 기업의 대표성을 증명하는 기업회원은 기업관리자 본인의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첨부하여 본인이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 센터(<http://www.4insure.or.kr>)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 (단, 1인 기업인 경우 지역 의료보험 가입증명서, 의료보험 자격확인서, 대표이사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

■ 일반회원은 기업회원이 기업 내 실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일괄 등록하거나, 기업 내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일반회원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기업회원으로 등록된 1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반회원 가입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원이 일반회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의 “알림마당”에 “일반사용자 관리”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 일반회원으로 신청하려는 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초기화면에서 “기업 내 일반회원 등록”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대표제품 신고

로그인	기업회원등록	기업 내 일반회원 등록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			
①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제도안내	전자민원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② 제품신고	기존살생물물질 물질승인 신청계좌서 제출 살생물물질 물질등성 인정신청 적수등을 시험자료 부동의 확인 신청 살생물제품 제품유사성 인정신청 제품승인 특례신청 적수등을 시험자료 부동의 확인 신청	중소기업 자원사업 수출입 업무 수입 요건확인번호 신청 수입요건 면제신청 자유판매증명	공지사항 미보완 제품공고 FAQ 자료실 시스템소개 수수료안내 법령정보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를 위해서는 각 기업에 등록되어 업무를 부여받은 담당자(일반회원)로 로그인 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회원 아이디로 로그인 후, 메뉴에서 생활화학제품 →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 제품 신고 → 신고서 작성으로 접근합니다.

[1] 신고인 정보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제품 신고 - 대표제품

HOME > 생활화학제품 >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 제품 신고

접수번호(접수일) : A-20190218-0029 (2019-02-18)	신고번호(완료일) :	상태 : 수정보완요청
담당자 : 기달1	담당자 연락처 : 02-1234-1234	

임시저장 수정보완 제출 목록

신고인 정보

상호(명칭)	(주)나날		
사업자등록 번호	123-12-12345	성명(대표자)	홍길동
담당자 성명	김형석	담당자 연락처	010 - 121 - 3250
담당자 이메일	hskim@nanalsmi.com		
소재지(사업장) 주소	(037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로 2-0 110동		
소재지 전화번호	02 - 1002 - 1002	소재지 팩스번호	02 - 1001 - 1001

■ 신고인 정보는 회원가입 시 기입했던 정보를 그대로 불러오며, 해당 정보를 수정하고자 한다면 회원 정보 수정 후 신고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사업자등록증 기반으로 정보 입력합니다.

[2] 신고 유형

■ 신고 유형은 제조와 수입으로 구분됩니다.

신고 유형	
제조/수입	☒ 제조 ☐ 수입
제조방식	☒ 직접생산 ☐ OEM ☐ ODM ☐ 기타

○ (제조) 직접생산, OEM(주문자 상표부착 제조), ODM(주문자 개발 제조), 기타 중 해당 제조방식을 선택합니다(단, OEM, ODM은 추가 정보 입력 필요).

- OEM(주문자 상표부착 제조) → 수탁자 정보 입력
- ODM(주문자 개발 제조) → 위탁자(판매자) 정보 입력 → 첨부서류 중 ODM납품 증명서류 업로드
- 기타 → 제조방식에 대한 설명 입력

신고유형	
제조/수입	☒ 제조 ☐ 수입
제조국(수입인 경우) 작성방법	미국
제조회사(수입인 경우)	온산토

○ (수입) 해당 수입 제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와 제조회사명을 입력합니다.

-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② 제품 표시도안에 기재된 제조회사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3] 신고 대상 정보

신고 대상 정보	
대표/파생 구분	대표제품
제품명 작성방법	
분류·품목 작성방법	분류 선택 품목 선택 용도 선택 세부 용도 선택 추가
제형 작성방법	구분 선택 분류 선택 유통기한 작성방법 제조일로 부터 개월 ☐ 해당없음
어는 점 (자동차용 워셔액 및 부동액) 작성방법	선택 액성 (세정제품, 세탁제품) 작성방법
중량/용량/매수 작성방법	선택
표준사용량 작성방법	☐ 해당없음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여부 작성방법	☐ 해당 ☒ 미해당
사용방법 작성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작성방법	
응급처치 작성방법	

■ 제품명

- 신고하고자 하는 제품의 제품명을 기입합니다.
- 제품명은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② 제품 표시도안의 제품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 분류 · 품목

- 분류 선택 드롭다운박스를 활용하여 좌측에서부터 선택한 후 추가 버튼을 통해 품목을 추가합니다. 하나의 제품에 두 개 이상의 품목이 있을 경우, 다시 드롭다운박스 선택 및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추가가 가능합니다.

■ 제형

- 신고하고자 하는 제품 제형의 구분과 분류를 드롭다운박스를 통해 선택한 후, 세부 제형을 텍스트 박스에 기입해야 합니다.
[예] 분사형-분무기형(포형), 분사형-보충형(액체형), 비분사형-고체형(스틱형) 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상에 여러 제형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제형을 '세부제형 입력'란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 참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 I. 공통기준 → <표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형 구분

■ 유통기한

- 신고하고자 하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텍스트박스에 기입합니다.
(단, 해당 없다면 해당없음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 어는 점(자동차용 워셔액 및 부동액에 한함)

- 어는 점을 텍스트박스에 기입한 후, 그 단위(예) °C, K, °F)를 드롭다운박스를 통해 선택합니다.

■ 액성(세정제품 및 세탁제품에 한함)

- 액성은 원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소이온농도(pH)에 따른 액성을 "원액(액성)" 등의 방법으로 텍스트 박스에 기입합니다(액성 : 알칼리성, 약알칼리성, 중성, 약산성, 산성).
※ 참고 : 「고시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 II.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 9. 액성

■ 중량 / 용량 / 매수

- 제품의 중량 / 용량 / 매수를 텍스트박스에 기입한 후, 그 단위(예) g, mg, kg, L, ml, 개입, 매수)를 드롭다운박스에서 선택합니다.

■ 표준사용량

- 제품의 표준사용량을 텍스트박스에 기입해 주세요.
- 희석해서 사용하는 농축제품의 경우에는 희석비율에 따른 표준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여부

- 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여부를 라디오버튼을 이용해 선택합니다(기본값 = "미해당").
※ 참고 : 고시 [별표 6]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 사용방법

- 제품의 사용방법을 글자*로만 텍스트박스에 기입합니다.
* 입력 가능 최대 길이 : 영문 4,000자, 한글 1,000자

■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글자*로만 텍스트박스에 기입합니다.
* 입력 가능 최대 길이 : 영문 4,000자, 한글 1,000자

※ 참고

-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 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II.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 <표1>
- 제품별 권장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 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II.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 <표2>

■ 응급처치

- 제품의 응급처치를 글자*로만 텍스트박스에 기입합니다.

* 입력 가능 최대 길이 : 영문 4,000자, 한글 1,000자

※ 참고

- 제품별 필수 응급처치 문구 : 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II.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 <표3>
- 제품별 권장 응급처치 문구 : 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II.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 <표4>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 세정제품-세정제(일반용-오븐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정보

발행번호	시험·검사기관 이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유효기간
A2018021800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9-02-18 ~ 2022-02-1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시험성적서.pdf	업로드 삭제

화학물질 확인결과

검사 화학물질명	단위	확인기준	확인결과	판정	추가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	NaOH로서 5% 미만	4	적합	삭제불가
폼알데하이드	mg/kg	60 이하	50	적합	삭제불가
벤젠	mg/kg	10 이하	8	적합	삭제불가
염산 또는 황산	%	HCl로서 0.04% 미만	0.03	적합	삭제불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정보(발행번호, 시험·검사기관 이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유효기간)를 입력하고 첨부합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 화학물질 확인결과

- 화학물질 확인결과는 신고 대상 정보 내 선택한 품목에 따른 항목이 제공됩니다. 검사 화학물질명과 단위, 확인기준*, 확인결과를 기입할 수 있으며, 판정사항(적합, 부적합, 해당없음)은 드롭다운박스를

통해 선택합니다.

* 각 품목별 적용 제형(분사형, 비분사형 등)에 따른 확인기준 구분 필요

- 또 다른 물질을 입력하고자 할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검사 화학물질 입력행이 생성되고 그 행에 추가 물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고시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내 II. 품목별 안전기준의 3. 함량제한물질 중 ①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의 물질은 삭제할 수 없으며, ②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은 사용자가 추가 버튼을 통해 추가 물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참고 : 고시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 II. 품목별 안전기준

(5) 함유성분(전성분)

함유성분(전성분) 작성방법

수입업체 직접 입력 여부 ☒ 신고자 직접입력 ☐ 원 제조사 입력

※ 수입업체 제조사가 성분비 공개를 거부 할 경우 수입제조사 입력을 선택하여 수입 제조사에게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CAS No.	물질명	배합비(100%)	용도(기능)	표시사항대상물질	추가
☐ 혼합물질 ☒ 단일물질 50-00-0	포름알린	20	보존제	☒ 주요물질 ☐ 나노물질 ☐ 살생물질	삭제
☐ 혼합물질 ☒ 단일물질 7732-18-5	물	70	용매제	☒ 주요물질 ☐ 나노물질 ☐ 살생물질	삭제
☒ 혼합물질 ☐ 단일물질 25321-14-6	다이나이트로벤젠(이성질체 혼	10	계면활성제 비이온계	☐ 주요물질 ☐ 나노물질 ☐ 살생물질	삭제

MSDS 또는 함유물질 정보 MSDS 서류.pdf 업로드 삭제

상세 물질 입력

CAS No.	물질명	배합비	추가
71-43-2	벤젠	50	삭제
99-08-1	m-나이트로톨루엔	50	삭제

☒ 위에서 기재한 성분 이외의 물질 또는 혼합물질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혼합물질, 단일물질

- 취급 화학물질의 혼합물질과 단일물질 여부를 선택합니다.
- 혼합물질
 - 혼합물질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그 혼합물질을 이루는 상세 물질을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생성됩니다. 각 상세물질은 입력란 우측의 검색 버튼을 사용하여 함유성분 검색 팝업창을 통해 물질을 검색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혼합물질을 이루는 추가 상세물질을 입력하기 위해 추가/삭제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유성분 검색

고유번호

CAS No.

51235-04-2

검색

CAS No.

51235-04-2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물질명

3-Cyclohexyl-6-(dimethylamino)-1-methyl-1,3,5-triazine-2,4-(1H,3H)-dione; Hexazinone

제품 표시 화학물질명
(다수의 물질명 존재시 1개의 물질명 한글로 입력)

헥사지논

작성방법

입력

CAS No.	KE No.	물질명	법에서 경하는 물질명
51235-04-2	KE-09234	3-Cyclohexyl-6-(dimethylamino)-1-methyl-1,3,5-triazine-2,4-(1H,3H)-dione; Hexazinone	

닫기

■ CAS No. 및 물질명

- 입력란 우측의 검색 버튼을 사용하여 **함유성분 검색 팝업창**을 통해 물질을 검색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CAS No.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직접입력을 클릭하여 CAS No.를 텍스트박스에 기입할 수 있으며, CAS No.가 없는 물질의 경우, CAS No. 없음 체크박스를 이용하여 물질명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물질명은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물질명을 참고하여 **제품 표시 화학물질명**의 텍스트박스에 한글로 기입한 후 **입력 버튼**을 통해 CAS No.와 물질명을 입력합니다.
(단, 다수의 물질명 존재 시 해당 업체에서 사용하는 1개의 물질명으로 입력).
- 고유번호가 없는 물질 또는 혼합물질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국·내외에서 인정한 물질의 안전성 자료, 제품의 안전보건자료(MSDS), 제품 또는 물질 제조자가 제공한 물질 정보 등 **물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다만, 물질정보 자체가 생성·존재하지 않는 물질은 해당 물질명 및 제조자 정보를 별도로 첨부합니다.

■ 배합비

- 제품을 구성하는 각 혼합물질과 단일물질의 **배합비 합은 100%**을 맞춰야 합니다.

■ 용도(기능)

- 제품을 구성하는 각 물질의 **용도(기능)**을 드롭다운박스에서 **선택**합니다.
목록 중 해당하는 용도(기능)가 없을 경우, 기타(직접입력)를 선택하여 텍스트박스에 그 용도(기능)을 입력해주시요.
※ 참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 II.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 17.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 **계면활성제** : 제품에 계면활성제로 사용된 모든 물질은 **물질명(계열)**로 표시
* 계열 : 음이온계, 비이온계, 양쪽성 이온계, 양이온계, 기타 등
- **보존제**
① 고시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 I. 공통기준 → 3.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② 각 품목별 분사형 제품 및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의 안전기준

■ 표시사항대상물질

- 제품을 구성하는 각 물질이 **표시사항대상물질(주요물질, 나노물질, 살생물물질)**에 속하는지를 확인하신 후 해당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복수 선택 가능).
※ 참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 II.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 17.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 추가/삭제

- 물질의 CAS No, 물질명, 배합비, 용도(기능), 표시사항 대상물질을 입력하고 또 **다른 물질을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물질 입력행이 생성되고 그 행에 추가 물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잘못 입력한 경우,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행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확인

- 첨부서류 중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 ☒ 위에서 기재한 성분 이외의 물질 또는 혼합물질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 해외 제조사가 함유성분(전성분)을 입력해야 할 경우(단, 신고유형은 수입)

함유성분(전성분)

작성방법

수입업체 직접 입력 여부

☐ 신고자 직접입력
 ☒ 원 제조사 입력

원 제조사요청 메일 주소

※ 수입업체 제조사가 성분비 공개를 거부 할 경우 수입제조사 입력을 선택하여 수입 제조사에게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입력 요청

○ 원제조사 메일 요청

- 함유성분(전성분)을 입력할 원 제조사의 이메일을 입력한 후, **입력요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때 작성하던 내용은 임시저장됩니다.

○ 원제조사의 메일 수신 및 인증

☆ Request of Entering the information of ingredient(s)

2020. 10. 14. (수) 09:11

보낸사람 VIP CHEMP<chemp@keiti.re.kr> 메시지 | 약속조대
받는사람

○(Korean) 안녕하십니까,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와 관련하여 첨부한 URL 주소를 클릭하여 해당 제품에 사용되는 전체 성분(물질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혼합물질인 경우에는 해당 혼합물질에 대한 MSDS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nglish) Hello, Please click on the URL address attached to report the safety check compliance register and enter the total component (material name) used for the product. If this is a mixture, please attach the MSDS for the mixture. Thank you.

[Enter the information of ingredient\(s\).](#)

KEITI evaluates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 biocides and the associated risks so that they can be safely used in daily lives
<http://www.keiti.re.kr/site/eng/main.do>

- 원제조사는 위와 같은 메일을 수신합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나고, 'Confirm the certificate number' 를 클릭합니다.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제도안내 전자민원 알림마당

Enter the information of ingredient(s) (entire constituent)

Receive certificate number

Information

Company name (Business name)	테스트기업1
Product name	디퓨저에이

- 원제조사는 메일로 인증번호를 받게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함유성분(전성분)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 CHEMP email authentication number

2020. 10. 14. (수) 09:14

보낸사람 VIP CHEMP<chemp@keiti.re.kr> 메시지 | 약속조대
받는사람 <jyyoo@solutis.co.kr>

보안 목적으로 메일 내용이 일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미지/링크 표시화?](#)

email authentication number : 6y27o3
Thank you.

Enter the information of ingredient(s) (entire constituent)

6y27o3 Confirm the certificate number

Information

Company name (Business name)	테스트기업1
Product name	디퓨저에이

○ 원제조사의 함유성분(전성분) 입력 및 확인

Ingredient(s) (entire constituent)

CAS No.	Substance name(s)	Mixing ratio	Purpose (function)	Chemical substance subject to label	Add
☐ mixtures ☐ substance search			==select==	☐ Active substance(s) ☐ Nano-material ☐ Biocide(s)	Delete
☐ mixtures ☐ substance search			==select==	☐ Active substance(s) ☐ Nano-material ☐ Biocide(s)	Delete
☐ mixtures ☐ substance search			==select==	☐ Active substance(s) ☐ Nano-material ☐ Biocide(s)	Delete
☐ mixtures ☐ substance search			==select==	☐ Active substance(s) ☐ Nano-material ☐ Biocide(s)	Delete
☐ mixtures ☐ substance search			==select==	☐ Active substance(s) ☐ Nano-material ☐ Biocide(s)	Delete

Save

(6) 첨부서류 및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제출

첨부서류

표시도안 견본 (첨부문서등 포함) (pdf, hwp)

표시도안이 제품에 부착된 견본사진 (표시도안 미리보기 참조) (파일사이즈 3MB 이하) (gif, jpg, jpeg, png, zip)

전면사진

후면사진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pdf)

기타첨부서류 (pdf)

■ 표시도안이 제품에 부착된 견본사진

- 제품의 사진은 전면사진과 후면사진으로 구분되며, 제품의 전체 형태 이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품 전면사진은 제품명이 나오게,
후면사진에는 부착된 표시 견본의 글씨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제품의 내용물을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전용용기가 구성품으로 있는 경우는 그 용기도 포함하여 1차 포장 제품과 2차 포장 제품의 사진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첨부된 견본사진에는 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을 제품 겉면의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표시면의 면적이 좁아 표시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면의 면적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표시사항은 첨부문서(제품 설명서, 보조 태그 등)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활자의 크기는 표시면의 면적에 따른 표시활자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면의 면적 200 cm² 이상 : 8 포인트 이상
 - 표시면의 면적 200 cm² 미만 : 6 포인트 이상

- 첨부할 수 있는 제품사진 파일의 최대크기는 파일별로 각 3MB입니다(파일 크기 제한은 제품사진에만 존재).

※ 참고

- 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고시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 I. 공통 표시방법

■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 표시 견본



- 표시도안 미리보기를 참고하여 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을 제품 겉면의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제품에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이 사용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혼합물의 분류기준에 따른 신호어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물질이 산도조절제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

* 그 함량이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유독물질의 지정고시」또는 환경부 고시「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 따른 혼합물의 지정기준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 표시 견본을 이미지 또는 PDF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고시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 II.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 고시 [별표 6 부록 1] 그림기호 표시방법 예시
- 고시 [별표 6 부록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도안 예시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을 PDF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기업 대표자의 서명 또는 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여러 파일을 첨부해야 할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다수의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ODM 납품 증명서류

- 신고 유형이 제조이면서 ODM(주문자 개발 제조)인 경우는 ODM 납품 증빙서류를 PDF나 zip 압축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주문자별로 제품명, 납품하는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주문자별 제품명, 사진 등 제품정보 이외에 동일한 ODM제품을 여러 주문자에게 납품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문자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납품 계약서 사본 등 포함)를 첨부합니다.

※ 참고

- 고시 [별표 7]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제출 제품·서류의 작성범위 및 방법 → <표2> 신고 제출 서류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신고 대상 제품 정보서

■ 제품 겉면, 포장 형태별 표시면적 측정 방법

- 신고 제품의 용기 및 포장형태를 고려하여 유사한 제품용기 및 포장상자의 표시면적 계산방법을 참고하여 계산하여야 함
- 제품용기 및 포장상자의 표시면적 계산 결과를 아래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업로드하여야 함

1. 제품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2. 표시면의 면적이 50 cm ² ~ 100 cm ² 인 제품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3. 표시면의 면적이 50 cm ² 미만인 제품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주표시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0000 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 제조연월: 유통기한: 어는점: 중량·용량·패수: 액상: 표준사용량: 제조자, 주소, 연락처: 판매자, 주소, 연락처: 제조국명, 제조회사: 수입자, 주소, 연락처: 사용 물질 주요물질: 신호어 보존제: 그림문자 알레르기물질: 계면활성제: 기타물질: 사용방법 ① 사용상 주의사항 ① 응급처치 ① ①	<주표시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0000 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 제조연월: 유통기한: 어는점: 중량·용량·패수: 액상: 표준사용량: 제조자, 주소, 연락처: 판매자, 주소, 연락처: 제조국명, 제조회사: 수입자, 주소, 연락처: 사용 물질 주요물질: 신호어 보존제: 그림문자 알레르기물질: 계면활성제: 기타물질: 사용방법 ① 사용상 주의사항 ① 응급처치 ① ①	<주표시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0000 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 제조연월: 유통기한: 어는점: 중량·용량·패수: 액상: 표준사용량: 제조자, 주소, 연락처: 판매자, 주소, 연락처: 제조국명, 제조회사: 수입자, 주소, 연락처: 사용 물질 주요물질: 신호어 보존제: 그림문자 알레르기물질: 계면활성제: 기타물질: 사용방법 ① 사용상 주의사항 ① 응급처치 ①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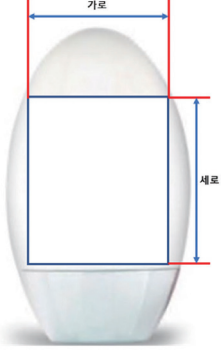
붙임 2		제품용기 및 포장상자의 표시면적 계산 결과				
상호명	접수번호	제품명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번호	구분	중량 / 용량 등	용기 / 포장 형태	측정치수 (cm)	표시면적 (cm ²)	표시도안 견본 적용 여부
1	'제품용기' 인지 '포장상자' 인지 표기	신고 제품의 중량 (용량)을 각각 기재	제품용기 및 포장 상자의 형태를 기재 (P.46~P.48 참조)	○ 원통형 구조 : 높이, 둘레길이 측정표기 ○ 각형구조 : 가로, 세로, 높이를 측정표기	최종 면적을 표기	표시도안 견본 1안, 2안, 3안 중 부착할 표시도안 견본을 선택 하여 표기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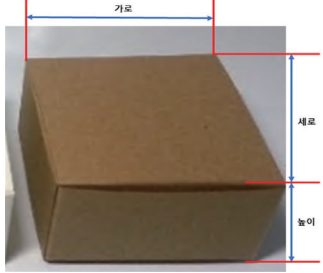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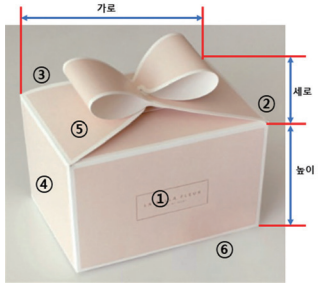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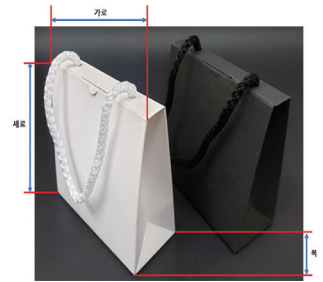
신고 제품에 대한 용기 및 포장상자에 대한 표시면적 계산결과임을 확인합니다 .

작성일자 : 20
 상 호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표시면적 계산 방법

번호	포장형태	표시면적 계산	비고
①	원통형 제품용기의 표시면적 (cm2)	$= \text{높이} \times \text{둘레길이}$ ○(높이) 바닥면부터 용기 마개를 끼우기 위해 굴곡이 지는 부분 전까지 ○(둘레길이) 줄자를 이용하여 용기의 둘레를 측정	

번호	포장형태	표시면적 계산	비고
②	납작한 원통형 용기의 표시면적 (cm2)	$= \text{높이} \times \text{둘레길이}$ ○(높이) 바닥면부터 용기 마개를 끼우기 위해 굴곡이 지는 부분 전까지(cm) ○(둘레길이) 줄자를 이용하여 용기의 둘레를 측정(cm)	
③	납작한 유선형 용기의 표시면적 (cm2)	$= (\text{가로} \times \text{세로}) \times 2$ ※ 용기 안쪽에 직사각형을 그려 가로(cm)와 세로(cm) 를 측정하되, 앞면과 뒷면의 표시면적을 합산하여야 함	
④	손잡이형 용기의 표시면적 (cm2)	$= \text{높이} \times \text{둘레길이}$ ○(높이) 라벨부착 표시선의 높이(cm) ○(둘레길이) 줄자를 이용하여 용기의 둘레를 측정 (cm)	
⑤	구 모양의 용기 표시면적	※ 표시면적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Tag를 이용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토록 함	

번호	포장형태	표시면적 계산	비고
⑥	사각 제품용기의 표시면적 (cm ²)	$= (\text{가로} \times \text{세로}) \times 4$ ※ 측정 단위는 cm 임	
⑦	납작한 정사각형 포장상자의 표시면적 (cm ²)	$= [(\text{가로} \times \text{세로}) \times 2] + [(\text{가로} \times \text{높이}) \times 4]$ ※ 측정 단위는 cm 임	
⑧	납작한 직사각형 포장상자의 표시면적 (cm ²)	$= [(\text{가로} \times \text{세로}) \times 2] + [(\text{가로} \times \text{높이}) \times 2] + [(\text{세로} \times \text{높이}) \times 2]$ ※ 측정 단위는 cm 임	
⑨	선물용 직사각형 포장상자의 표시면적 (cm ²)	※ 윗면(⑤)은 모양으로 인해 표시면적에서 제외하되, 바닥면(⑥)은 계산하고, 전면(①)과 뒷면(③)의 면적이 같고, 양 측면(②, ④)의 면적이 같으므로 5개면(①, ②, ③, ④, ⑥)의 표시면적을 계산 (측정단위는 cm 임) $= (\text{가로} \times \text{세로}) + [(\text{가로} \times \text{높이}) \times 2] + [(\text{세로} \times \text{높이}) \times 2]$	
⑩	손잡이가 있는 선물용 직사각형 포장상자의 표시면적 (cm ²)	※ 포장상자의 전면과 뒷면, 바닥면의 표시면적을 측정 (측정단위는 cm 임) $= [(\text{가로} \times \text{세로}) \times 2] + (\text{세로} \times \text{폭})$	

■ 용기 재질 동일 여부 확인서

- 여러 개의 중량 또는 용량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각 중량 또는 용량 등의 제품 용기 및 포장에 대한 고시 별표 3에 따른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용기 재질이 상이한 경우 : 용기 재질이 상이한 추가 제품에 대하여 확인결과서 발급 기관에 문의하여 고시 별표 3에 따른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의뢰 신청 후,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업로드하여야 함
 - 용기 재질이 동일한 경우 : 확인결과서를 받은 제품용기 재질과 추가한 중량·용량·매수·크기 재질이 동일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업로드하여야 함

붙임 3 □ 중량 / □ 용량 / □ 매수 / □ 크기 추가 용기 재질 동일 여부 확인서				
상호명	접수번호	제품명	확인결과서 외 추가된 중량/용량/매수/크기	작성자
(서명 또는 인)				
구분	몸체 재질	두경(뚜개) 재질	실링재 재질	
확인결과서를 받은 제품의 용기 재질	LDPE, HDPE, PP, PET, PVC, PU, PS 등의 재질 중 어느 하나를 표기	LDPE, HDPE, PP, PET, PVC, PU, PS 등의 재질 중 어느 하나를 표기	NBR, HNBR, EPDM, SBR, CM, 등의 재질 중 어느 하나를 표기(실링재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번호	구분	몸체 재질	두경(뚜개) 재질	실링재 재질
1	추가된 중량/용량/매수/크기를 각각 표기	LDPE, HDPE, PP, PET, PVC, PU, PS 등의 재질 중 어느 하나를 표기	LDPE, HDPE, PP, PET, PVC, PU, PS 등의 재질 중 어느 하나를 표기	NBR, HNBR, EPDM, SBR, CM, 등의 재질 중 어느 하나를 표기(실링재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확인결과서 상의 용기 재질과 □ 중량 / □ 용량 / □ 매수 / □ 크기 추가 제품의 용기 재질은 상기 작성 내역과 같으며, 작성 내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 20 . . .
 상호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표시도안 미리보기

<작성 예시>

붙임 3 □중량 / ■용량 / □매수 / □크기 추가 용기 재질 동일 여부 확인서				
상호명	접수번호	제품명	확인결과서 외 추가된 용량	작성자
테스트기업	A-200515-0000	123qqq_ 테스트	50mL, 75mL, 150mL	홍길동 (서명 또는 인)
구분	몸체 재질	두껍(얇개) 재질	실링제 재질	
확인결과서를 받은 제품의 용기 재질	LDPE	PP	silicone	
번호	구분	몸체 재질	두껍(얇개) 재질	실링제 재질
1	50 mL	LDPE	PP	silicone
2	75 mL	LDPE	PP	silicone
3	150 mL	LDPE	PP	silicone

○확인결과서 상의 용기 재질과 □중량 / ■용량 / □매수 / □크기 추가 제품의 용기 재질은 상기 작성 내역과 같으며, 작성 내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 2020. 05. 20.
상 호 명 : 테스트기업
대 표 자 : 백 소 저 (서명 또는 인)

어린이보호표장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

품목	세탁세제	제품명	센터리아섬유유연제 대표제품 #31 수입 #1
용도	섬유용	제형	비분사형/액체형
제조연월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어는점		중량·용량·매수	9.56 L
액성		표준사용량	고수위(물의 양 : 90L, 사용량 : 60 mL) 중수위(물의 양 : 60L, 사용량 : 40 mL) 저수위(물의 양 : 45L, 사용량 : 30 mL) 최저수위(물의 양 : 30L, 사용량 : 20 mL)
판매자, 주소, 연락처	(주)나날, (037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2 - 0 110동 , 010-1234-5678		
제조국, 제조회사	미국, 몬산토		

사용 물질

주요물질	에톡실화된 도데실-1-올, 에톡실화된 알코올, C12-16, 황산, 소듐염
보존제	벤조산 소듐
알레르기물질	
계면활성제	에톡실화된 도데실-1-올, 프로페인-1, 3-다이올, 에톡실화된 알코올, C12-16, 황산, 소듐염, 3-(도데실아미노)프로페인-1,2-다이올, 2-[2-[비스(카복시메틸)아미노]에틸-(카복시메틸)아미노]아세트산, 물
기타물질	

사용방법	세탁 후 마지막 헹굼시 헹굼물에 넣어주세요. 부드럽고 향긋한 빨래를 원하시면 물로 다시 헹구지 마세요.
사용상 주의사항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빈 용기에 담을 경우, 비닐팩을 두 손으로 잡은 후 빈 용기에 천천히 따르세요. 빈 용기에 담은 후 내용물이 남았을 경우 쏟아지지 않도록 밀봉해서 보관하세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동절기에는 실내에서 보관하세요. (저온에서 얼었을 경우 따뜻한 물에 녹여서 사용하세요) 세제, 표백제와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표준사용량만 사용해도 충분하며,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응급처치	눈에 들어간 경우 흐르는 물에 씻도록 하고, 만일 마셨을 경우 토하게 한 후 의사와 상의하세요. 피부가 민감한 분은 직접 닿지 않게 주의하시고 닿았을 경우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 신고 내용 입력과 첨부파일 업로드까지 마친 후, 하단의 표시도안 미리보기를 통하여 제품의 결면 또는 포장 표시견본의 표시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제출

- 항목 입력 중 임시저장 버튼을 사용하여 중간중간 저장할 수 있으며, 항목들을 모두 입력하면 모두 다 입력되었는지 정합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항목이 입력되면 제출 버튼을 사용하여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를 수행합니다. 신고서 제출 후에는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7) 기타사항

■ 수정·보완요청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HOME > 생활화학제품 >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 분류: 분류 선택 • 품목: 품목 선택 • 제품구분: 전체 • 상태: 전체

• 접수일자: 2019-01-21 ~ 2019-02-21 • 검색어:

• 총계시물 146건 (2/15)

No.	제품구분	상태	품목	제품명	상호	담당자	접수일자	남은 처리기간	파생제품
11	대표	수정보완요청	세탁제제	선택리아성유연제 대표 제품 #31 수입 #1	(주)나날	기담1	2019-02-18	27일	
12	대표	중형서 발급완료	세탁제제	선택리아성유연제 대표 제품 #31 수정보완 #1	(주)나날	기담1	2019-02-18		파생신고

-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신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에 미비점이 있으면 수정·보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수정보완이 요청되면 신고인에게 수정·보완이 요청되었음을 알리는 메일이 송부되며, 기업사용자 화면에 수정·보완 요청받은 신고서가 있음이 보여집니다.

■ 수정·보완 요청 완료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제품 신고-대표제품

HOME > 생활화학제품 >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 제품 신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의 요청사항 확인

18-0029 (2019-02-18) • 신고번호(완료일):
• 담당자 연락처: 02-1234-1234 • 상태: 수정보완요청

※ 신고유형: 담당자의 수정보완 요청 사항입니다. (빨간색, 적색)

제조/수입: ☐ 제조 ☒ 수입

제조국(수입인 경우): 미국 제조회사(수입인 경우): 온산토

신고 대상 정보

대표/작성 구분: 대표제품

제품명: 선택리아성유연제 대표제품 #31 수입 #1

품목: 세탁제제-세탁제제(성유물)

표시도안 미리보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로부터 수정·보완이 요청되면, 기업담당자는 수정·보완해야 할 항목을 확인하고 신청서 상단의 수정보완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보완되어야 하는 항목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신청서 상단의 수정보완요청 사유 조회를 통해 자세한 요청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업담당자는 신청서 아래의 임시저장 버튼 및 수정보완 제출 버튼을 사용하여 임시저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에게 수정보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보완 제출 버튼을 클릭할 때 작성 내용에 대한 정합성 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파생제품 신고

■ 대표제품과 파생제품의 정의

- 대표제품 :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
- 파생제품 :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안전기준 물질이 변경이 없는 제품
- 단, 용량만 변경 되는 제품의 경우 변경제품으로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파생제품의 제품명은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 파생제품 신고절차

• 송계시율 147건 (2/15)

No.	제품구분	상태	품목	제품명	상호	담당자	접수일자	남은 처리기간	파생제품
11	대표	증명서 발급완료	세탁제제	센터리아설유연제 대표 제품 #31 수정보완 #1	(주)나날	기담1	2019-02-18	5일 이내	파생신고
12	파생	증명서 발급완료	세탁제제	센터리아설유연제 대표 제품 #31 수정보완 #1 파생 #1	(주)나날	기담1	2019-02-18	10일 이내	증명서 발급 완료시
13	대표	반려	세탁제제	센터리아설유연제 대표 제품 #31	(주)나날	기담1	2019-02-18	20일 이내	임시저장시
14	대표	임시저장	세탁제제	센터리아설유연제 대표 제품 #31	(주)나날		2019-02-18	30일 이내	파생신고

- 파생제품 신고를 위해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제품신고 메뉴로 접근합니다.

파생제품 신고는 대표제품이 신고 완료된 상태

- 파생제품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파생제품 신고 화면이 발생합니다. 이때, 대표제품의 신고번호를 비롯한 대표제품의 모든 속성이 기본값으로 세팅되므로, 이를 기반으로 파생제품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방법은 대표제품과 동일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4호 서식]을 통해 파생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 파생제품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고시 [별표 3]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이 적합함을 확인한 시험성적서 사본

- 신고사항에는 변경 내용을 글자*로만 텍스트박스에 기입합니다.

* 입력 가능 최대 길이 : 영문 4,000자, 한글 1,000자

5)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예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고번호 제 CA19-09-0029 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신고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나날	123-12-12345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홍길동	김형석 (휴대전화: 010-1234-5678) (전자우편: hskim@nana1mi.com)
신고제품	소재지(사업장)	
	(087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2-0 110동	(전화번호: 02-1002-1002) (팩스번호: 02-1001-1001)
	제조 수입	품목
	[☒] 제조 [] 수입	세탁제제
	제품명	용도
	센터리아설유연제	
제형	중량·용량·매수	
액체형	100 L	
제조국명(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수입의 경우)	
신고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019 년 02 월 18 일

한 국 환 경 산 업 기 술 원 장

210mmX297mm[복합지(160g/㎡)]

2. 신고시 확인사항 (주요 수정·보완사항)

구분	확인사항
공통	☐ CHEMP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Chemp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공지사항 63번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청 업무 매뉴얼 ☐ 공지사항 20번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방향제신고 예시 동영상 https://youtu.be/H6AnVvOV5Cg ※ 기타 기본 신고 동영상 https://youtu.be/uzcBEGyWGaw
	☐ 전성분을 꼭 확인하여 작성 ☐ 전성분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받을 경우, 법제58조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안내사항 ☐ 대표제품에서 향료, 염료 변경 등과 같은 파생제품이 있을 경우, 파생제품 신고 - 파생으로 신고할 경우 모든 제품이 동일한 신고번호를 사용하게 되므로, 향후 안전성조사 등 사후관리에서 하나의 제품이 안전·표시 기준 위반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전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가 진행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신고하십시오. ※ “파생제품”이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대표제품)과 비교 ①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②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③ 파생제품의 제품명은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다.
	☐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붙일 견본은 기준에 맞는 사항을 모두 표시하고 문구가 정확히 들어있어야 하며, 제품 출고시에도 이 문구가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고에 대한 법적책임은 신고자 및 사업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유형	☐ 직접제조, OEM, ODM 인지 확인 ☐ 국문 기재가 원칙 ☐ 영문명 기재를 원할 경우 국문명(영문명)으로 기재할 것 (참고) 표시도안견본에는 영문활자의 크기가 국문활자의 크기보다 작을 것
제품명	☐ 국문 기재가 원칙이므로, 영문명 기재를 원할 경우 국문명(영문명)으로 기재 (예시) 바이크클린(BIKE CLEAN) O, BIKE CLEAN(바이크클린) X, (참고) 표시도안 견본에는 영문활자의 크기가 국문활자의 크기보다 작을 것 시험결과서의 제품명과 동일하게 기재

구분	확인사항
분류·품목	☐ 확인결과서와 동일하게 모든 품목을 선택/추가 입력 ※ 한 개의 제품에 2개의 신고번호가 생길 수 없습니다. ☐ 확인결과서를 참고하여, 세부제형을 표기해주시요.
제형	☐ 확인결과서의 제형과 동일하게 입력 (예시) 초 : 분사형-기타-연소형
유통기한	☐ 표시도안의 표기에 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어는점	☐ 어는점은 물과의 혼합비율과 혼합비율에 따른 어는점으로 표시 (표 또는 그래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 가능)
액성	☐ 표준사용량이 있을 경우, 표준사용량에 따른 액성을 입력 (참고) 액성에 표준사용량의 액성이 표시된 경우, “표준사용량” 표시 ☐ pH 범위에 맞는 액성을 입력
중량/용량/매수	☐ 확인결과서의 단위와 동일하게 입력 ☐ 동일한 함유성분으로 추가 용량이 있는 경우, 추가기재 (예시) 10mL, 20mL, 30mL, 40mL 등으로 나열식으로 기재
표준사용량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법정 계량단위로 표시 ☐ 희석해서 사용하는 농축제품 의 경우, 희석비율에 따른 표준사용량을 표시 ☐ 액성에 표준사용량의 액성이 표시된 경우, “표준사용량” 표시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여부	☐ 어린이보호포장 기준 확인(고시 [별표4]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참고) 제7조(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적용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의 별표 6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 위해우려제품 기준을 따르거나, 시행되는 고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을 미리 적용할 수 있다.
사용방법	☐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용기의 여는 방법’에 대한 문구를 기재하고 눈에 띄게 표시 (필요시 달는 방법 포함). (참고) 고시 [별표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사용방법 확인 ☐ 오탈자 확인
사용상 주의사항	☐ 필수 주의사항을 확인 후 해당시 반드시 기재 (참고) 고시 [별표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참고 ☐ 그림기호를 사용시 해당 관련 문구를 시스템에 기재 (그림기호 사용시, 표시도안에는 관련 문구 생략 가능) (참고) 고시 [별표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참고 ☐ 표시도안 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사용시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를 추가 기재
응급처치	☐ 필수 주의사항을 확인 후 해당시 반드시 기재 (참고) 고시 [별표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참고 ☐ 그림기호를 사용시 해당 관련 문구를 시스템에 기재 (그림기호 사용시, 표시도안에는 관련 문구 생략 가능) (참고) 고시 [별표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참고 ☐ 표시도안 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사용시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를 추가 기재

구분	확인사항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 확인결과서의 발행번호와 일치하게 입력 ☐ 검사를 받지 않은 물질에 관해서 확인결과 및 판정에 '해당없음' 입력 ☐ 확인결과서의 일부가 아닌 전부 업로드
함유성분 (전성분)	☐ 표시도안 중 사용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은 국문명으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 주요물질, 보존제, 알레르기물질, 계면활성제, 기타물질 (참고) 고시 [별표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참고 ☐ 초의 심지의 성분도 기재 필요 ○ 물질명은 심지(섬유) or 심지(나무) 등으로 표기 ○ 배합비는 0으로, 용도(기능)는 기타(직접입력)를 선택 후 심지로 기재 ○ CAS 번호가 없는 심지인 경우에는 증빙자료 업로드 - MSDS 자료 또는 함유성분 및 구매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URL 제출시 캡처본 함께 명기 ☐ 혼합물질 입력방법 ○ 혼합물질 선택→검색 클릭→팝업창 상단의 고유번호 직접입력 선택→CAS No.없음 선택 →제품에 표시할 이름 입력(예) 향료 등)→MSDS 업로드 ○ MSDS를 참고하여 전성분 CAS No. 및 물질명, 배합비 입력 ※ 배합비가 범위로 기재되어있을 경우 최대값 입력 ☐ 주요물질 체크 확인(표시사항대상물질) ○ 첨부서류 중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에 기재된 주요물질(최대함량 및 주요기능)과 일치 여부 ☐ 정제수(또는 물)의 카스번호 입력 ※ 정제수(또는 물) 카스번호 : 7732-18-5 ☐ 향료의 경우 향료(대표물질명 등)로 기입. ※ 대표물질은 최대 배합비 물질을 뜻함.
표시도안이 제품에 부착된 견본사진	☐ 표시면의 면적에 따른 표시사항 부착 (참고) 고시 [별표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참고 ☐ 표시도안 견본 수정시, 수정된 표시도안 견본이 부착된 제품사진을 첨부 ○ 표시도안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제공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촬영 ○ 고시 상, 용기의 바닥면은 표시면에 포함되지 않음
표시도안 견본	☐ 아래 항목을 눈에 띄는 방법(밑줄 굵게/글자색 변경 등)으로 표시 ※ ① 신고번호 ② 품목 ③ 사용상 주의사항 중 필수 문구에 한함 ④ 응급처치 중 필수 문구에 한함 ☐ 계면활성제의 경우, 물질명(계열)을 함께 표기 ☐ 해당 외 생략가능한 표시항목은 삭제 ☐ 그림기호를 사용시 저작권 표시 ※ 저작권표시 : © A.I.S.E. ☐ 한글명(영문명) 표시할 경우, 반드시 한글의 글자크기 크게 기재 ☐ 사용하는 표시도안만 업로드하여 주십시오.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 직인 또는 서명의 누락여부 확인 ☐ 시험검사기관에 제출된 성분 및 배합비 제출 ※ 분실하였을 경우, 고시 [별지2]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참고, 재작성
기타 첨부서류	☐ ODM 서류에 제품명을 명시 ☐ 추가 첨부서류 존재시 업로드, 중복되는 파일은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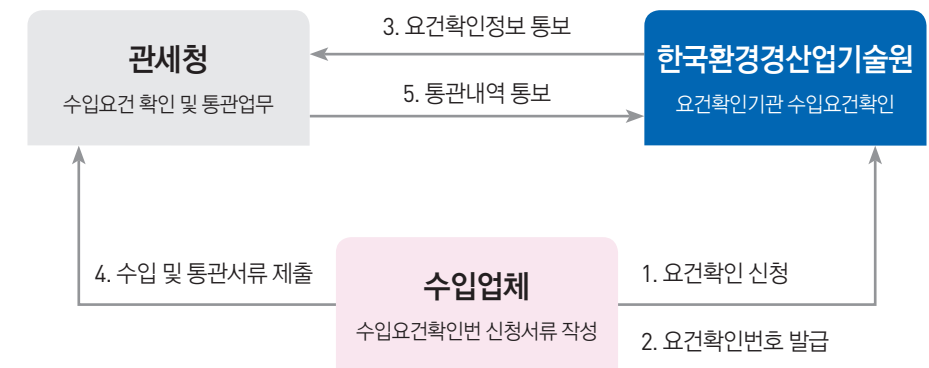
3. 수입요건확인번호 발급

■ 법적근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해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국내 반입 전 '수입요건확인번호' 발급 후 수입통관 절차 진행

■ 생활화학제품 수입통관 절차

- 신고, 승인이 완료된 제품은 CHEMEP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전자민원' 기능을 활용하여 '수입 요건승인 번호' 발급 후 수입통관 절차 진행 후 통관이 가능



■ 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번호 신청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로그인 → 전자민원 → 수입요건확인번호 신청 → 신청 제품 클릭 후 아래 화면의 수입요건확인번호 정보 작성 (신청인, 신청제품정보는 자동으로 입력 됨)
 ※ 유효기간이 유효한 자가검사번호, 신고번호, 승인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목록에서 자동 조회 됨

수입요건확인번호

수입요건확인번호	2423002051004406	유효기간
수량		※선택하세요※ ☒ 연간 수입예정 총 수량 입력
HSK No.	HSK No. 다운로드 검색	※ HSK(품목분류표) 관세청 '품목분류사전심사' 를 통해 확인 가능
원산지 정보	제조사 상호(명칭)	
	제조국 (수입)	※선택하세요※ ☒
	제조사 주소	

제출

취소

- 수입요건확인번호는 자동으로 부여되며 발급이 완료된 후 사용가능 함
- 수량은 연간 수입 계획량을 최대로 작성하되,
 - 위해우려제품은 자가검사번호에 해당되는 대표제품과 파생제품 수입량을 합산하여 입력하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대표제품과 파생제품 수입요건확인 번호 신청시 각각 입력
- HSK 번호는 관세청 '품목분류사전심사' 를 통해 확인(예시 : 향초 제품의 HS.CODE는 3307.41-0000)
- 제조사가 다국적 공장 운영 시에는 제조사 본사 주소를 기입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무료로 발급되며,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 ※ 단, 자가검사번호, 신고번호, 승인번호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만료 될 수 있음

■ 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번호 발급 이후 확인 방법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급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로그인 → 전자민원 → 수입요건확인번호 신청 → 처리여부 'Y' 상태 제품 클릭 → 수입요건확인번호 확인
- UNI-PASS(<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입 → 수입요건 승인내역 → 발급 완료된 수입요건확인번호로 '요건승인번호' 검색창 입력 → 승인수량, 통관수량, 잔량수량 등 확인 가능

■ 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번호 재발급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로그인 → 전자민원 → 수입요건확인번호 신청 → 처리여부 'Y' 상태 중 재발급 신청 제품 클릭 → 재발급 → 재발급사유 입력 → 수정 정보 입력 후 재발급 제출

■ 수입요건 면제신청

- 면제확인 신청사유(①확인 및 신고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량 시제품, ②연구·실험용, ③전시·박람회 출품용, ④전량 수출용 제품)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하는 기업은 수입요건 면제신청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비대상[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 2조 정의의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별표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로그인 → 전자민원 → 수입요건 면제신청 → 신청 클릭 후 아래 화면의 면제확인 대상제품, 생활화학제품 사용계획서 정보 작성 (신청인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

면제확인 대상제품

제조업자	제조국명	=선택하세요=		
	회사명			
대상제품	제품명			
	안전기준대상품목분	분류 선택	품목 선택	용도 선택
	수량		=선택하세요=	금액
사용장소				
면제내용		※안전기준대상품목분 선택시 면제내용은 자동 선택됩니다.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 화학제품안전법,관계 조항에 따른 확인·신고, 승인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량의 시제품 ☐ 기업,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실험·개발용으로 사용 ☐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제품 ☐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품구분 (건조, 연구용 제품 등 문구)		☐ 부속 ☐ 미부속 ※제품구분 미부속 시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사용계획서

수입 일정	
사용 기간	
내용 (면제확인 대상제품 소진시까지 사용계획 등 작성)	

첨부 서류

증빙자료

업로드

※ 첨부 서류는 선택사항

제출

목록

- 제조업자: 제품 제조국으로 정보 입력 (판매국X)
- 대상제품: 1개 제품만 신청가능. 면제 확인이 필요한 제품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면제 확인을 요청
- 사용장소: 면제확인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장소명, 상세주소 작성(전량 수출제품인 경우에는 000 보관 후 00국 수출)
- 면제확인 신청사유: 한 가지 사유만 선택. 면제확인 신청사유가 상이 한 경우 사용장소, 수량, 사용계획서 구분하여 개별 신청.
- 면제확인 신청사유가 전량 수출인 경우 아래 화면의 국내보관소, 수출국가, 수출일정 추가 작성

생활화학제품 사용계획서

*수입 일정		
*사용 기간		
전량 수출을 목적인 제품에 한해 추가 작성	*국내보관소	
	*수출 국가	=선택하세요=
	*수출 일정	
*내용 (면제확인 대상제품 소진시까지 사용계획 등 작성)		

○ 첨부서류 : 선택사항이며, 추가 증빙자료 제출하는 경우 업로드



CHAPTER B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1. 품목별 안전기준

1. 세정제	80	17. 자동차용 부동액	106
2. 제거제	82	18. 인쇄용 잉크·토너	109
3. 세탁세제	84	19. 인주	110
4. 표백제	85	20.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111
5. 섬유유연제	86	21. 미용 접착제	112
6. 광택 코팅제	88	22. 문신용 염료	114
7. 특수목적코팅제	90	23. 살균제	117
8. 녹 방지제	92	24. 살조제	120
9. 다림질보조제	93	25. 기피제	122
10. 접착제	94	26. 목재용 보존제	124
11. 접합제	96	27.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125
12. 방향제	97	28. 초	126
13. 탈취제	99	29. 습기제거제	127
14. 물체 염색제	101	30. 인공 눈 스프레이	128
15. 물체 도색제	103	31. 공연용 포그액	129
16. 자동차용 워셔액	104	32. 어린이보호포장	130

부록 | 원부자재 규제물질 확인

1.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131
2. 안전보건공단(KOSHA)	134



1. 세정제

①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비스	7440-38-2	전 제형	5 이하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전 제형	5 이하
3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전 제형	5 이하
4	염화비닐	75-01-4	전 제형	5 이하
5	디클로로메탄	75-09-2	전 제형	-
6	납	7439-92-1	전 제형	1 이하
7	브롬화에틸	74-96-4	전 제형	-
8	노닐페놀류	-	전 제형	-
9	미세플라스틱 ¹⁾	-	전 제형	-
10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11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12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13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14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1)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②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mg/kg)			
			일반용 ¹⁾		자동차용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	외부용
1	폼알데하이드	50-00-0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120 이하
2	벤젠	71-43-2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60 이하
3	염산 또는 황산 ²⁾	7647-01-0 7664-93-9	HCl로서 0.04% 미만	HCl로서 10% 미만	HCl로서 0.04% 미만	HCl로서 2% 미만
4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³⁾	1310-73-2 1310-58-3	NaOH로서 5% 미만	NaOH로서 5% 미만	NaOH로서 5% 미만	NaOH로서 5% 미만

1) 자동차용 전용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2) 염산 또는 황산을 함유한 세정제에 적용되며, 기준은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산 농도임

3)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사용한 세정제에 적용되며, 기준은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염기 농도임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해 제품 제조 전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기준 %(w/w)			
			분사형		비분사형	
			일반용 ⁴⁾	자동차용 (외부용)	일반용 ⁴⁾	자동차용 (외부용)
1	프로필렌글리콜	57-55-6	35 이하	-	30 이하	-
2	개미산	64-18-6	0.50 이하	50 이하	1 이하	10 이하
3	메탄올	67-56-1	2 이하	35 이하	-	-
4	2-프로판올	67-63-0	10 이하	-	20 이하	-
5	아세톤	67-64-1	10 이하	10 이하	-	-
6	나프탈렌	91-20-3	0.2 이하	10 이하	0.01 이하	0.2 이하
7	벤질알코올	100-51-6	13 이하	65 이하	3 이하	-
8	에틸렌글리콜	107-21-1	35 이하	-	20 이하	-
9	글루타르알데하이드	111-30-8	0.02 이하	6 이하	0.002 이하	15 이하
10	살리실산메틸	119-36-8	20 이하	20 이하	-	-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w/w)			
			분사형		비분사형	
			일반용 ⁴⁾	자동차용 (외부용)	일반용 ⁴⁾	자동차용 (외부용)
11	벤조산벤질	120-51-4	0.1 이하	0.1 이하	20 이하	-
12	에탄올아민	141-43-5	0.04 이하	0.4 이하	0.04 이하	0.4 이하
13	자일렌(o-,m-,p-총합)	1330-20-7 108-38-3 106-42-3 95-47-6	3 이하	8 이하	2 이하	20 이하
14	1,2-벤즈아이스티아졸-3(2H)-온(BIT)	2634-33-5	8 이하	16 이하	-	-
15	트리클로산	3380-34-5	2 이하	2 이하	2 이하	-
16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7173-51-5	0.1 이하	0.4 이하	1 이하	15 이하
17	은	7440-22-4	7 이하	5 이하	-	-
18	구리	7440-50-8	12 이하	23 이하	-	-
19	염화벤질코늄, (C12-C18)알킬벤질데메틸암모늄염화물, 벤질알킬(C12-C16)디메틸암모늄	8001-54-5 68391-01-5 68424-85-1	0.3 이하	1 이하	10 이하	25 이하
20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26530-20-1	0.1 이하	0.3 이하	0.3 이하	5.8 이하
21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34590-94-8	45 이하	-	10 이하	-
22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	111-76-2	4 이하	14 이하	3 이하	25 이하
23	에탄올	64-17-5	-	-	45 이하	-
24	3-요오드-2-프로핀일 부틸 카바민산(IPBC)	55406-53-6	-	-	10 이하	65 이하
25	펜에탄올	60-12-8	10 이하	-	55 이하	-
26	2,6-다이-터트-부틸-p-크레졸	128-37-0	2 이하	2 이하	2 이하	40 이하
27	트리에탄올아민	102-71-6	2 이하	-	70 이하	-
28	과산화수소	7722-84-1	0.3 이하	1 이하	0.1 이하	1 이하
29	모르폴린	110-91-8	5 이하	-	1 이하	7 이하
30	에틸렌다이아민테트라아세트산	60-00-4	-	10 이하	-	3 이하
31	글리옥살	107-22-2	0.01 이하	-	0.002 이하	15 이하
32	산화에틸렌	75-21-8	3 이하	-	0.4 이하	-
33	벤조산	65-85-0	1 이하	-	20 이하	65 이하
34	플루오르화 수소	7664-39-3	10 이하	-	-	-
35	소듐 피리싸이온	3811-73-2	15 이하	0.3 이하	0.02 이하	15 이하
36	아연 피리싸이온	13463-41-7	0.1 이하	-	55 이하	-
37	클로로벤젠	108-90-7	1 이하	-	2 이하	10 이하
38	2-메톡시에탄올	109-86-4	0.4 이하	70이하	0.05 이하	0.3 이하
39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합	2682-20-4 26172-55-4 55965-84-9 etc	함유금지	함유금지	0.02 이하	0.2 이하

4) 실외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외관 전용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④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형 제품>

1)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벤조산나트륨, 차아염소산류, 리날로올, 제라니올, 탄산나트륨, 2-페톡시에탄올, 프로필알코올

<비분사형 제품>

1) 분사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2) 법 제12조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단,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4)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 2),3),4)에 해당하는 세정제 안전기준 물질이 있는 경우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

2. 제거제

①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전 제형	5 이하
2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전 제형	5 이하
3	염화비닐	75-01-4	전 제형	5 이하
4	디클로로메탄	75-09-2	전 제형	-
5	납	7439-92-1	전 제형	1 이하
6	비스	7440-38-2	전 제형	5 이하
7	브롬화에틸	74-96-4	전 제형	-
8	노닐페놀류	-	전 제형	-
9	미세플라스틱 ¹⁾	-	전 제형	-
10	폴리헥사메틸렌가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11	염화에톡시에틸가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12	폴리(헥사메틸렌비가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13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14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②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mg/kg)			
			일반용 ¹⁾		자동차용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	외부용
1	폼알데하이드	50-00-0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170 이하
2	벤젠	71-43-2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90 이하
3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²⁾	1310-73-2 1310-58-3	NaOH로서 5% 미만	NaOH로서 5% 미만	NaOH로서 5% 미만	NaOH로서 5% 미만

1) 자동차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2)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사용한 제거제에 적용되며, 기준은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염기농도임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해 제품 제조 전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w/w)	
			분사형	비분사형
1	프로필렌글리콜	57-55-6	-	65 이하
2	개미산	64-18-6	20 이하	8 이하
3	나프탈렌	91-20-3	0.2 이하	0.1 이하
4	벤질알코올	100-51-6	65 이하	20 이하
5	에틸렌글리콜	107-21-1	-	30 이하
6	글루타르알데하이드	111-30-8	0.03 이하	0.01 이하
7	에탄올아민	141-43-5	1 이하	0.2 이하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w/w)	
			분사형	비분사형
8	자일렌(o-,m-,p-총합)	1330-20-7 108-38-3 106-42-3 95-47-6	40 이하	20 이하
9	트리클로산	3380-34-5	15 이하	9 이하
10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7173-51-5	5 이하	-
11	은	7440-22-4	70 이하	-
12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26530-20-1	2 이하	-
13	염화벤잘코늄, (C12-C18), 알킬벤질데메틸암모늄염화물, 벤질알킬(C12-C16)디메틸암모늄	8001-54-5 68391-01-5 68424-85-1	70 이하	75 이하
14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34590-94-8	-	20 이하
15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	111-76-2	55 이하	-
16	3-요오드-2-프로판일 부틸 카바민산(IPBC)	55406-53-6	65 이하	20 이하
17	2,6-다이-터트-부틸-p-크레졸	128-37-0	15 이하	-
18	트리에탄올아민	102-71-6	55 이하	1 이하
19	과산화 수소	7722-84-1	2 이하	5 이하
20	모르폴린	110-91-8	15 이하	0.01 이하
21	글리옥살	107-22-2	0.03 이하	2 이하
22	산화에틸렌	75-21-8	7 이하	50 이하
23	벤조산	65-85-0	-	-
24	소듐 피리싸이온	3811-73-2	75 이하	15 이하
25	클로로벤젠	108-90-7	40 이하	0.3 이하
26	2-메톡시에탄올	109-86-4	1 이하	0.2 이하
27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합	2682-20-4 26172-55-4 55965-84-9 etc	함유금지	HCl로서 0.4 이하
28	염산 또는 황산 ³⁾	7647-01-0 7664-93-9	HCl로서 1 이하	HCl로서 0.4 이하

3)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산 농도임

④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형 제품>

1)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리날로올, 2-페녹시에탄올, 프로필알코올

<비분사형 제품>

1) 분사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2) 법 제12조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단,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4)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 2),3),4)에 해당하는 제거제 안전기준 물질이 있는 경우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

3. 세탁세제

①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벤젠	71-43-2	전 제형	5 이하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전 제형	5 이하
3	비소	7440-38-2	전 제형	5 이하
4	염화비닐	75-01-4	전 제형	5 이하
5	브롬화에틸	74-96-4	전 제형	-
6	미세플라스틱 ¹⁾	-	전 제형	-
7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8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9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10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11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1)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②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mg/kg)
1	전인산염	1314-56-3	10,000 이하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해 제품 제조 전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w/w)
1	머스크 케톤	81-14-1	6 이하
2	1,2-이염화에탄	107-06-2	60 이하
3	모노에탄올아민	141-43-5	40 이하
4	트리클로산	3380-34-5	10 이하
5	염화디옥틸다이메틸암모늄	5538-94-3	12 이하
6	은	7440-22-4	80 이하
7	과산화수소	7722-84-1	25 이하
8	테트라아세틸에틸렌다이아민	10543-57-4	45 이하
9	소듐 피리싸이온	3811-73-2	8 이하

④ 생분해도

- 제품 내 합성계면활성제가 포함된 경우 다음 규격중 하나에 적합해야 함

No	물질명	KS I ISO 9439	KS I ISO 7827
1	생분해도	60%(w/w) 이상	70%(w/w) 이상

⑤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형 제품>

-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비분사형 제품>

- 1) 분사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 2) 법 제12조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단,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 4)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 2),3),4)에 해당하는 세탁세제 안전기준 물질이 있는 경우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

4. 표백제

①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벤젠	71-43-2	전 제형	5 이하
2	비소	7440-38-2	전 제형	5 이하
3	염화비닐	75-01-4	전 제형	5 이하
4	브롬화에틸	74-96-4	전 제형	-
5	미세플라스틱 ¹⁾	-	전 제형	-
6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7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8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9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10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1)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②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수소이온농도	CAS No.	함량 기준(mg/kg)
1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¹⁾	1310-73-2 1310-58-3	NaOH로서 50,000 이하
2	전인산염	1314-56-3	10,000 이하
3	과산화수소 ²⁾	7722-84-1	15 % 이하

1)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사용한 표백제에 적용되며, 기준은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염기 농도임

2)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표백제에 대하여 적용

5. 섬유유연제

①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전 제형	5 이하
2	벤젠	71-43-2	전 제형	5 이하
3	카드뮴	7440-43-9	전 제형	1 이하
4	수은	7439-97-6	전 제형	1 이하
5	비소	7440-38-2	전 제형	5 이하
6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APEOs;alkylphenol ethoxylates)계 및 알킬페놀(alkylphenol)계	-	전 제형	-
7	디알킬(C12-C18)디메틸염화암모늄계	68391-05-9	전 제형	-
8	염화비닐	75-01-4	전 제형	5 이하
9	브롬화에틸	74-96-4	전 제형	-
10	2,2'-이미노다이에탄올	111-42-2	전 제형	-
11	형광증백제	-	전 제형	-
12	미세플라스틱 ¹⁾	-	전 제형	-
13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14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15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16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17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1)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②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mg/kg)
1	폼알데하이드	50-00-0	75 이하
2	글루타르알데하이드	111-30-8	1,000 이하
3	파라벤류 ¹⁾	99-76-3 94-26-8 120-47-8 4247-02-3 94-13-3 4191-73-5	단일물질 4,000 이하, 혼합물질 8,000 이하
4	페녹시에탄올	122-99-6	10,000 이하
5	트리클로산	3380-34-5	1,000 이하
6	메틸이소치아졸리논 ²⁾	2682-20-4 55965-84-9 etc	100 이하
7	5-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²⁾	26172-55-4 55965-84-9 etc	15 이하
8	벤즈이소치아졸리논	2634-33-5	500 이하
9	염화벤잘코늄	8001-54-5	500 이하
10	벤조산	65-85-0	5,000 이하
11	벤질알코올	100-51-6	10,000 이하
12	납	7439-92-1	20 이하
13	리모넨 ³⁾	138-86-3 5989-27-5 5989-54-8	10,000 이하
14	1,4-다이옥세인	123-91-1	100 이하

1) 파라벤류 : 메틸파라벤, 부틸파라벤, 에틸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2) 분사형을 제외한 비분사형 섬유유연제에 대하여 적용

3) D-리모넨 및 L-리모넨 포함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해 제품 제조 전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w/w)
1	개미산	64-18-6	10 이하
2	모노에탄올아민	141-43-5	10 이하
3	은	7440-22-4	9 이하
4	염산 또는 황산 ⁴⁾	7647-01-0	HCl로서 0.4 이하(농축형 HCl로서 1.2 이하)
5	과산화수소	7664-93-9	4 이하

4)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산 농도임

④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형 제품>

1)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비분사형 제품>

1) 분사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2) 법 제12조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단,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4)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 2),3),4)에 해당하는 섬유유연제 안전기준 물질이 있는 경우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

6. 광택코팅제

①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및 제품	검출허용한도(mg/kg)
1	염화비닐	75-01-4	전 제형	5 이하
2	트리페닐주석화합물	-	전 제형	-
3	트리부틸주석화합물	-	전 제형	-
4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전 제형	5 이하
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전 제형	5 이하
6	디메틸포름아미드	68-12-2	전 제형	-
7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8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9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10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11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②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mg/kg)			
			일반용 ¹⁾		자동차용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	외부용
1	폼알데하이드	50-00-0	70 이하	120 이하	20 이하	170 이하
2	아세트알데하이드	75-07-0	90 이하	150 이하	20 이하	300 이하
3	벤젠	71-43-2	20 이하	60 이하	10 이하	90 이하
4	나프탈렌	91-20-3	20 이하	100 이하	20 이하	200 이하

1) 자동차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해 제품 제조 전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w/w)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	실외용	실내용	실외용
1	에탄올	64-17-5	30 이하	-	-	-
2	벤조산벤질	120-51-4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3	프로필렌글리콜	57-55-6	8 이하	-	-	-
4	펜에탄올	60-12-8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
5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34590-94-8	10 이하	55 이하	40 이하	60 이하
6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BIT)	2634-33-5	1 이하	-	-	-
7	2,6-다이-터트-부틸-p-크레졸	128-37-0	2 이하	2 이하	2 이하	5 이하
8	2-프로판올	67-63-0	15 이하	-	40 이하	-
9	트리에탄올아민	102-71-6	30 이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10	에틸렌글리콜	107-21-1	4 이하	30 이하	-	-
11	벤질알코올	100-51-6	3 이하	35 이하	80 이하	45 이하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w/w)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 ²⁾	실외용	실내용	실외용
12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	111-76-2	2.5 이하	23 이하	8 이하	15 이하
13	3-요오드-2-프로판일 부틸 카바민산(IPBC)	55406-53-6	5 이하	10 이하	10 이하	20 이하
14	메탄올	67-56-1	10 이하	-	60 이하	-
15	자일렌(o-,m-,p-총합)	1330-20-7 108-38-3 106-42-3 95-47-6	2 이하	20 이하	5 이하	10 이하
16	개미산	64-18-6	1 이하	10 이하	1 이하	5 이하
17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26530-20-1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8	염산 또는 황산 ³⁾	7647-01-0 7664-93-9	HCl로서 0.05 이하	HCl로서 1 이하	HCl로서 0.1 이하	HCl로서 0.3 이하
19	은	7440-22-4	1 이하	-	-	-
20	모르폴린	110-91-8	1 이하	7 이하	1 이하	4 이하
21	프로필알코올	71-23-8	65 이하	-	85 이하	-
22	살리실산메틸	119-36-8	20 이하	-	30 이하	60 이하
23	1-헥사데칸올	36653-82-4	25 이하	-	-	-
24	이산화규소	7631-86-9	10 이하	-	-	-
25	산화에틸렌	75-21-8	0.3 이하	4 이하	15 이하	5 이하
26	구리	7440-50-8	6 이하	-	-	-
27	2-(2-메톡시에톡시)에탄올	111-77-3	9 이하	50 이하	85 이하	60 이하
28	1,4-디클로로벤젠	106-46-7	2 이하	20 이하	2 이하	10 이하
29	디클로로메탄	75-09-2	10 이하	-	65 이하	-
30	아연 피리싸이온	13463-41-7	4 이하	5 이하	55 이하	50 이하
31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합	2682-20-4 26172-55-4 55965-84-9 etc	함유 금지	함유 금지	0.1 이하	0.1 이하

2) 실외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3)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산 농도임

④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형 제품>

-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 리날로올, 제라니올, 탄산나트륨, 2-페톡시에탄올, 아세톤, 1,3-디클로로프로펜

<비분사형 제품>

- 분사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 법 제12조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단, 물질별 승인유효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 2),3),4)에 해당하는 광택코팅제 안전기준 물질이 있는 경우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

7. 특수목적코팅제

①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및 제품	검출허용한도(mg/kg)
1	염화비닐	75-01-4	전 제품(전 제형)	5 이하
2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전 제품(전 제형)	5 이하
3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전 제품(전 제형)	5 이하
4	트리페닐주석화합물	-	전 제품(전 제형)	-
5	트리부틸주석화합물	-	전 제품(전 제형)	-
6	니켈	7440-02-0	전 제품(분사형)	1 이하
7	디메틸포름아미드	68-12-2	전 제품(전 제형)	-
8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계 및 알킬페놀 (alkylphenol)계	-	정전기방지용(전 제형)	-
9	디알킬(C12-C18)디메틸염화암모늄계	68391-05-9	정전기방지용(전 제형)	-
10	2,2'-이미노다이에탄올	111-42-2	정전기방지용(전 제형)	-
11	납	7439-92-1	정전기방지용(전 제형)	1 이하
12	카드뮴	7440-43-9	정전기방지용(전 제형)	1 이하
13	수은	7439-97-6	정전기방지용(전 제형)	1 이하
14	비스	7440-38-2	정전기방지용(전 제형)	5 이하
15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16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17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18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19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②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mg/kg)			
			일반용 ¹⁾		자동차용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 ²⁾	외부용
1	폼알데하이드	50-00-0	70 이하	120 이하	20 이하	170 이하
2	아세트알데하이드	75-07-0	90 이하	150 이하	20 이하	300 이하
3	벤젠	71-43-2	30 이하	60 이하	10 이하	90 이하
4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117-81-7	500 이하	1,000 이하	500 이하	1,000 이하
5	글루타르알데하이드 ³⁾	111-30-8	30 이하	150 이하	-	-
6	1,4-다이옥세인 ³⁾	123-91-1	20 이하	150 이하	-	-
7	나프탈렌	91-20-3	20 이하	100 이하	20 이하	200 이하

1) 자동차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2) 발수용 제품은 제외

3) 정전기방지용에 한함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해 제품 제조 전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w/w)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	실외용	실내용	실외용
1	에탄올	64-17-5	30 이하	-	-	-
2	자일렌(o-,m-,p-총합)	1330-20-7	2 이하	20 이하	5 이하	10 이하
		108-38-3				
		106-42-3				
		95-47-6				
3	프로필렌글리콜	57-55-6	35 이하	35 이하	-	-
4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34590-94-8	45 이하	45 이하	-	-
5	2-프로판올	67-63-0	75 이하	75 이하	-	-
6	트리에탄올아민	102-71-6	35 이하	35 이하	70 이하	70 이하
7	에틸렌글리콜	107-21-1	15 이하	15 이하	-	-
8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합	2682-20-4 26172-55-4 55965-84-9	함유 금지	함유 금지	0.7 이하	0.7 이하

④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형 제품>

-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 1,2-벤즈아이스티아졸-3(2H)-온, 봉사(보락스)

<비분사형 제품>

- 분사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 법 제12조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단,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 2),3),4)에 해당하는 특수목적코팅제 안전기준 물질이 있는 경우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

8. 녹방지제

①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염화비닐	75-01-4	전 제형	5 이하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전 제형	5 이하
3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전 제형	5 이하
4	니켈	7440-02-0	전 제형	-
5	디클로로메탄	75-09-2	전 제형	-
6	에틸렌디클로라이드	107-06-2	전 제형	-
7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8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9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10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11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②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mg/kg)
1	폼알데하이드	50-00-0	70 이하
2	아세트알데하이드	75-07-0	50 이하
3	벤젠	71-43-2	10 이하
4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117-81-7	1,000 이하
5	나프탈렌	91-20-3	100 이하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해 제품 제조 전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w/w)	
			분사형	비분사형
1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34590-94-8	-	7 이하
2	2,6-다이-터트-부틸-p-크레졸	128-37-0	10 이하	5 이하
3	2-프로판올	67-63-0	-	40 이하
4	2-부톡시에탄올(부틸셀솔브)	111-76-2	-	25 이하
5	자일렌(o-,m-,p-총합)	1330-20-7 108-38-3 106-42-3 95-47-6	-	3 이하
6	에탄올아민	141-43-5	4 이하	1 이하
7	2-[2-메톡시에톡시]에탄올	111-77-3	-	6 이하
8	염산 또는 황산 ¹⁾	7647-01-0 7664-93-9	HCl로서 5 이하	HCl로서 5 이하

1)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산 농도임

④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형 제품>

- 1)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 2) 리날로올, 트리에탄올아민, 아세톤, 구리

<비분사형 제품>

- 1) 분사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 2) 법 제12조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단,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 4)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 2),3),4)에 해당하는 녹 방지제 안전기준 물질이 있는 경우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

9. 다림질보조제

①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아세트알데하이드	75-07-0	전 제형	-
2	폼알데하이드	50-00-0	전 제형	-
3	글루타르알데하이드	111-30-8	전 제형	-
4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5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6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7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8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②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mg/kg)
1	3-요오드-2-프로필일 부틸 카바민산(IPBC)	55406-53-6	10 이하
2	2-프로판올	67-63-0	60 이하
3	아세톤	67-64-1	20 이하

10. 접착제

①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트리페닐주석화합물(TPT)	-	전 제형	-
2	트리부틸주석화합물(TBT)	-	전 제형	-
3	유기수은화합물	-	전 제형	-
4	염화비닐	75-01-4	전 제형(PVC용 접착제 제외)	-
5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584-84-9	전 제형	-
6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전 제형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제외)	-
7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전 제형	5 이하
8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전 제형	5 이하
9	비소	7440-38-2	분사형	5 이하
10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11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12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13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14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②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mg/kg)			
			일반용		순간·강력용	
			분사형	비분사형	분사형	비분사형
1	폼알데하이드	50-00-0	50 이하	100 이하	50 이하 ¹⁾	100 이하 ¹⁾
2	아세트알데하이드	75-07-0	350 이하	1,000 이하	350 이하	-
3	클로로포름	67-66-3	120 이하	1,000 이하	120 이하	1,000 이하
4	톨루엔	108-88-3	1,0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5	디메틸포름아미드	68-12-2	300 이하	1,000 이하	300 이하	-
6	디클로로메탄	75-09-2	200 이하	800 이하	200 이하	800 이하
7	비소	7440-38-2	-	20 이하	-	20 이하
8	벤젠	71-43-2	20 이하	60 이하	20 이하	60 이하
9	자일렌(o-,m-,p-총합)	1330-20-7 108-38-3 106-42-3 95-47-6	1,0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
10	하이드로퀴논 ²⁾	123-31-9	-	-	-	1,000 이하
11	아크릴로니트릴 ²⁾	107-13-1	-	-	200 이하	200 이하
12	염화비닐 ³⁾	75-01-4	200 이하	200 이하	-	-

1)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순간·강력접착제는 1% 미만을 적용

2)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순간·강력접착제에 적용

3) PVC (Polyvinyl chloride) 고분자를 주성분으로 한 접착제 또는 PVC용 접착제에만 적용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해 제품 제조 전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w/w)	
			분사형	비분사형
1	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128-37-0	20 이하	50 이하
2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26530-20-1	3 이하	7 이하
3	산화에틸렌	75-21-8	50 이하	-

④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형 제품>

1)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에탄올, 프로필렌글리콜,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BIT), 탄산나트륨, 2-페녹시에탄올, 에틸렌글리콜, 벤질알코올,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 3-요오드-2-프로판일 뷰틸 카바민산(IPBC), 메탄올, 자일렌, 염화벤잘코늄[[C12-C18]알킬벤질 데메틸암모늄염화물, 벤질알킬(C12-C16)디메틸암모늄 포함], 아세톤, 은, 프로필알코올, 페놀, t-부탄올

<비분사형 제품>

1) 분사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2) 법 제12조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¹⁾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단,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4)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 2),3),4)에 해당하는 접착제 안전기준 물질이 있는 경우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

11. 접합제

①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벤젠	71-43-2	전 제형	5 이하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전 제형	5 이하
3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전 제형	5 이하
4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117-81-7	전 제형	-
5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6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7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8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9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②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mg/kg)
1	폼알데하이드	50-00-0	100 이하
2	아세트알데하이드	75-07-0	1,000 이하
3	나프탈렌	67-66-3	2,000 이하
4	알루미늄	108-88-3	3,000 이하
5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68-12-2	9,000 이하
6	1-도데칸올	75-09-2	20,000 이하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해 제품 제조 전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기준 %(w/w)	
			분사형	비분사형
1	1,2,4-트라이메틸벤젠	95-63-6	20 이하	1.5 이하
2	1,3,5-트라이메틸벤젠	108-67-8	20 이하	1 이하
3	리튬	7439-93-2	-	10 이하

④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형 제품>

-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비분사형 제품>

- 1) 분사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 2) 법 제12조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단,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 4)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 2),3),4)에 해당하는 접합제 안전기준 물질이 있는 경우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

12. 방향제

①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벤젠	71-43-2	전 제형	5 이하
2	염화비닐	75-01-4	전 제형	5 이하
3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전 제형	5 이하
4	붕소산 사나트륨염	1330-43-4	전 제형	-
5	1,4-디클로로벤젠	106-46-7	전 제형	-
6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전 제형	-
7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전 제형	-
8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전 제형	-
9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전 제형	-
10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전 제형	-

②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mg/kg)	
			분사형	비분사형
1	폼알데하이드	50-00-0	12 이하	25 이하
2	메탄올	67-56-1	2,000 이하	2,000 이하
3	글리옥살	107-22-2	30 이하	70 이하
4	3-요오드-2-프로판일 뷰틸 카바민산(IPBC)	55406-53-6	8 이하	-
5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117-81-7	1,600 이하	-
6	아세트알데하이드	75-07-0	60 이하	300 이하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해 제품 제조 전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기준 %(w/w)			
			분사형		비분사형	
			일반용	자동차용 (실내용)	일반용	자동차용 (실내용)
1	프로필렌글리콜	57-55-6	-	47 이하	-	-
2	벤조산	65-85-0	3 이하	1 이하	-	-
3	2-프로판올	67-63-0	25 이하	12 이하	-	-
4	살리실산	69-72-7	88 이하	37 이하	-	-
5	벤질알코올	100-51-6	36 이하	17 이하	-	-
6	에틸렌글리콜	107-21-1	0.2 이하	0.2 이하	-	-
7	살리실산메틸	119-36-8	27 이하	13 이하	-	-
8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	2634-33-5	1.5 이하	0.7 이하	-	-
9	트리클로산	3380-34-5	26 이하	16 이하	-	-
10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7173-51-5	0.01 이하	0.005 이하	-	-
11	은	7440-22-4	0.04 이하	0.02 이하	-	-
12	염화벤잘코늄, (C12-C18)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벤질알킬(C12-C16)디메틸암모늄	8001-54-5 68391-01-5 68424-85-1	1 이하	0.5 이하	-	-
13	피레트린	8003-34-7	1 이하	0.7 이하	-	-
14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26530-20-1	0.4 이하	0.12 이하	-	-
15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34590-94-8	-	57 이하	-	-
16	트리에탄올아민	102-71-6	2 이하	1 이하	-	-
17	알파-피넨	7785-26-4 7785-70-8 80-56-8	7 이하	3 이하	39 이하	30 이하
18	다이페닐 에테르	101-84-8	1 이하	0.6 이하	7 이하	6 이하
19	아세트산 비닐	108-05-4	5 이하	2 이하	26 이하	20 이하
20	트라이사이클로데세닐 아세테이트	5413-60-5	6 이하	3 이하	35 이하	27 이하

④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형 제품>

- 1)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 2) 에탄올, 테르피네올, 3,7-디메틸노나-1,6-디엔-3-올, 아세톤, 4-[2,6,6-트라이메틸-1-싸이클로헥센-1-일]-3-부텐-2-온, 프로펜인, 9-아세틸-8-세드렌, 에틸 2,3-에폭시-3-페닐뷰트레이트, 테트라하이드로-2-이소부틸-4-메틸피란-4-올과 혼합된 이성질체, 3,7-다이메틸-3-옥탄올, 벤질벤조에이트

<비분사형 제품>

- 1) 분사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 2) 법 제12조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단,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 4)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 2),3),4)에 해당하는 방향제 안전기준 물질이 있는 경우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

13. 탈취제

①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산화에틸렌	75-21-8	전 제형	-
2	나프탈렌	91-20-3	전 제형	-
3	벤젠	71-43-2	전 제형	5 이하
4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전 제형	5 이하
5	염화비닐	75-01-4	전 제형	-
6	붕소산 사나트륨염	1330-43-4	전 제형	-
7	1,4-디클로로벤젠	106-46-7	전 제형	-
8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9	염화에폭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10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11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12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②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mg/kg)	
			분사형	비분사형
1	폼알데하이드	50-00-0	12 이하	25 이하
2	메탄올	67-56-1	2,000 이하	2,000 이하
3	아세트알데하이드	75-07-0	70 이하	300 이하
4	이산화염소	10049-04-4	2 ¹⁾ 이하	2 ¹⁾ 이하
5	3-요오드-2-프로판일 뷰틸 카바민산(IPBC)	55406-53-6	8 이하	-
6	글리옥살	107-22-2	30 이하	70 이하

1) 액상제품에 한하며, 단위는 mg/L임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해 제품 제조 전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기준 %(w/w)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공간용 ²⁾	물체용	자동차용 (실내용)	일반용	자동차용 (실내용)
1	프로필렌글리콜	57-55-6	-	-	46 이하	-	-
2	벤조산	65-85-0	3 이하	10 이하	1 이하	-	-
3	2-프로판올	67-63-0	20 이하	24 이하	12 이하	-	-
4	살리실산	69-72-7	81 이하	19 이하	37 이하	-	-
5	벤질알코올	100-51-6	32 이하	34 이하	16 이하	-	-
6	에틸렌글리콜	107-21-1	0.2 이하	6 이하	0.2 이하	-	-
7	살리실산메틸	119-36-8	25 이하	26 이하	13 이하	-	-
8	벤조산벤질	120-51-4	75 이하	27 이하	75 이하	-	-
9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	2634-33-5	1.3 이하	1 이하	0.68 이하	-	-
10	트리클로산	3380-34-5	8 이하	3 이하	16 이하	-	-
11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7173-51-5	0.01 이하	0.18 이하	0.0015 이하	-	-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해 제품 제조 전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기준 %(w/w)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공간용 ²⁾	물체용	자동차용 (실내용)	일반용	자동차용 (실내용)
12	은	7440-22-4	0.04 이하	0.3 이하	0.02 이하	-	-
13	염화벤잘코늄, [C12-C18]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벤질알킬 [C12-C16]디메틸암모늄	8001-54-5 68391-01-5 68424-85-1	0.9 이하	1 이하	0.5 이하	-	-
14	피레트럼	8003-34-7	1 이하	1 이하	0.7 이하		
15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26530-20-1	0.3 이하	0.4 이하	0.1 이하	-	-
16	다이프로필렌글리콜 메틸에테르	34590-94-8	-	-	56 이하	-	-
17	트리에탄올아민	102-71-6	2 이하	10 이하	1 이하	-	-
18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테트라나트륨 염	13235-36-4	0.9 이하	6 이하	0.5 이하	-	-
19	알파-피넨	7785-26-4 7785-70-8 80-56-8	6 이하	10 이하	4 이하	39 이하	30 이하
20	모르폴린	110-91-8	7 이하	10 이하	4 이하	39 이하	31 이하
21	트리에틸렌 글리콜	112-27-6	15 이하	23 이하	9 이하	92 이하	71 이하
22	모노에탄올아민	141-43-5	0.3 이하	0.5 이하	0.2 이하	2 이하	1 이하
23	트리아시아클로데세닐 아세테이트	5413-60-5	6 이하	9 이하	4 이하	35 이하	27 이하
24	염산	7647-01-0	0.5 이하	0.8 이하	함유금지	3 이하	2 이하
25	이산화규소	7631-86-9	0.1 이하	1.0 이하	0.08 이하	-	-
26	산화아연	1314-13-2	0.4 이하	3.2 이하	0.2 이하	-	-

2) 실내공간용은 의류·신발 등의 물체와 자동차 실내에 사용되는 제품 이외의 제품을 말함

④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형 제품>

-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 에탄올, 1,3-비스(하이드록시메틸)-5,5-다이메틸-2,4-이미다졸리다이에디온, 테르피네올, 아세톤, 9-아세틸-8-세드렌, 프로페인, 자일렌 설포네이트 나트륨

<비분사형 제품>

- 분사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 법 제12조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단,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 2),3),4)에 해당하는 탈취제 안전기준 물질이 있는 경우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

14. 물체 염색제

①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염화비닐	75-01-4	전 제형	5 이하
2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101-14-4	전 제형	-
3	납	7439-92-1	전 제형	1 이하
4	카드뮴	7440-43-9	전 제형	1 이하
5	수은	7439-97-6	전 제형	1 이하
6	비스	7440-38-2	전 제형	5 이하
7	6가 크로뮴	18540-29-9	전 제형	-
8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전 제형	5 이하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전 제형	5 이하
10	아조염료 ¹⁾	-	전 제형	-
11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12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13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14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15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1) 4-아미노비페닐, p-아미노아조벤젠, 벤지딘, 4-클로로-o-톨루이딘, 2-나프틸아민, 0-아미노아조톨루엔, 5-나이트로-o-톨루딘, 4-클로로 벤젠 메탄 아민, 4-디아미노아니솔, 4,4'-메틸렌디아닐린, 3,3'-디클로로벤지딘, 3,3'-디메톡시-[1,1-비페닐]-4,4'-디아민, 3,3'-디메틸벤지딘, 4,4''-메틸렌비스(2-메틸아닐린), P-크레시딘,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4,4''-옥시디아닐린, 4,4''-싸이오디아닐린, o-톨루이딘, 톨루엔-2,4-디아민, 2,4,5-트리메틸아닐린, o-아니시딘

②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mg/kg)	
			분사형	비분사형
1	벤젠	71-43-2	30 이하	40 이하
2	1,4-다이옥세인	123-91-1	20 이하	20 이하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해 제품 제조 전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기준 %(w/w)	
			분사형	비분사형
1	2-부톡시에탄올	111-76-2	75 이하	-
2	톨루엔	108-88-3	25 이하	20 이하
3	자일렌(o-,m-,p-총합)	1330-20-7 108-38-3 106-42-3 95-47-6	55 이하	70 이하
4	개미산	64-18-6	30 이하	20 이하
5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합	2682-20-4 26172-55-4 55965-84-9 etc	함유 금지	3 이하

15. 물체도색제

④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형 제품>

- 1)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 2)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탄산나트륨

<비분사형 제품>

- 1) 분사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 2) 법 제12조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단,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 4)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 2),3),4)에 해당하는 물체 염색제 안전기준 물질이 있는 경우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

①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염화비닐	75-01-4	전 제형	5 이하
2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101-14-4	전 제형	-
3	납	7439-92-1	전 제형	1 이하
4	카드뮴	7440-43-9	전 제형	1 이하
5	수은	7439-97-6	전 제형	1 이하
6	비소	7440-38-2	전 제형	5 이하
7	6가 크로뮴	18540-29-9	전 제형	-
8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전 제형	5 이하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전 제형	5 이하
10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11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12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13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14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②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mg/kg)		
			일반용 ¹⁾	자동차용	
			분사형	실내용	외부용
1	벤젠	71-43-2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2	1,4-다이옥세인	123-91-1	30 이하	30 이하	800 이하
3	구리 ²⁾	7440-50-8	2,000 이하	2,000 이하	50,000 이하

1) 자동차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2) 구리를 함유하는 물체 도색제에 대하여 적용

③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형 제품>

- 1) 에탄올, 2-프로판올, 아세톤

<비분사형 제품>

- 1) 분사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 2) 법 제12조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단,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 4)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 2),3),4)에 해당하는 물체 도색제 안전기준 물질이 있는 경우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

16. 자동차용 워셔액

①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2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3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4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5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②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기준 %(w/w)
			일반용·발수용
1	메탄올	67-56-1	0.6 이하

③ 안전요구사항

- 자동차용 워셔액은 침전물 및 부유하는 이물질질을 함유하지 않는 균일하고 착색을 띄는 액체로 다음 용도별 기준치에 다음 용도별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시 험 항 목				일반용		발수성용							
어는점(원액), °C				- 25.0 이하									
pH값		원 액		6.5 ~ 10.0		4.0 ~ 10.0							
		최저사용농도		6.5 ~ 10.0		4.0 ~ 10.0							
세정성(최저사용농도)				대조 비교액과 비교하여 세정성이 동등 이상일 것									
혼합성(원액, 시료:혼합성시험액=50:50)				분리, 침전물 및 석출물이 없을 것									
금속에 대한 부식성 (최저사용농도) [[50 ± 2] °C, 48 h]		발수성(*)		-		65 이상							
		원액											
		무게 변화 mg/cm ²		최저사용농도									
				알루미늄		± 0.30							
황 동				± 0.15									
		아연도금 강판		± 0.80									
시험후 시험편의 겉모양				시험편과 스페이서 접촉부 이외에 현저한 피팅 및 거침이 없을 것									
고무에 대한 영향 (원액) [[50 ± 2] °C, 120 h]		무게변화 %		천연고무		± 1.5							
				클로로프렌고무		± 2.0							
				에틸렌프로필렌고무		± 2.0							
		경도변화 IRHD 또는 HS		천연고무		± 3.0							
				클로로프렌고무		± 3.0							
				에틸렌프로필렌고무		± 3.0							
시험 후 시험편의 겉모양				표면의 점성, 카본 블랙의 이탈 및 균열 등이 없을 것									
도막에 대한 영향(원액) [[50 ± 2] °C, 6 h]		시험 후 도막표면의 겉모양		열처리 아크릴 수지 에나멜 도장판 (메탈릭색)		청		도막의 연화 및 부풀음 없고, 광택 및 색이 시험전·후에 현저한 변화가 없을 것. 또한, 워셔액에 함유된 색소의 정착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적을 것					
										아미노알키드 수지 에나멜 도장판 (솔리드색)		백	

시 험 항 목				일반용	발수성용
플라스틱에 대한 영향 [[50 ± 2] °C, 120 h]	무게변화 mg/cm ²	폴리에틸렌수지		± 1.0	
		폴리프로필렌수지		± 1.0	
		ABS 수지		± 4.0	
		연질 염화비닐수지		± 3.0	
		폴리아세탈수지		± 3.0	
	시험 후 시험편의 겉모양			현저한 변형이 없을 것	
안정성	가열안정성 [[50 ± 2] °C, 8 h]	pH값	원 액	6.5 ~ 10.0	4.0 ~ 10.0
			최저사용농도	6.5 ~ 10.0	4.0 ~ 10.0
	시험 후 액의 겉모양		결정성의 침전물이 없을 것		
	저온안정성 [[-15 ± 2] °C, 8 h]	원 액	결정성의 침전물이 없을 것		
		최저사용농도	결정성의 침전물이 없을 것		
인 화 점(원 액)				측정값을 기록한다.	

※ 신차 출고시 차량에 포함되는 워셔액의 안전요구사항은 차량 제조업체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기준을 적용 가능함

17. 자동차용 부동액

①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2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3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4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5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② 안전요구사항

- 자동차용 부동액은 침전물 및 부유하는 이물질질을 함유하지 않는 균일하고 착색을 띄는 액체로써 다음 각 항목의 용도별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1) 농축형 부동액의 안전요구사항

항 목			에틸렌글리콜형	프로필렌글리콜형			
어는점(℃)			-34.0 이하	-32.0 이하			
			-14.5 이하	-			
pH			7.0 ~ 11.0	-			
			-	7.5~11.0			
예비 알칼리도 ¹⁾			보 고				
금 속 부식성	금 속 시험편	무게의 변화량 (mg/cm ²)	알루미늄주물	±0.30	±0.30		
			주 철	±0.15	±0.15		
			강	±0.15	±0.10		
			황 동	±0.15	±0.10		
			땀 납	±0.30	±0.30		
			구 리	±0.15	±0.10		
	결 모 양		시험편과 스페이서와의 접촉부 이외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식이 없을 것. 다만, 변색은 지장 없다.				
	30부피 % 혼합수용액 (88±2℃, 336±2h)		냉각기에서 거품이 넘치지 않을 것				
	시험 후의 액의 성상	시험 중의 기포		pH			6.5 ~ 11.0
				pH의 변화			±1.0
		예비알칼리도의 변화(%)			보 고		
		액 상			색은 심한 변화가 없을 것. 액은 분리, 겔의 발생 등 심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침전량(부피 %)			0.5 이하		
비 중							
에틸렌글리콜 (20/20℃)			원 액	1.114 이상	1.030 ~ 1.065		
프로필렌글리콜 (15.5/15.5℃)							
끓는점(℃)			원 액	155 이상	152 이상		
거품성(mL)			30부피 %수용액	4 이하			
수 분(%)			원 액	5.0 이하			

항 목			에틸렌글리콜형		프로필렌글리콜형	
순환 부식성 30부피 % 혼합수용액 (88±3)℃ (1000±2)h	금 속 시 험 편	무게의 변화량 (mg/cm ²)	알루미늄주물	±0.60		
			주 철	±0.30	±0.20	
			강	±0.30	±0.20	
			황 동	±0.30	±0.20	
			땀 납	±0.60		
			구 리	±0.30	±0.20	
	결 모 양		시험편과 스페이서의 접촉부 이외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식이 없을 것. 다만, 변색은 지장 없음			
	시험 후의 액의 성상	pH		6.5 ~ 11.0		
		pH의 변화		±1.0		
		예비 알칼리도의 변화[%]		보 고		
액 상		색은 심한 변화가 없을 것. 액은 분리, 겔의 발생 등 심한 변화가 없을 것				
부품의 상태	펌프 실부		운전 중 작동불량을 일으키지 않고, 액의 누출과 이상음이 없을 것			
	펌프게이싱의 내면과 펌프날개		심한 변화가 없을 것			

1) 예비 알칼리도 원액(물로 희석하지 않은 부동액을 말한다) 10mL를 pH5.5 까지 중화하는데 필요한 0.1M 염산의 사용량(mL)을 말함
※ 신차 출고시 차량에 포함되는 부동액의 안전요구사항은 차량 제조업체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기준을 적용 가능함

2) 50부피 % 희석형 부동액의 안전요구사항

항 목			에틸렌글리콜형	프로필렌글리콜형
어는점(℃)			원 액	-34.0 이하
pH			원 액	-32.0 이하
예비 알칼리도 ²⁾			원 액	7.0~11.0
			보 고	
금 속 부식성	금 속 시험편	무게의 변화량 (mg/cm ²)	알루미늄주물	±0.30
			주 철	±0.15
			강	±0.15
			황 동	±0.15
			땀 납	±0.30
			구 리	±0.10
	60부피 % 혼합수용액 (88±2℃, 336±2h)		60부피 % 혼합수용액 (88±2℃, 336±2h)	
	결 모 양		시험편과 스페이서와의 접촉부 이외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식이 없을 것. 다만, 변색은 지장 없다.	
	시험 중의 기포		냉각기에서 거품이 넘치지 않을 것	
	시험 후의 액의 성상	pH	6.5 ~ 11.0	
pH의 변화		±1.0		
예비알칼리도의 변화(%)		보 고		
액 상		색은 심한 변화가 없을 것. 액은 분리, 겔의 발생 등 심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침전량(부피 %)		0.5 이하		
비 중 에틸렌글리콜 (20/20℃) 프로필렌글리콜 (15.5/15.5℃)		원 액	1.065 이상	1.025 이상
끓는점(℃)		원 액	108 이상	104 이상
거품성(mL)		60부피 %수용액	4 이하	

2) 50부피 % 희석형 부동액의 안전요구사항

항 목			에틸렌글리콜형		프로필렌글리콜형			
순환 부식성 60부피 % 혼합수용액 (88±3)℃ (1000±2)h	금속 시험편	무게의 변화량 (mg/cm ²)	알루미늄주물	±0.60				
			주 철	±0.30	±0.20			
			강	±0.30	±0.20			
			황 동	±0.30	±0.20			
			땜 납	±0.60				
			구 리	±0.30	±0.20			
			결 모 양		시험편과 스페이서의 접촉부 이외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식이 없을 것. 다만, 변색은 지장 없음			
	시험 후의 액의 성상			pH		6.5~11.0		
				pH의 변화		±1.0		
				예비 알칼리도의 변화[%]		보 고		
	부품의 상태			액 상		색은 심한 변화가 없을 것. 액은 분리, 겔의 발생 등 심한 변화가 없을 것		
				펌프 실부		운전 중 작동불량을 일으키지 않고, 액의 누출과 이상음이 없을 것		
			펌프게이스의 내면과 펌프날개		심한 변화가 없을 것			

2) 예비 알칼리도 원액(물로 희석하지 않은 부동액을 말한다) 10mL를 pH5.5 까지 중화하는데 필요한 0.1M 염산의 사용량(mL)을 말함
※ 신차 출고시 차량에 포함되는 부동액의 안전요구사항은 차량 제조업체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기준을 적용 가능함

18. 인쇄용 잉크·토너

①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납	7439-92-1	전 제형	1 이하
2	카드뮴	7440-43-9	전 제형	1 이하
3	수은	7439-97-6	전 제형	1 이하
4	비소	7440-38-2	전 제형	5 이하
5	6가 크로뮴	18540-29-9	전 제형	-
6	노닐페놀류	-	전 제형	-
7	아조염료 ¹⁾	-	전 제형	-
8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9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10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11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12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1) 4-아미노비페닐, p-아미노아조벤젠, 벤지딘, 4-클로로-o-톨루이딘, 2-나프틸아민, o-아미노아조톨루엔, 5-나이트로-o-톨루딘, 4- 클로로 벤젠 메탄 아민, 4-디아미노 아니솔, 4,4'-메틸렌디아닐린, 3,3'-디클로로벤지딘, 3,3'-디메톡시-[1,1'-비페닐]-4,4'-디아민, 3,3'-디메틸벤지딘, 4,4''-메틸렌비스(2-메틸아닐린), P-크레시딘,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4,4''-옥시디아닐린, 4,4''-싸이오디아닐린, o-톨루이딘, 톨루엔-2,4-디아민, 2,4,5-트리메틸아닐린, o-아니시딘

②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mg/kg)	
			인쇄용 잉크	인쇄용 토너
1	벤젠	71-43-2	17 이하	5 이하

19. 인주

①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비소	7440-38-2	전 제형	5 이하
2	카드뮴	7440-43-9	전 제형	1 이하
3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4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5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6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7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②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mg/kg)
1	수은	7439-97-6	500 이하
2	납	7439-92-1	500 이하

20.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①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벤젠	71-43-2	전 제형	5 이하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전 제형	5 이하
3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4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5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6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7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21. 미용접착제

①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벤젠	71-43-2	전 제형	5 이하
2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전 제형	5 이하
3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전 제형	5 이하
4	염화비닐	75-01-4	전 제형	5 이하
5	트리페닐주석화합물(TPT)	-	전 제형	-
6	트리부틸주석화합물(TBT)	-	전 제형	-
7	트리부틸주석산화물	56-35-9	전 제형	-
8	유기수은화합물	-	전 제형	-
9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584-84-9	전 제형	-
10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전 제형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제외)	-
11	디클로로메탄	75-09-2	전 제형	-
12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	111-76-2	전 제형	-
13	나프탈렌	91-20-3	전 제형	-
14	납	7439-92-1	전 제형	1 이하
15	비스	7440-38-2	전 제형	5 이하
16	삼산화안티몬	1309-64-4	전 제형	2 이하 (안티몬으로)
17	클로로포름	67-66-3	전 제형	-
18	디메틸포름아미드	68-12-2	전 제형	-
19	메틸메타크릴레이트	80-62-6	전 제형	-
20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21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22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23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24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②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mg/kg)
1	폼알데하이드	50-00-0	20 이하 ¹⁾
2	톨루엔	108-88-3	1,000 이하
3	자일렌(o-,m-,p-총합)	1330-20-7 108-38-3 106-42-3 95-47-6	500 이하
4	아크릴로니트릴 ²⁾	107-13-1	200 이하
5	하이드로퀴논 ²⁾	123-31-9	1,000 이하

1)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용 접착제는 1% 미만 적용

2)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용 접착제에만 적용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해 제품 제조 전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w/w]
1	2,6-다이-터트-부틸-p-크레졸	128-37-0	50 이하
2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26530-20-1	7 이하
3	디부틸프탈레이트	84-74-2	0.1 이하

④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형 제품>

1)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비분사형 제품>

1) 분사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2) 법 제12조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단,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4)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 2),3),4)에 해당하는 미용 접착제 안전기준 물질이 있는 경우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

22. 문신용 염료

①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2-아미노-6-에토실나프탈린	293733-21-8	전 제형	-
2	4-아미노-3-플루오로페놀	399-95-1	전 제형	-
3	4-아미노아조벤젠	60-09-3	전 제형	-
4	o-아미노아조톨루엔	97-56-3	전 제형	-
5	벤지딘	92-87-5	전 제형	-
6	바이페닐-4-일아민	92-67-1	전 제형	-
7	p-클로로아닐린	106-47-8	전 제형	-
8	4-클로로-o-톨루이딘	95-69-2	전 제형	-
9	3,3'-디클로로벤지딘	91-94-1	전 제형	-
10	3,3'-디메톡시벤지딘	119-90-4	전 제형	-
11	3,3'-디메틸벤지딘	119-93-7	전 제형	-
12	P-크레시딘	120-71-8	전 제형	-
13	2,4-디아미노아니솔	615-05-4	전 제형	-
14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101-14-4	전 제형	-
15	4,4'-메틸렌다이아닐린	101-77-9	전 제형	-
16	4,4'-메틸렌비스[2-메틸아닐린]	838-88-0	전 제형	-
17	톨루엔-2,4-디아민	95-80-7	전 제형	-
18	2-나프틸아민	91-59-8	전 제형	-
19	5-나이트로-o-톨루딘	99-55-8	전 제형	-
20	1,2-벤즈페난트렌	218-01-9	전 제형	-
21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117-81-7	전 제형	-
22	베릴륨	7440-41-7	전 제형	-
23	클로로포름	67-66-3	전 제형	-
24	디부틸프탈레이트	84-74-2	전 제형	-
25	안트라센	120-12-7	전 제형	-
26	o-아니시딘	90-04-0	전 제형	-
27	니켈	7440-02-0	전 제형	-
28	비소	7440-38-2	전 제형	5 이하
29	카드뮴	7440-43-9	전 제형	1 이하
30	수은	7439-97-6	전 제형	1 이하
31	납	7439-92-1	전 제형	1 이하
32	6가 크로뮴	18540-29-9	전 제형	-
33	염화비닐	75-01-4	전 제형	-
34	1,2-벤즈안트라센	56-55-3	전 제형	-
35	나프탈렌	91-20-3	전 제형	-
36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전 제형	5 이하

①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색명(Color Index)	색번호	적용 제품	검출허용한도(mg/kg)
37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전 제형	5 이하
38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39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40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41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42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② 제품 내 함유 금지색명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색명(Color Index)	색번호	적용 제품	검출허용한도(mg/kg)
1	Acid Green 16	44025	전 제형	-
2	Acid Red 26	16150	전 제형	-
3	Acid Violet 17	42650	전 제형	-
4	Acid Violet 49	42640	전 제형	-
5	Acid Yellow 36	13065	전 제형	-
6	Basic Blue 7	42595	전 제형	-
7	Basic Green 1	42040	전 제형	-
8	Basic Red 1	45160	전 제형	-
9	Basic Red 9	42500	전 제형	-
10	Basic Violet 1	42535	전 제형	-
11	Basic Violet 10	45170	전 제형	-
12	Basic Violet 3	42555	전 제형	-
13	Disperse Blue 1	64500	전 제형	-
14	Disperse Blue 106	-	전 제형	-
15	Disperse Blue 124	-	전 제형	-
16	Disperse Blue 3	61505	전 제형	-
17	Disperse Blue 35	-	전 제형	-
18	Disperse Orange 3	11005	전 제형	-
19	Disperse Orange 37	-	전 제형	-
20	Disperse Red 1	11110	전 제형	-
21	Disperse Red 17	11210	전 제형	-

23. 살균제

② 제품 내 함유 금지색명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색명(Color Index)	색번호	적용 제품	검출허용한도(mg/kg)
22	Disperse Yellow 3	11855	전 제형	-
23	Disperse Yellow 9	10375	전 제형	-
24	Pigment Orange 5	12075	전 제형	-
25	Pigment Red 53	15585	전 제형	-
26	Pigment Violet 3	42535:2	전 제형	-
27	Pigment Violet 39	42555:2	전 제형	-
28	Solvent Blue 35	61554	전 제형	-
29	Solvent Orange 7	12140	전 제형	-
30	Solvent Red 24	26105	전 제형	-
31	Solvent Red 49	45170:1	전 제형	-
32	Solvent Violet 9	42555:1	전 제형	-
33	Solvent Yellow 1	11000	전 제형	-
34	Solvent Yellow 2	11020	전 제형	-
35	Solvent Yellow 3	11160	전 제형	-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기준(mg/kg)
1	바륨	7440-39-3	50 이하
2	코발트	7440-48-4	25 이하
3	구리	7440-50-8	25 이하
4	셀레늄	7782-49-2	2 이하
5	안티몬	7440-36-0	2 이하
6	주석	7440-31-5	50 이하
7	아연	7440-66-6	50 이하
8	메틸파라벤	99-76-3	단일물질 4,000 이하, 혼합물 8,000 이하
9	부틸파라벤	94-26-8	
10	에틸파라벤	120-47-8	
11	이소부틸파라벤	4247-02-3	
12	프로필파라벤	4191-73-5	
13	이소프로필파라벤	4191-73-5	20 이하
14	폼알데하이드	50-00-0	
15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	총합으로 0.5 이하 (단, 벤조-a-피렌의 함유량은 0.005 이하)

④ 무균

- 문신용 염료의 내용물은 무균이어야 한다. 무균시험방법은 대한민국 약전 일반시험법의 무균시험법에 따른다.

①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품 및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벤젠	71-43-2	일반용 (전 제형)	5 이하
2	염화비닐	75-01-4	일반용 (전 제형)	5 이하
3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112-34-5	일반용 (전 제형)	-
4	붕산	10043-35-3	어린이용품 전용 (전 제형)	붕소(B)로서 10 이하
5	차아염소산	7790-92-3	어린이용품 전용 및 칫솔·혀클리너용 (전 제형)	10 이하
6	납	7439-92-1	칫솔·혀클리너용 (전 제형)	1 이하
7	카드뮴	7440-43-9	칫솔·혀클리너용 (전 제형)	1 이하
8	수은	7439-97-6	전 제품 (전 제형)	1 이하
9	비소	7440-38-2	칫솔·혀클리너용 (전 제형)	1 이하
10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11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12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13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14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②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mg/kg)				
			일반용 ¹⁾		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혀클리너 살균용
			분사형	비분사형			
1	폼알데하이드	50-00-0	40 이하	100 이하	-	-	-
2	아세트알데하이드	75-07-0	100 이하	200 이하	-	-	-
3	클로로포름	67-66-3	30 이하	30 이하	-	-	-
4	아질산나트륨	7632-00-0	-	-	아질산 이온으로서 80 이하	아질산 이온으로서 80 이하	-
5	과황산화합물	-	-	-	-	-	과황산염으로서 800 이하

1) 공기소독용 및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혀클리너 살균용을 제외한 물체소독용, 하수구·배수관용, 곰팡이·이끼제거용을 말함

③ 사용가능 주성분

- 살균제에 사용할 수 있는 주성분은 다음 각 항목과 같음

- 1) 법 제12조에 따라 살균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살균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단,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 3) 아래 표에 제시된 물질

구 분	No	물질명
일반용	1	노난 산; 펠라곤 산
	2	염산
	3	황산 구리(Ⅱ)
	4	에틸렌다이아민테트라아세트산
	5	에틸렌다이아민테트라아세트산, 이나트륨염
	6	에틸렌다이아민테트라아세트산, 삼나트륨염
	7	에틸렌다이아민테트라아세트산, 사나트륨염
	8	수산화 칼륨
	9	은이온
	10	식용색소 적색 제40호; FD&C 적 NO. 40
	11	하이드록시아세트산
	12	나이트로트라이아세트산 트라이나트륨염
	13	아세트산
	14	알코올(C12-C15)에톡실레이티드
	15	염화알킬(C12-C18) 벤질다이메틸암모늄
	16	염화알킬(C12-C18) 다이메틸에틸벤질암모늄
	17	인산
	18	O-벤질-p-클로로페놀
	19	자일렌설퍼네이트 나트륨
	20	수산화나트륨
	21	규산나트륨
	22	탄산나트륨
	23	에탄올
	24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2-프로판올
	25	디메틸(펜타데실)아민 옥사이드
	26	브로민화소듐
	27	차아염소산나트륨
	28	과산화수소
	29	차아염소산칼슘
	30	차아염소산; 하이포아염소산
	31	클로록실레놀
	32	4-클로로-3,5-다이메틸페놀

③ 사용가능 주성분

- 살균제에 사용할 수 있는 주성분은 다음 각 항목과 같음

- 1) 법 제12조에 따라 살균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살균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단,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 3) 아래 표에 제시된 물질

구 분	No	물질명
일반용	33	4-아이소프로필-3-메틸페놀
	34	세틸피리디늄 클로라이드 모노하이드레이트
	35	2-페녹시에탄올
	36	2-에틸 헥산다이올
	37	알칼리 이온수 (pH 11 이상)
	38	이산화 염소
	39	심클로센; 트라이클로로아미노시아누르산
공기소독용	40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2-프로판올
	41	벤질-디메틸-테트라데실암모늄
	42	에탄올
어린이용품 전용	43	에탄올
	44	구연산(시트릭산)
	45	2-페녹시에탄올
칫솔-혀크리너 살균용	46	에탄올
	47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
	48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이수화물
	49	구연산(시트릭산)
	50	키토산
	51	탄산나트륨
	52	탄산수소나트륨
	53	티올(식용등급)

24. 살조제

①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수은	7439-97-6	전 제품 (전 제형)	1 이하
2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3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4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5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5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②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mg/kg)	
			분사형	비분사형
1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338-23-4	600 이하	600 이하
2	클로로포름	67-66-3	100 이하	300 이하
3	이산화염소	10049-04-4	1,000 이하	-
4	과아세트산	79-21-0	1,400 이하	-

③ 사용가능 주성분

- 살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주성분은 다음 각 항목과 같음
 - 법 제12조에 따라 살조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살조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단,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 아래 표에 제시된 물질

No	물질명	No	물질명
1	2-클로로아세트산 혼합 1,3프로판디아민N-(C10-C16) 알킬 유도체 반응물	14	4차암모늄 화합물, 디(C8-C10)알킬다이메틸
2	벤질알킬(C12-C16)디메틸암모늄	15	글루코프로타민
3	벤질알킬(C12-C18)디메틸암모늄	16	과산화수소
4	벤질-디메틸-테트라데실암모늄	17	마그네슘 모노퍼옥시프탈레이트 6수화물
5	염화암모늄(C12-C14)알킬디메틸에틸벤질	18	5-메틸옥사졸리딘
6	수산화칼슘	19	옥탄퍼옥소산
7	차아염소산칼슘	20	2-페녹시에탄올
8	폴리(2-하이드록시프로필디메틸암모늄염화물)	21	칼슘 마그네슘 산화물
9	칼슘 마그네슘 수산화물	22	은 구리 제올라이트
10	이산화염소	23	은 인산염 유리
11	구리	24	은 아연 제올라이트
12	황산구리(II), 오수화물	25	제올라이트
13	차아염소산나트륨		

25. 기피제

①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품	검출허용한도(mg/kg)
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2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3	염화비닐	75-01-4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4	나프탈렌	91-20-3	날벌레용 제품 (전 제형)	-
5	1,4-디클로로벤젠	106-46-7	전 제품 (전 제형)	-
6	농약관리법(법률 제14980호)에 등록된 성분	-	전 제품 (전 제형)	-
7	가정용 살충제로 등록된 유효성분	-	전 제품 (전 제형) ¹⁾	-
8	방역용 구제·방지 살충제로 등록된 성분	-	전 제품 (전 제형)	-
9	수은	7439-97-6	전 제품 (전 제형)	1 이하
10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11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12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13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14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1) 좀벌레용은 제외함

②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mg/kg)	
			쌀벌레·좀벌레용	날벌레용
1	폼알데하이드	50-00-0	5 이하	5 이하
2	아세트알데하이드	75-07-0	40 이하	-
3	디메틸포름아미드	68-12-2	-	300 이하

③ 사용가능 주성분

- 기피제에 사용할 수 있는 주성분은 다음 각 항목과 같음
 - 법 제12조에 따라 기피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피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준살생물물질, 단,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 아래 표에 제시된 물질

구분	No	물질명
쌀벌레용	1	펠라곤산
	2	메틸노닐케톤
	3	다이에틸-메타-톨루아마이드
좀벌레용	4	라우르산; 도데칸산
	5	시스-9-트리코센

구분	No	물질명
날벌레용	6	테트라데카-9,12-디에닐 아세테이트
	7	카프린산
	8	클로록실레놀
	9	라벤더 오일
	10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11	수소처리된 경질 파라핀 정제유
	12	수소처리된 중간 정제유
	13	히노키티올
	14	시트로넬라 오일
	15	정향유
	16	피마자(castor) 오일
	17	스피아민트 오일
	18	선형 알킬벤젠
	19	트랜스플루트린
	20	다이프로필렌글리콜
	21	엠펜스린
	22	2,2'-메틸렌비스(6-t-뷰틸-4-에틸페놀)
	23	알파-브로모신암알데하이드
	24	브롬펜빈포스
	25	알릴아이스싸이오사이안산
	26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
	27	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28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29	나프탈렌
	30	장뇌
	31	시나몬(게피) 오일
	32	겨자씨 오일
	33	에탄올
	34	프로판
	35	이소부탄
	36	페퍼민트 오일
	37	시트로넬라 오일
	38	레몬그라스 오일
	39	대두(soybean) 오일
	40	파라핀 오일
	41	피마자(castor) 오일
	42	삼나무(cedarwood) 오일
	43	로즈마리 오일
	44	제라늄 오일
	45	오렌지껍질 오일
	46	모기기피제로 등록된 유효 성분 7종 ²⁾

2) 7종: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파라멘탄-3,8-디올,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리나롤, 정향유, 회향유

26. 목재용 보존제

①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벤젠	71-43-2	전 제형	5 이하
2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전 제형	5 이하
3	염화비닐	75-01-4	전 제형	5 이하
4	무수 크롬산	1332-82-0	전 제형	-
5	중크롬산나트륨	10588-01-9	전 제형	-
6	나트륨 펜타클로로페네이트	131-52-2	전 제형	-
7	트리부틸주석산화물	-	전 제형	-
8	수은	7439-97-6	전 제형	1 이하
9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10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11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12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13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②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mg/kg)
1	에틸벤젠	100-41-4	700 이하
2	(1-메틸에틸)벤젠	98-82-8	700 이하
3	자일렌(o-,m-,p-총합)	1330-20-7 108-38-3 106-42-3 95-47-6	60 이하
4	톨루엔	108-88-3	70 이하

③ 사용가능 주성분

- 목재용 보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주성분은 다음 각 항목과 같음

- 법 제12조에 따라 목재용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목재용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단,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 아래 표에 제시된 물질

No	물질명	No	물질명
1	붕산, 보린산	9	3-요오드-2-프로판일 뷰틸 카바민산(IPBC)
2	산화제2구리	10	제타 사이퍼메트린
3	테부코나졸	11	프로피코나졸
4	붕산나트륨	12	1-부톡시-2-프로판올
5	톨릴플루아니드	13	수소처리된 중질 나프타
6	디클로플루아니드	14	수소탈황화된 중질 나프타
7	염화알킬(C12-C16)벤질다이메틸암모늄	15	D-글루코피라노스, 올리고, 데실 옥틸 글루코사이드
8	삼산화이붕소		

27.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①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2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3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4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5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② 방출량 제한물질

-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항균처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아래 제시된 방출량 기준치에 적합 하여야 함
※ 공기청정기·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필터에서 탈락된 해당 물질의 양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mg)
1	이산화티타늄	13463-67-7	1,000 이하
2	이산화규소	7631-86-9	40 이하
3	구리 및 그 화합물	7440-50-8 etc	구리로서 70 이하
4	산화아연	1314-13-2	50 이하
5	질산은	-	15 이하
6	아연 피리싸이온	13463-41-7	70 이하
7	옥타데실디메틸 (3-트리하이드록시실일프로필) 암모늄 클로라이드 [Octadecyldimethyl(3-trihydroxysilyl propyl) ammonium chloride, OTPA]	7761-88-8	2 이하

③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음. 다만, 항목 중 2) 3)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보존용물질 사용 신청서와 유해성 자료 및 물질별 방출량에 따른 유해성 평가자료 등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 법 제 8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받아야 함
- 1) ② 방출량 제한물질 단, 물질별 방출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 2) 법 제12조에 따라 제품 보존용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단, 유해성평가 결과, 인체에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의 방출량 이하인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함
-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품 보존용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단, 유해성평가 결과, 인체에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의 방출량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해당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 사용 가능

28. 초

①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품 및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벤젠	71-43-2	방향용	5 이하
2	염화비닐	75-01-4	방향용	5 이하
3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방향용	5 이하
4	붕소산 사나트륨염	1330-43-4	방향용	-
5	1,4-디클로로벤젠	106-46-7	방향용	-
6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7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8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9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10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②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기준(mg/kg)	
			발광용	방향용
1	납 ¹⁾	7439-92-1	600 이하	600 이하
2	폼알데하이드	50-00-0	-	12 이하
3	글리옥살	107-22-2	-	30 이하
4	메탄올 ²⁾	67-56-1	-	2,000 이하

1) 심지 및 몸통의 총 함유량을 말함

2) 액상 제품에 한함

29. 습기제거제

①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2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3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4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5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②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mg/L)
1	납	7439-92-1	3.0 이하
2	카드뮴	7440-43-9	0.3 이하
3	비소	7440-38-2	1.5 이하
4	수은	7439-97-6	0.005 이하
5	6가 크롬	18540-29-9	1.5 이하
6	다이메틸푸마레이트 ¹⁾	624-49-7	0.1 mg/kg 이하

1) 실리카겔을 주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함

30. 인공 눈 스프레이

①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염화비닐	75-01-4	분사형	5 이하
2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분사형	5 이하
3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분사형	5 이하
4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5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6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7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8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②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분사형 함량 기준 (mg/kg)
1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Sodium Laureth Sulfate; SLES)	9004-82-4	1,000 이하

31. 공연용 포그액

①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2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3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4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5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②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에틸렌글리콜	107-21-1	전 제형	10 이하
2	디에틸렌글리콜	111-46-6	전 제형	10 이하

32. 어린이보호포장

① 어린이보호포장 필수 품목기준

- 다음의 품목은 '②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기준'과 '③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외 기준'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해당 제품의 제형을 고려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한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함

No	품목 및 제형
1	액체형 자동차용 워셔액
2	액체형 자동차용 부동액
3	액체형 순간접착제(순간 접착력 있는 미용 접착제 포함)
4	캡슐형 세탁세제

②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기준

- 제품 내 함유된 물질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제형을 고려하여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유 기준	적용제외기준
1	에틸렌글리콜	107-21-1	10 % (W/W) 이상	-
2	메틸알콜	67-56-1	3 % (W/W) 이상	-
3	디클로로메탄	75-09-2	1 % (W/W) 이상	-
4	1,2-디클로로에탄	107-06-2	10 % (W/W) 이상	-
5	살리실산메틸	119-36-8	5 % (W/W) 이상	-
6	수산화나트륨 ¹⁾	1310-73-2	제품내 NaOH로서, 2%(W/W)이상	-
7	수산화칼륨 ¹⁾	1310-58-3		-
8	메타크릴산	79-41-4	5 % (W/W) 이상	펜 마커와 같이 용기 내 흡수제로 쓰인 경우
9	개미산(포름산)	64-18-6	5 % (W/W) 이상	-
10	하이포(차아염소산염	7681-52-9 etc	2 % (W/W) 이상	-
11	과산화수소	7722-84-1	5 % (W/W) 이상	-
12	에틸브로모아세테이트	105-36-2	모든 농도	-
13	모르폴린	110-91-8	5 % (W/W) 이상	-
14	아세트오닐트릴 ²⁾	75-05-8	500 mg 초과	-
15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직쇄형 1차 알코올]	1-프로판올	71-23-8	-
16		1-부탄올	71-36-3	-
17		1-펜탄올	71-41-0	-
18		1-헥산올	111-27-3	-
19		1-헵탄올	111-70-6	-
20		1-옥탄올	111-87-5	-
21		1-노난올	143-08-8	-
22		1-데칸올	112-30-1	-
23		1-운데칸올	112-42-5	-
24		1-도데칸올	112-53-8	-
25		1-트리데칸올	112-70-9	-
26	이소부틸 알코올	78-83-1	10 % 이상 (W/W) 이상이고 40℃에서 동점도 20.5mm ² /s 이하	-
27	테르펜 알코올	98-55-5		-
28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케톤	-		-
29	C3~C13의 탄소로 구성된 탄화수소	C10~C13 Isoalkanes	68551-17-7	-
		C10~C14 Isoalkanes	68551-18-8	-
30	제품 내 최종 함유물이 pH 2.0 이하 또는 pH 11.5 이상의 액상제품			-

1)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함유한 제품에 적용되며, 기준은 제품 자체의 염기 농도임

2) 접착제 제거제에 함유된 경우에 한함

③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외 기준

- 제품과 제형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②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기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포장을 적용하지 아니함

-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여 개봉할 수 있는 용기
- 개봉이 불가능한 분사형 용기
- 개봉 후 1회에 전량이 소모되는 1회용 용기
- 개봉 후 내용물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용기(예: 카트리지형, 티슈형, 팔찌형, 패치형, 거치형 탱크형 제품 등)
- 실제 중량 15 kg 이상의 제품
- 제품의 특성상 별도의 용기나 포장이 어려운 제품(예: 함침물형 석고 방향제, 초 등)

부록 | 원부자재 규제물질 확인

1.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1)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접속

- <http://ncis.nier.go.kr> 홈페이지 접속



2) 원부자재 정보 검색

- ① 원부자재 Cas number(카스번호), 물질명(국문, 영문) 등 확인
- ② 검색창에 카스번호, 물질명 등 입력 후 검색
 - 물질명 등의 정보로 검색할 경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원부자재의 카스번호로 검색하십시오.



3) 원부자재 제도 적용 여부 확인

- ① 영문명, 국문명 확인
- ② 기존물질, 유해화학물질(유독·제한·금지), 중점관리물질, 사고대비물질
 - 고유번호가 있는 물질은 제도에 해당하는 물질임을 뜻함. 예) 50-00-0 물질은 기존물질, 유해화학물질(유독, 금지), 중점관리물질,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됨.
 -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와 검색결과가 있어도 "대량생산화학물질"에만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로 판단
 - 비교의 "등록유예기간 없음"은 2015년 7월 고시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며, 그 수화물·무수화물도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포함됨

CAS번호	영문명	국문명	고유번호					합량 및 규제정보	비고
			기존화학 물질	유해화학 물질	중점관리 물질	암, 돌연변이성 물질	사고대비 물질		
68650-00-0	Fatty acids, tall oil polymers with pentaerythritol, phthalic anhydride and tung oil, oxidized		KE-16170						
50-00-0	Formalin [이명 : Formaldehyde;]	포르말린 [이명 : 포름알데하이드; 포름올; 메탄알; 포르말리트; 포름알데하이드용액;]	KE-17074	97-1-345 06-5-5	별표1-1		1	정보보기	등록유예기간 없음
13150-00-0	Sodium 2-[2-[2-(dodecyl oxy)ethoxy]ethoxy]ethyl sulfate		KE-31442						

4) 원부자재 규제사항 확인

- ① 유해화학물질(유독·제한·금지), 중점관리물질, 사고대비물질의 제품내 규제함량 및 규제사항 확인
- ② 정보보기 클릭

전체

50-00-0

X

화학물질 검색

검색결과-총 3건

결과 내 재 검색

검색

🖨️

📄

📄

10개씩보기

CAS번호	영문명	국문명	고유번호					합량 및 규제정보	비고
			기존화학 물질	유해화학 물질	중금속 물질	암·돌연변이 성 물질	사고대비 물질		
68650-00-0	Fatty acids, tall oil polymers with pentaerythritol, phthalic anhydride and tung oil, oxidized		KE-16170						
50-00-0	Formalin [이명 : Formaldehyde;]	포르말린 [이명 : 포말알데하이드; 포름올; 메탄알; 포르말리트; 포름알데하이드용액;]	KE-17074	97-1-345 06-5-5	별표1-1		1	정보보기	등록유예기간 없음
13150-00-0	Sodium 2-[2-[2-(dodecyl oxy)ethoxy]ethoxy]ethyl sulfate		KE-31442						

5) 원부자재 규제사항 세부정보 확인

- ① 규제별 혼합물(제품) 함량정보 확인
- ② 규제별 혼합물(제품) 금지 또는 제한내용 확인
 - 예) 특정물질 및 그 물질이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해당 원부자재가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인 경우 그 혼합물은 유독물질로 분류
 - 제한물질 비교의 경우 해당 용도로의 물질 취급을 제한함을 의미

○ 물질번호 및 함량정보

물질구분	고유번호	혼합물(제품)함량정보	비고
기존화학물질	KE-17074		
유독물질	97-1-345	포르말린 및 포름알데하이드로서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제한물질	06-5-5	포름알데하이드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가구용 무늬목, 직물, 3세이하 유아용품, 도배용 롤, 피혁가공 유연제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사고대비물질	1	포르말린 또는 포름알데하이드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대량생산화학물질	V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1		
중점관리물질	별표1-1		CMR

2. 안전보건공단(KOSHA)

1) 안전보건공단(KOSHA) 접속

- ① <http://msds.kosha.or.kr/> 홈페이지 접속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 화학물질정보검색 | MSDS 작성 | 경고표지 작성 | 게시판 | 정보공개

HOME > 화학물질정보검색 > 화학물질정보검색 > 통합검색

화학물질 정보검색

통합검색

화학물질정보검색 > 통합검색 > MSDS검색

유해/위험성정보 > 물질규제정보 > 국내기관정보 > 국외기관정보 >

통합검색

검색하기

CAS No. 등 화학물질 관련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예) 71-43-2 벤젠, KE-02150 등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 원부자재 정보 검색

- ① 원부자재 Cas number(카스번호), 물질명(국문, 영문) 등 확인
 ② 검색창에 카스번호, 물질명 등 입력 후 검색
- 물질명 등의 정보로 검색할 경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원부자재의 카스번호로 검색하십시오.

HOME > 화학물질정보검색 > 화학물질정보검색 > 통합검색

통합검색

50-00-0

검색하기

CAS No. 등 화학물질 관련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예) 71-43-2 벤젠, KE-02150 등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 원부자재 제도 적용 여부 확인

- ① 물질명, 카스번호 확인
 ② 법규정보 클릭

검색어 '50-00-0'에 대한 검색결과

공단 MSDS

No.	물질명	CAS No.	개정일
1	포름알데히드	50-00-0	
2	Sodium 2-[2-(2-(dodecyloxy)ethoxy)ethoxy]ethyl sulfate	13150-00-0	2018-04-02

더보기 >

법규정보

No.	물질명	CAS No.	개정일
1	포름알데히드	50-00-0	
2	Sodium 2-[2-(2-(dodecyloxy)ethoxy)ethoxy]ethyl sulfate	13150-00-0	2018-04-02
3	Fatty acids, tall oil polymers with pentaerythritol, phthalic anhydride and tung oil, oxidized	68860-00-0	

4) 원부자재 규제사항 확인

- ① 산업안전보건법 상 규제 확인
 ② 화학물질관리법 상 규제 확인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규제 확인

국내 규제

산업안전보건법

금지물질	허가대상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	6개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공정안전보고서 (PSM)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영업비밀 인정제외 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12개월	✓	✓	✓	✓

화학물질관리법

기준화학물질	금지물질	제한물질	허가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		✓		✓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위험물	지정수량
제4류: 제3석유류(수용성)	4000 g

CHAPTER C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



I.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 1.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6조에 따른 표시사항 138
- 2. 전품목 필수 표시항목 및 조건부 표시항목 139

II. 표시사항 작성방법 140

III. 표시사항의 표시 위치 150

IV. 표시면적에 따른 표시사례 153

V. 기타 표시사항 작성 시주의사항 155



I.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1.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6조에 따른 표시사항



[그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항목

2. 전품목 필수 표시항목 및 조건부 표시항목

<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필수·조건부 표시사항

No	표시항목	필수/조건부 ¹⁾	비고
1	품목	필수	-
2	제품명	필수	-
3	용도	필수	표백제는 계열도 표시
4	제형	필수	-
5	제조연월	필수	-
6	유통기한	조건부	해당없는 제품 생략
7	중량·용량·매수	필수	-
8	어는점	조건부	자동차용 워셔액 및 부동액에 한함
9	액성	조건부	세정제품 및 세탁제품에 한함
10	표준사용량	조건부	해당없는 제품 생략
11	효과·효능	조건부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에 한함
12	제조자, 주소, 연락처	조건부	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13	판매자, 주소, 연락처	조건부	제조사 개발생산(ODM)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에 한함
14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	조건부	수입제품에 한함
15	수입자, 주소, 연락처	조건부	수입제품에 한함
16	어린이보호포장대상/비대상 제품의 표시	조건부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에 한함
17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주요물질	필수
		보존제	조건부
		알레르기 반응가능물질	조건부
		계면활성제	조건부
		기타물질	조건부
18	신호어 및 그림문자	조건부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 경우에 한함, 다만 산도조절제인 경우 제외
19	사용방법	조건부	해당없는 제품 생략
20	사용상 주의사항	조건부	품목, 용도, 제형, 함유물질 등에 따라 표시
21	응급처치	조건부	어린이보호포장, 알레르기반응물질 함유에 따라 표시
22	안전기준확인 마크	필수	-
23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필수	-

1) 필수: 모든 제품에 필수로 표시되는 항목, 조건부: 품목, 제형, 용도, 제품 내 함유물질 등 해당여부에 따라 표시되는 항목

II. 표시사항 작성방법

① 품목(필수 표시항목)

- 품목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이하 “확인결과서”)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이하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품목을 동일하게 표시하며 이 때 표시는 밑줄을 긋거나 활자를 두껍게 하거나 또는 글자색을 변경하는 등 눈에 띄는 방법(이하 “눈에 띄는 방법”이라 함)으로 표시하여야 함

예) 품목: **세정제**, **세정제**, **세정제** 등

② 제품명(필수 표시항목)

- 제품명은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 다만, 파생제품의 경우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신고 시 입력한 제품명을 표시하여야 함
- ※ 파생제품명은 대표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음

예) 제품명: **솔루티스 세정제**

③ 용도(필수 표시항목)

- 용도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 다만, 표백제의 경우 계열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 ※ 표백제의 계열 : 과탄산나트륨계, 과붕산나트륨계, 과산화수소계, 염소계, 기타 등

예) 용도: **섬유용(과탄산나트륨계)** 또는 **자동차용(실내용)**, **일반용(목재용)**

④ 제형(필수 표시항목)

- 제형은 확인결과서 또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을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

예) 제형: 액체형 또는 분무기형

⑤ 제조연월(필수 표시항목)

- 제조연월은 “19년 11월”, “2019년 11월”, “19. 11.(연. 월.)”, “2019. 11(연.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다만, 제조연월의 표시위치가 별도로 기재된 경우에는 기재된 위치를 문구로 표시하거나 “별도표시” 등의 안내문구로 표시하여야 함. 다만, 수입 제품에 기 표시된 제조연월의 형식이 국내와 달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읽는법에 대한 설명을 표시하여야 함

예) 제조연월: **별도표시** 또는 **제품 하단 별도표시** 또는 **제품 상단 별도표시**

⑥ 유통기한(조건부 표시항목: 해당없는 제품 생략 가능)

- 유통기한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서 직접 판단하여 작성하며 해당 없는 제품은 생략 가능

예) 유통기한: 2020년 11월까지 또는 2020년 11월

※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의 경우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함

⑦ 중량·용량·매수(필수 표시항목)

- 중량·용량·매수의 표시는 확인결과서에 기재된 사항을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 다만, CHEMP 시스템 신고 시 중량·용량·매수를 다양하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용기에 맞는 중량·용량·매수를 표시 할 수 있음

표시 예) 중량: 1kg 또는 용량: 100ml 또는 매수: 30매

⑧ 어는점(조건부 표시항목: 자동차용 워셔액 및 부동액에 한함)

- 어는점은 물과의 혼합비율과 혼합비율에 따른 어는점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 또는 그래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음

표시 예)

원액	물	어는점	최저희석비율
100%	0%	-25℃	100%(원액 그대로사용)

⑨ 액성(조건부 표시항목: 세정제품 및 세탁제품에 한함)

- 액성은 원액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하며, 표준사용량이 있는 경우 표준사용량을 기재 할 수 있음. 다만, 액성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해당 되는 모든 액성을 표시하되, 수소이온 농도의 범위값을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수용성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유성” 등의 표시로 대신할 수 있음

표시 예) : 액성: 원액(약산성) 또는 액성: 원액(약산성), 표준사용량(중성)

참고)

수소이온 농도(pH)	액성
11.0을 초과하는 것	알칼리성
8.0 초과 ~ 11.0 이하	약알칼리성
6.0 이상 ~ 8.0 이하	중성
3.0 이상 ~ 6.0 이하	약산성
3.0 미만	산성

⑩ 표준사용량(조건부 표시항목: 해당없는 제품 생략 가능)

- 표준사용량은 제품을 사용할 때 제품의 효과적인 기능을 낼 수 있는 적정 사용량으로 ⑦중량·용량·매수에서 사용한 단위로 표시하여야 함. 또한, 희석해서 사용하는 농축제품의 경우에는 희석비율에 따른 표준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의 경우에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용량을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 : 표준사용량: 물 1L에 5g 사용

⑪ 효과·효능(조건부 표시항목: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에 한함)

- 효과·효능은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⑫ 제조자, 주소, 연락처(조건부 표시항목: 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 제조자, 주소, 연락처는 CHEMP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 : 제조자, 주소, 연락처: 솔루티스,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1호, 02-0000-0000

⑬ 판매자, 주소, 연락처(조건부 표시항목: 제조자개발생산방식의 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 판매자, 주소, 연락처는 CHEMP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 : 판매자, 주소, 연락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02-0000-0000

⑭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조건부 표시항목: 수입제품에 한함)

-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는 수입제품을 최종 제조한 국가와 상호를 CHEMP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 이 때 표시는 한글 또는 한글(영문)으로 병행할 수 있으며, 영문의 활자크기는 한글활자의 크기보다 작아야 함

표시 예) :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명: 미국[U.S.A], 아메리칸&코리아[American & Korea]

⑮ 수입자, 주소, 연락처(조건부 표시항목: 수입제품에 한함)

- 수입자, 주소, 연락처는 CHEMP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 : 수입자, 주소, 연락처: 솔루션스,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1호, 02-0000-0000

⑯ 어린이보호포장대상 / 비대상 제품의 표시(조건부 표시항목: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제품에 한함)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인 경우 “어린이보호포장” 안내문을 제품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이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함. 안내문의 표시는 [그림 2]와 같이 적색테두리(선 굵기 0.5 mm 이상), 흰배경 위의 적색 글씨(고딕체류)로 가운데 위치하도록 하며, 이 경우 도안의 모양은 바로 세워진 직사각형 형태여야 하며 활자의 크기는 6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함

어린이보호포장

[그림]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 도안

-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대상 제품 중 가정용 이외의 목적으로만 제품을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제품의 주표시면에 “가정용 제품이 아님” 또는 특정 사용처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야 함

“가정용 제품이 아님”
“본 제품은 가정용이 아닌 00에서 사용하는 전문00 제품입니다.”
카센터용
세척업소용

[그림] 어린이보호포장 비대상 제품의 표시

⑰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필수 / 조건부 표시항목)

-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은 주요물질, 보존제, 알레르기반응물질, 계면활성제, 기타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을 ⑰-① ~ ⑤의 순서로 표시하여야 함

- 사용물질

표시 예) : • 주요물질: 파라핀왁스, 향료(d-리모넨 등) • 보존제: 에탄올 • 계면활성제: 알킬벤젠술포산염(음이온계)

- 알레르기물질: 아밀신남알 • 기타물질: 수산화나트륨

⑰-① 주요물질(필수 표시항목)

-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주요물질(최대함량), 주요물질(주요기능)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최대함량물질이 물인 경우 그 다음으로 상당부분을 구성하는 물질을 추가로 기재해야함. 주요물질(주요기능)이 향료인 경우 기능을 부가하여 표시해야하며(예: 향료(리모넨)) 또한 두 개 이상의 혼합물로 구성된 경우 향료(대표물질명 등)으로 기재하여야 함

표시 예) : 주요물질: 파라핀왁스, 향료(d-리모넨 등)

⑰-② 보존제(조건부 표시항목: 보존 기능 물질이 함유된 경우에 한함)

-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보존제로 기재하였던 모든 성분을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 : 보존제: 에탄올

⑰-③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조건부 표시항목: 알레르기물질이 함유된 경우에 한함)

-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은 알레르기가능물질이 제품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 : 알레르기물질: 아밀신남알 또는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아밀신남알

<표>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목록

물질명	CAS No.	물질명	CAS No.
아밀신남알	122-40-7	벤질벤조에이트	120-51-4
벤질알코올	100-51-6	시트로넬롤	106-22-9
신나밀알코올	104-54-1	헥실신남알	101-86-0
시트랄	5392-40-5	리모넨	138-86-3 5989-27-5 5989-54-8
유제놀	97-53-0	메칠2-옥티노에이트	111-12-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107-75-5	알파-이소메칠이오논	127-51-5
이소유제놀	97-54-1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 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31906-04-4
아밀신나밀알코올	101-85-9	참나무이끼추출물 ¹⁾	90028-68-5
벤질살리실레이트	118-58-1	나무이끼추출물 ¹⁾	90028-67-4
신남알	104-55-2	제라니올	106-24-1
벤질신나메이트	103-41-3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80-54-6
리날로올	78-70-6	-	-

1) 아트라놀(CAS No 526-37-4)과 클로로아트라놀(CAS No 57074-21-2)은 참나무이끼추출물과 나무이끼추출물의 구성성분임

⑰-④ 계면활성제(조건부 표시항목: 계면활성제 기능이 함유된 경우에 한함)

- 제품 내 계면활성제의 기능으로 사용된 모든 물질은 “물질명(계열)”을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 : 계면활성제: 알킬벤젠술포산염(음이온계)

※ 참고 계면활성제의 계열 : 음이온계, 비이온계, 양쪽성 이온계, 양이온계, 기타 등

⑰-⑤ 기타물질(조건부 표시항목: 국내 관리규제에 해당하는 물질 함유 등)

- 제품에 아래의 구분에 따른 물질이 사용된 경우 물질명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해당물질이 ⑰-① ~ ④ 중 어느 하나의 구분에서 그 물질의 명칭이 표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0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¹⁾

2)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¹⁾

3)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7호에 따른 살생물질²⁾

4) 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에 의도적으로 함유된 나노물질

5) 문신용염료에 사용된 모든 물질³⁾

1) 유해화학물질 및 중점관리물질은 지정기준에 미치지 않아도 모두 표시하여야 함. 확인 방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매뉴얼 참조

2) 환경부 고시 제2019-27호「위해성이 낮은 살생물질」참조. 다만, '19년 연말 목록 추가 예정

3) 문신용 염료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물질 순서로 표시하며, 1% 이하로 사용된 물질은 순서에 상관없음.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수소이온농도(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그 물질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표시 할 수 있음

표시 예) : 기타물질: 수산화나트륨, 이소프로필벤젠

⑱ 신호어 및 그림문자(조건부 표시항목: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 경우, 다만 산도조절제는 제외)

- 제품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이 혼합물 기준 이상으로 사용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고시「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혼합물 분류기준에 따른 신호어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호어의 표시는 눈에 띄는 방법으로, 그림문자의 크기는 최소면적이 1 cm²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 참고) 신호어란 유해성의 상대적 척도를 제품에 표시하여 제품의 잠재적 유해성에 대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것임. 고시에서 사용하는 신호어는 '위험' 및 '경고'이며, '위험'은 '경고'보다 유해성의 척도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 적용함



[그림] 신호어의 종류

※ 참고) 그림문자란 제품의 유해·위험성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임. 이러한 그림문자는 정사각형 안에 표시되어야 하며, 흰색 배경에 검정색으로 상징을 표기하고 빨간색 테두리를 갖추어야 함



[그림] 그림문자의 종류 및 의미

⑲ 사용방법(필수: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 / 조건부 표시항목: 해당없는 제품 생략가능)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용기의 여는 방법(필요 시 닫는 방법 포함)'에 대한 문구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이 경우, 표시면이 아닌 용기의 외면 덮개 등에 문구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다만,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의 경우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용법을 표시하여야 함. 그 외 제품은 특정 용법이 적용되는 등 소비자의 사전 숙지가 필요한 경우 표시할 수 있음

⑳ 사용상 주의사항(조건부 표시항목: 품목, 용도, 제형, 함유물질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와 권장 사용상 주의사항(일반 표시) 문구를 아래의 표에서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함. 다만 중복 문구는 생략하거나 유사한 문구로 조합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용어로 변경할 수 있음.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의 경우에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예) :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시 환기를 충분히 하시오.

<표>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구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세정제 (염산 또는 황산이 사용된 제품에 한함. 다만, 산도조절제로 사용된 경우 제외)	<u>·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시 환기를 충분히 하시오.</u> <u>· 장갑, 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u>
접착제 (톨루엔, 초산에틸, 메탄올 중 어느 하나의 화학물질이 사용된 경우에 한함)	<u>· 직접흡입 등 오·남용을 하지 마시오.</u>
자동차용 부동액	<u>· 보관 시에는 부동액임을 알 수 있도록 기존의 용기 또는 부동액 표시가 된 별도의 용기를 사용하고, 밀봉하십시오.</u> <u>· 에틸렌글리콜형의 부동액과 프로필렌글리콜형의 부동액을 섞어 쓰면 어느점 등 품질의 저하가 우려되므로 혼용하지 마시오.</u>
자동차용 워셔액	<u>· 알코올 냄새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내기 순환모드에서 사용하십시오.</u> <u>· 워셔액을 사용 후에는 창문을 1~2분간 내려 환기를 하시오.</u>
인쇄용 잉크·토너	<u>· 제품을 교체·제거할 때 내용물의 누출에 주의하십시오.</u> <u>· 내용물 누출시 분진·미스트·증기의 흡입 또는 피부 접촉에 주의하십시오.</u> <u>· 가정용 진공청소기로 토너를 청소하지 말고, 젖은 천으로 닦아내시오.</u>
초 (전용 받침대가 없는 제품에 한함)	<u>· 불에 타지 않는 초 받침대를 사용하십시오.</u>

구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습기제거제	·<u>투습막을 찢거나 벗기지 마시오.</u>¹⁾ ·<u>흡습제는 물과 닿으면 발열 반응이 나타나 위험하니, 흡습제를 꺼내지 마시오.</u> ·<u>흡습제나 조해액이 누출되어 닿으면 식물의 생장이나 금속의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u> ·<u>습기제거제를 불에 대고 건조시키지 마시오.</u>
제품의 용도가 자동차 외부용인 경우	·<u>자동차 실내에서는 사용하지 마시오.</u>
제품의 용도가 칫솔 살균용인 경우	·<u>제품 사용 후 칫솔을 반드시 행구시오.</u>
제품의 제형이 캡슐형인 경우	·<u>어린이가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u>
제품의 제형이 액체형인 경우	·<u>제품의 내용물을 분무기 등에 담아 분사하지 마시오.</u>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스프레이형 제품	·<u>주변에 불꽃(spark)이 발생되는지 확인하고, 일정량을 분사한 후 가스가 흠어지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사용하십시오.</u> ·<u>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시 폭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u>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	·<u>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u> ·<u>용기와 결합된 뚜껑을 억지로 벗기지 마시오.</u>
특정조건(전문가용 등)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예외 제품	·<u>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되지 아니한 제품으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u>
별표 6에 따른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사용 제품	·<u>피부가 민감하거나 손상된 사람은 제품을 장기간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u>
강도시험 대상에서 제외된 유리용기 사용 제품	·<u>용기를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마시오.</u>
일회성 전량 소모 제품	·<u>개봉 후 내용물을 즉시 사용하십시오.</u>

1) 투습막이 있는 제품에 한하며, 투습막에 직접 표시할 수 있음

〈표〉 제품별 권장 사용상 주의사항	
구분	권장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일반 사항	· 사용하기 전에 표시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표시된 사용방법, 표준사용량 등을 지켜 사용하십시오.
인체 노출 관련 사항	· 내용물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하시오. · 내용물이 눈이나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시오. · 흡입하거나 마시지 마시오. ·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시 환기를 충분히 하시오. · 다량 흡입시 위험이 우려되니 사람이나 동물, 공기중에 분사하지 마시오. · 장갑, 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 사람에게 직접 뿌리거나 분사되는 내용물을 흡입하지 마시오. · 눈보다 높은 곳에서 사용하면 분사액이 눈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용도 관련 사항	· 표시사항에 기재된 제품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시오. · 용기를 임의로 바꿔 사용하지 마시오. · 변색, 탈색이 우려될 경우에는 먼저 눈에 띄지 않는 부위를 정해 소량으로 시험해 본 후 사용하십시오.
화재·폭발 관련 사항	· 화기를 가까이 하지 마시오. ·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시키지 마시오. · 화재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내용물 누출 관련 사항	· 넘어진 채로 두면 액이 흘러나올 수 있으니 방치하지 마시오. · 용기를 떨어뜨리는 등 충격을 가하지 마시오. · 넘어지거나 기울어진 상태로 사용하지 마시오. · 제품의 용기를 억지로 분리하거나 강한 충격을 가하지 마시오. · 제품을 사용한 후에는 내용물이 잔류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이 닦으시오.
보관·저장 관련 사항	· 화기 또는 열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사용 후 잔량은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 용기를 항상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㉑ 응급처치(조건부 표시항목: 어린이보호포장, 알레르기반응물질 함유 등에 한함)

- 응급처치 문구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필수문구(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와 권장문구(일반표시)를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함. 다만 중복 문구는 생략하거나 유사한 문구로 조합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용어로 변경할 수 있음

예) 피부자극 반응 또는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의학적 조치를 받으시오.

<표> 제품별 필수 응급처치 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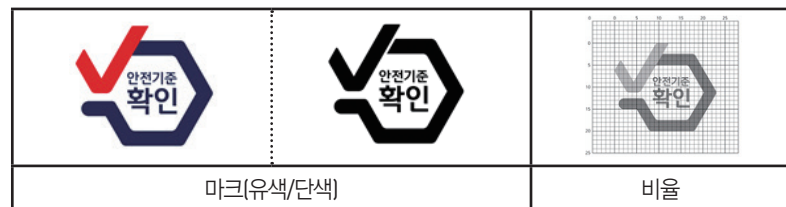
구분	필수 응급처치 문구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	·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보여주십시오.
별표 6에 따른 알레르기 반응가능물질 사용 제품	· 피부자극 반응 또는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의학적 조치를 받으시오.

<표> 제품별 권장 응급처치 문구

구분	권장 응급처치 문구
일반 사항	·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보여주십시오. · 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십시오.
경구노출 사항	·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경피·안구노출 사항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시오. · 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흡입노출 사항	·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

㉒ 안전기준확인 마크(필수 표시항목)

- 안전기준확인 마크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야 함. 이 경우, 마크의 색상은 유색 또는 단색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마크의 크기는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함. 다만,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안전기준확인 마크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 도안

㉓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번호(필수 표시항목)

- 신고번호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신고번호를, 승인번호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승인번호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예) 신고번호: 1234, 1234, 1234

㉔ 기타(그림기호 표시)(조건부 표시항목)

- 그림기호는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등의 문구를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기호로 표시하는 방법을 말함
- 그림기호를 표시할 때는 아래와 같이 "©A.I.S.E."를 표시하여야 하며, 관련 웹주소(www.cleanright.eu)는 같이 표시할 수 있음
- 그림기호는 제품 겉면 또는 포장 등에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의 브랜드나 상표 등의 광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그림기호의 색상은 검정색 대신 다른 어두운 색을 사용할 수 있으나, X 표시의 경우 항상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하며, 그림기호의 크기는 1cm²이상이어야 함
- 그림기호는 아래 표에서 정한 문구로만 연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정하고 있지 않는 다른 어느 문구와 혼용하여 표시할 수 없음



[그림] 그림기호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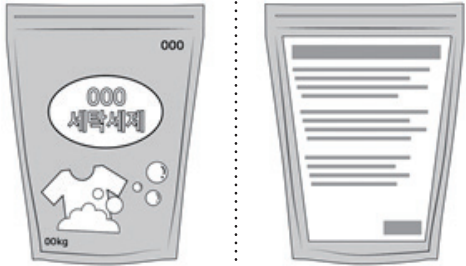
<표> 표시사항 문구별 그림기호 도안

구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사용상 주의사항	·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 내용물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하시오.
	응급처치	·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시오. · 눈에 들어갔을 때는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응급처치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 내용물이 눈이나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시오. · 장갑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응급처치	·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 후 잔량은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시 환기를 충분히 하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 용기를 항상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Ⅲ. 표시사항의 표시 위치

① 표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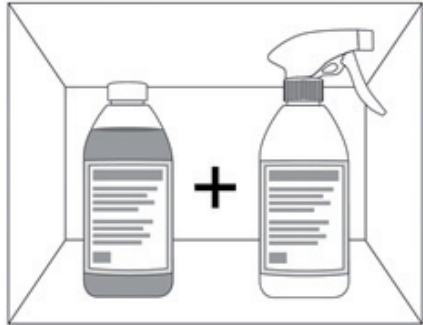
- 표시사항은 제품의 “표시면”(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의 바닥, 손잡이 등 연결부위 및 용기의 위·아래 부분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을 제외하고 글자나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면)에 표시하여야 함. 표시면 중에서도 제품의 광고 또는 디자인 등 가장 먼저 보이는 면을 주표시면이라고 함

			
표시면(앞면·주표시면)	표시면(뒷면)	표시면(앞면·주표시면)	표시면(뒷면)
			
표시면(앞면·주표시면)	표시면(뒷면)	앞면(표시불가)	표시면(뒷면·주표시면)
			
표시면(전면(주표시면), 뒷면, 옆면, 후면)	표시면(전면(주표시면), 뒷면, 옆면, 후면)		

[그림] 제품의 형태별 표시면의 위치

② 제품 겉면에 표시

- 표시사항은 제품의 겉면에 우선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의 내용물을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전용 용기가 구성품으로 있는 경우에도 그 용기의 겉면에 표시하여야 함. 다만, 제품을 둘러싼 포장에 있지만 제품 겉면의 표시가 보이는 경우에는 포장에 추가로 표시할 필요는 없음

표시 위치	예시
제품 겉면의 표시면에 표시	
별도의 전용용기가 있는 경우, 내용물이 담긴 용기와 전용용기의 표시면 모두 표시	
포장이 있지만 제품 겉면의 표시가 보이는 경우, 제품 겉면의 표시면에 표시	

[그림] 제품의 형태별 제품 겉면의 표시 위치

③ 제품 겉면 이외의 표시

- 표시사항은 제품의 겉면에 우선으로 표시하여야 하지만, 제품 겉면에 표시된 표시가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에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함. 다만, 고시에 따른 제품 겉면에 표시가 곤란하거나 표시할 실익이 낮은 제품의 경우, 표시를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표시하거나, 표시가 기재된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 등으로 부착할 수 있음

표시 위치	예시
제품 겉면이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 제품 겉면과 포장의 표시면 모두 표시	
제품 겉면에 표시가 곤란하거나 표시할 실익이 낮은 경우, 포장에 표시	
제품 겉면에 표시가 곤란하거나 표시할 실익이 낮은 경우, 첨부분서에 표시	
제품 겉면에 표시가 곤란하거나 표시할 실익이 낮은 경우, 표시가 기재된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 부착	

[그림] 제품의 형태별 제품 겉면 이외의 표시 위치

Ⅳ. 표시면적에 따른 표시사례

① 표시면의 면적이 100 cm² 초과인 경우

-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 등의 표시면이 100 cm²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든 표시사항을 표시면에 기재하여야 함. 다만, 제품 겉면에 표시된 표시사항이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아 포장의 표시면에도 표시하는 경우에는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사항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그림] 표시면적 100 cm² 초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 사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 신고번호: 0000 / • 품목: 세정제, 살균제 / • 제품명: 123qq_테스트

• 용도: 세정제[일반용(욕실용, 렌지후드용, 오븐용)], 살균제[일반용(배수관용, 일반물체용)]

• 제형: 분무기형 / • 용량: 150mL / • 제조 연월: 제품 하단 별도표시 / • 액성: 원액(약산성)

• 제조자, 주소, 연락처: 테스트기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02-2284-1862사용 물질

• 사용물질

주요물질: 정제수, 향료(디옥틸아디페이트 등), 차아염소산 / 알레르기물질: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시트로넬롤, 유제놀, 제라나올, 리모넨, 리날로올 / 계면활성제: 아주까리기름, 수소첨가, 에톡실레이트 (비이온계)

• 사용방법: ① 사용 전 용기를 충분히 흔들어 줍니다. / ② 제품 사용 전, 굵은 오염 물질은 간단한 제거 후 이용해 줍니다. / ③ 본 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좀더 깨끗한 세정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상 주의사항 ① 용기를 항상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 ② **피부가 민감하거나 손상된 사람은 제품을 장기간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③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시키지 마시오. / ④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 시 폭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응급처치

① 내용물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하시오. / ② **피부자극 반응 또는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의학적 조치를 받으시오.**

③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

[그림] 표시면적 100 cm² 초과 생활화학제품 표시 사례(다기능 제품)

① 표시면의 면적이 100 cm² 이하인 경우

-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 등의 표시면이 100 cm² 이하인 경우 아래와 같이 최소 정보를 표시하고 나머지 표시사항은 첨부문서 또는 제품 겉면 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함. 다만, 제품 겉면에 표시된 사항이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 포장에 모두 표시하여야 함

표시면의 면적이 50 cm ² ~ 100 cm ² 인 제품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주표시면> 어린이보호포장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AA00-00-0000 품목: 세정제 제품명: 000 세정제 주요물질: 에틸렌글리콜, 향료(d-리모넨 등), 물 제조자(수입자)·연락처: (주)서울, 02-000-0000
표시면의 면적이 50 cm ² 미만인 제품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신고번호: AA00-00-0000 품목: 세정제 제품명: 000 세정제	

[그림] 표시면적 100 cm² 이하 생활화학제품 표시 도안

V. 기타 표시사항 작성 시 주의사항

① 표시사항 활자의 크기 및 스타일

- 표시사항 활자의 크기는 고시에 따라 8포인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표시면의 면적이 200cm² 미만인 경우 6포인트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활자의 종류(글자체)는 어린이보호포장과 신호어의 표시를 제외하고 고시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지만, 흘림체 등 기울어진 활자보다는 신명조, 고딕체류 등 명확하고 글자의 장식이나 기울임이 없는 글자체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② 눈에 띄는 표시

- 눈에 띄는 표시는 밑줄을 긋거나 활자를 두껍게 하거나 또는 글자색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말하며, △품목, △신고번호, △신호어, △사용상주의사항(필수), △응급처치(필수), △사용방법(어린이보호포장 용기의 여는 방법)은 눈에 띄는 표시를 하여야 함. 눈에 띄는 표시 대상 외 표시항목 및 내용은 작성자 임의대로 눈에 띄는 표시를 할 수 없음

③ 표시광고 제한 문구

-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광고를 포함한 제품의 라벨에는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무해한”, “인체·동물친화적”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

④ 제품 신고정보와 표시정보의 동일성

- 표시사항은 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및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 기재·제출된 정보와 동일하여야 함. 향후 제품과 관련된 일련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변경신고를 한 후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야 함

⑤ 기타

- 화학물질명을 포함하여 표시사항에 기재되는 모든 정보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 다만, 외국어를 표시하게 되는 경우 “한글(English)” 와 같이 외국어 활자의 크기가 한글보다 작아야 함
- 제품에 함유된 전성분 등 필수 표시 대상 물질 외 성분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외 물질”이란 항목을 생성하여 물질의 표시를 할 수 있음